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4796-01

가축전염병 분류 체계 개편 및 주요 가축전염병의 단계적 방역 목표 수립

2024

주관연구기관 :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가축전염병 분류 체계 개편 및 주요 가축전염병의 단계적 방역 목표 수립”
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 3.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 김재홍

제1세부과제명 : 가축전염병 분류 체계 개편 및 주요 가축전염병의 단계적 방역 목표 수립
(제1세부연구기관/세부과제책임자) :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김재홍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내용 및 방법	2
제2장 가축전염병 분류체계 개편	5
I. 선진국의 가축전염병 분류 체계	5
1. 관리 대상 가축전염병 선정과 이론적 근거	5
가. 근절 또는 방제 대상 가축전염병의 선정	5
나. 질병 관리의 우선순위 결정(disease prioritization)	5
2. 국제기구의 법정가축전염병 지정 현황과 과학적 근거	6
가. WOAH의 등재 질병 우선순위 지정 및 법적 체계	6
나. FAO 질병 우선순위 설정 및 법적 체계	10
3. 주요 선진국의 법정가축전염병 지정 및 관리 현황	11
3-1. 미국	12
3-2. 일본	17
3-3. 유럽연합(EU)	25
3-4. 영국	30
3-5. 호주	31
4. 국내 법정 인체감염병 지정 및 관리현황	36
II. 국내 법정가축전염병 관리 현황 및 분류체계 개편	38
1. 국내 법정가축전염병 지정, 등급 분류 및 방역조치 현황	38
2. 우리나라의 법정가축전염병 관리체계 개편 및 개선 필요사항	39
2-1. 법정가축전염병 등급 지정 현황 및 문제점	39
2-2. 종별 법정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조치 비교	40
2-3. 현 법정가축전염병 분류체계 및 방역조치 개선(안)	42
2-4. 법정가축전염병 분류체계 개선(안)에 따른 민간 자율방역제도 강화방안	52
제3장 주요 가축전염병의 단계적 방역목표 수립 및 방역지표 설정	57
I. 현황 및 가축질병 발생 원인 분석	57

1. 국가별 가축질병 발생 현황	57
2.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	58
3. 발생원인 분석 및 피해 정도	59
II. 국내방역 추진 현황	60
1. 가축방역 추진 상황	60
2. 그간의 방역 및 위생대책 평가	63
3. 문제점	65
III. 주요 가축질병 방역 대책 및 방역지표 설정	71
1. 주요 가축전염병 선정 및 방역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단계적 목표 -	71
2. 가축 질병별 방역 대책 및 지표 설정	72
< 청정화 대책 질병 >	72
< 발생 저감 대책 질병 >	77
< 발생 최소화 대책 질병 >	87
< 비발생 대책 질병 >	88
■ 참고문헌	90
■ 별첨자료	93
(별첨 1, p94 ~ 별첨 15, p117)	

표 목차

제1장 연구개요

표 1-1. 세부과제 내용 별 역할 분담	3
------------------------	---

제2장 가축전염병 분류체계 개편

표 2-1. 미국의 신고 의무 질병 및 보고 대상 질병 분류와 목록(A&B)	13
표 2-2. 질병 등급별 신고기관, 신고 시기 및 신고자의 역할	17
표 2-3. 일본의 신고 대상 가축전염병	19
표 2-4. 유럽연합의 신고 의무 동물전염병 목록(63종)	27
표 2-5. 영국의 신고 의무 가축전염병(Notifiable Diseases) 목록(41종)	30
표 2-6. 호주의 신고 의무 동물전염병 63종과 범주별 예산 지원체계	32
표 2-7. 인체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기준	37
표 2-8. 법정가축전염병 지정 현황	38
표 2-9. 종별 법정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조치 비교	40
표 2-10. 제1종 및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공통적 방역조치 내용	41
표 2-11. 법정가축전염병의 구분 및 종별 정의 제정(안)	43
표 2-12. 법정가축전염병의 구분 및 종별 현행 분류체계	46
표 2-13. 법정가축전염병의 구분과 정의에 따른 종별 분류체계 개정(안)	47
표 2-14. 현행 종돈장 및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대상 전염병	50

제3장 주요 가축전염병의 단계적 방역목표 수립 및 방역지표 설정

표 3-1. 우리나라의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57
표 3-2. 해외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57
표 3-3. 연도별 국내 가축 사육현황 변화	58
표 3-4. 우리나라의 연도별 축산물 수입 현황	59
표 3-5.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2019년) 이후 연도별 발생 현황	77
표 3-6. 최근 5년간의 추백리 발생 현황	78
표 3-7. 최근 5년간 가금티푸스 발생 현황	79
표 3-8. 최근 5년간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발생 현황	80
표 3-9. 최근 5년간 돼지유행성설사 발생 현황	81
표 3-10. 최근 5년간 소브루셀라병 발생 현황	82
표 3-11. 브루셀라병 발생 저감을 위한 1단계 방역조치 내용	83
표 3-12. 최근 5년간 소 결핵병 발생 현황(발생농장 수)	84
표 3-13. 소 결핵병 발생 저감을 위한 1단계 방역 조치 내용	85
표 3-14. 최근 5년간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발생 현황(발생농장 수)	86

표 3-15. 최근 5년간 낭충봉아부패병 발생 현황 -----	87
표 3-16. 방역지역별 농장 분류에 따른 살처분 범위 결정 -----	128

그림 목차

제2장 가축전염병 분류체계 개편

그림 2-1. WOAH 질병 우선순위 결정도	7
그림 2-2. 미국 NLRAD 시스템에 따른 동물질병 보고체계도	13
그림 2-3. 일본의 신고 의무 전염병에 대한 발생신고 및 조치 체계	23
그림 2-4. EU의 보고 대상 동물질병의 유형별 분류	28
그림 2-5. EU의 보고 대상 동물질병의 범주별 방역정책 설정 내역	28
그림 2-6. EU의 5개 범주(categories) 별 질병 분류	29
그림 2-7. EU의 동물질병 범주별 질병 예방 및 방역관리 세부규칙	29
그림 2-8. 호주 긴급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조도	35
그림 2-9. AUSVETPLAN과 관련된 자원의 구성요소	36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 목적

- 2010년대에 확립된 기존의 가축전염병 분류체계에 대하여 발생 현황,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분류체계를 재설정하고,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에 이를 반영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단계적 방역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국가관리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나. 연구의 필요성

- 국내 가축질병 방역체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가전법)」에 따라 총 68종의 가축전염병을 전염성 및 피해정도 등을 감안하여 제1, 2, 3종*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 분류

(제1종) 구제역·AI·ASF 등 15종

(제2종) 브루셀라·결핵·소해면상뇌증(광우병) 등 32종

(제3종) 소유행열, 돼지유행성설사 등 21종

- 가전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분류체계는 2007년에 마련된 것으로 발생상황 변화, 방역 수준 개선 및 해외 사례*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가축전염병 분류 체계의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 OIE)는 과거에는 질병의 경중에 따라 List A~C로 구분하였으나, '05년부터 List 별 구분을 없애는 대신, WOAH 관리대상 질병 117종(보고 대상 가축전염병, '23년 기준)으로 지정하여 일괄 관리.

- 또한 체계적인 가축전염병 방역 정책 추진을 위해 발생 종식 등의 단기 목표 외에 주요 가축전염병 관리방향에 대한 중장기적인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정책방향 수정과 발전방안 수립이 필요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기존 가축전염병 분류 체계의 의의와 한계 분석
 - 기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분류체계 배경과 문제점 분석
 - 질병관리청의 인체 감염병 관리체계의 기본 개념과 분류체계 비교 분석
 -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가축전염병 관리체계와 기본 전략 분석
 - WOAH, 미국, EU, 영국, 호주, 일본 등
- 국내외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및 방역 추진 전략 등 분석
 - 국내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및 시대별 방역 추진전략 조사
 - 선진국의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방역 추진전략 등 분석
- 해외 가축전염병 분류 체계 및 국내 적용 시 적절성 등 분석
 - 선진국의 법정 가축전염병 분류체계 분석
 - 선진국의 가축전염병 관리체계 조사
 - 국내 적용이 필요한 해외 가축전염병 관리체계 분석과 적용시의 정책적 장·단점 분석
- 가축전염병 분류 체계 개선안 및 법령 개정사항 등 제안
 - 국내 가축전염병 분류 체계 개선방안 수립
 - 개선된 가축전염병 분류 및 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법령 개정(안) 작성
-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단계적 목표 제안
 - 가축전염병 분류 및 관리 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단계별 목표 설정
 - 주요 전염병 별 장·단기 목표 설정
 - 주요 전염병 목표 달성 평가를 위한 관리지표 설정

나. 연구팀 구성

- 주관연구기관: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태음)
- 연구책임자
 -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원장 김재홍)
- 연구팀 구성 및 역할
 - 표 1-1과 같음.
- 자문위원
 - 소임상수의사회: 김성기 회장, 류일선 전 회장
 - 돼지수의사회: 최종영 회장
 - 가금수의사회: 송치용 회장

- 대학: 유한상 서울대학교 교수, 송창선 건국대학교 교수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경기 연구관 등 관계자 다수

표 1-1. 세부과제 내용 별 역할 분담

연구팀 구성 (소 속)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원			역 할
	성 명	직 위	역 할	
한국동물약품기술 연구원	김 재 흥	원장	과제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제안서 및 연구보고서 종합 작성 • 제1장 및 제2장 기존 가축전염병 분류 체계의 의의와 한계 분석 • 제2장 해외 가축전염병 분류 체계와 국내 적용 시 적절성 등 분석 및 가축전염병 분류 체계 개정안 수립 •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단계적 목표 설정(제3장) 중 가금질병 부분
한국동물보건의료 정책연구원	김 태 용	원장	참여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및 방역 추진 전략 등 분석(제3장) •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단계적 목표 설정(제3장) • 축산 관련 단체에 대한 설문조사
대한수의사회	우 연 철	사무총장	참여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 현 분류체계에 대한 문제점 연구
한국동물보건의료 정책연구원	정 혜 진	과장	연구 보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지원 행정 총괄

다. 연구방법

- 국내·외 가축전염병 발생자료 조사 및 현황 분석
 - 대면조사 및 온라인을 통한 국내·외 가축전염병 분류 및 관리 법령, 제도, 기술 및 관련 통계, 연구 논문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 해외 방역기구의 자료
 - 질병관리청의 전염병 관리체계 및 분류체계 등
- 기존 가축전염병 분류 및 관리, 방역추진 전략 분석
 - 현 가축전염병 분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농식품부, 검역본부, 축종별 임상수의사회 등 의견 수렴
 - 질병관리청의 인체 감염병 관리체계의 기본 개념과 분류체계 조사

- On-line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가축전염병 관리체계와 전략 분석
 - WOAH, 미국, EU, 영국, 호주, 일본 등

- 가축전염병 분류 체계 개선안 및 법령 개정(안) 작성
 - 인체 감염병 및 해외 가축전염병 관리체계 조사를 통한 가축전염병 분류 체계 개선방안 수립
 - 개선된 가축전염병 분류 및 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법령 개정(안) 작성

-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의 새로운 관리체계 적용에 따른 목표 및 관리지표 설정
 - 중앙 및 지방방역기관의 목표 및 관리 지표에 대한 의견 수렴
 - 현실을 반영한 목표 및 관리지표 설정

- 현장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농식품부, 검역본부, 지방방역기관 및 축종별 수의사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토론회 개최
 - 전문가 간담회 및 실무회의 등 개최
 - 연구기관, 대학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실무회의 개최를 통하여 실질적인 문제점 도출과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이를 통한 최선의 개선방안 도출
 - 대한수의사회 및 축산단체 등과의 자문을 통한 개선안 의견 수렴

제2장 가축전염병 분류체계 개편

I. 선진국의 가축전염병 분류 체계

1. 관리 대상 가축전염병 선정과 이론적 근거

가. 근절 또는 방제 대상 가축전염병의 선정

- 한 국가에서 특정 가축질병을 근절하거나 집중적인 방제정책을 수립하여 실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상 질병의 선정과 우선순위 설정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다양한 분석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대상 질병의 선정과 우선순위 설정에 사용된 방법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다양하며, 국제기구나 각국의 정부 또는 연구자에 따라서, 해당 국가의 질병 피해 상황과 예산 투입 우선순위 등 현실적 여건과 주변상황에 따라서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음.
- 학술적으로 볼 때, 근절 또는 방제 대상 질병의 선정에 사용된 주요 방법은 여러 논문이나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대부분 경제적 편익 분석, 위험 평가, 다중 기준 평가, 산업구조와 발생 피해 규모, 공간 위험 매핑 및 시뮬레이션 모델링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나. 질병 관리의 우선순위 결정(disease prioritization)

- 질병 관리를 위한 우선순위 결정은 WOAHP, FAO 등의 국제기구나 EU와 같은 국가공동체에서 여러 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독특한 환경과 여건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음.
 - WOAHP의 경우, 아래와 같이 목표로 하는 질병들에 대한 직접적 자료는 물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및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간접적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OIE study. 2010).
 - 질병 발생상태 및 존재하거나 존재가 의심되는 질병의 역학적 사항
 - 존재하는 질병의 영향에 관한 질적 및 양적 요소
 - 인접 국가 및 질병 전염 위험이 높은 국가와 교류하는 기타 국가에서의 질병 분포(무역, 동물 이동, 인간 여행 등)
 - 질병에 대한 지역 감시 및 통제 시스템의 존재
- 언론에 게재된 기사와 대중적 관심을 기반으로 한 자료 분석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사결정 요소에 의거하여 정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Kebede Amenu 등, 2023).

- (1) 질병 통제, 예방 또는 근절 전략
- (2) 일반 조직 전략
- (3) 고위험 지역 또는 인구 식별
- (4) 질병 유입 또는 발생 위험 평가
- (5) 질병 감시
- (6) 연구 우선순위 설정 등 다양한 범주와 관련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행되고 있음.

2. 국제기구의 법정가축전염병 지정 현황과 과학적 근거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관리현황과 국내 법정 인체감염병 관리현황에 대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 및 국내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등재질병 우선순위 지정 및 법적 체계

□ WOAH 목록 등재(listed diseases) 기준

- 질병, 감염 및 침입을 포함하기 위한 기준
- 인수공통전염병을 포함한 주요 동물 질병의 국가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는 적시에 투명하고 일관된 통보를 통해 이루어짐.
- 일반적으로 질병 검색, 예방 및 방제 등 조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회원국을 지원하고, 국제교역에 있어서 동물과 그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을 제공하기 위함임.
- WOAH 질병 목록 등재 기준
 - <필수 규정>
 - 살아있는 동물 또는 그 매개체(vectors 또는 fomites)를 통해 병원체의 국제적 확산이 입증된 질병
 - 적어도 하나의 국가는 감수성 동물이 있는 상태에서 청정화 또는 청정화에 가까운 상태에 있음이 입증된 질병
 - 신뢰할 수 있는 검출 수단과 진단 수단이 존재하며, 정확한 사례 정의를 통해 사례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다른 질병, 감염 또는 침입과 구별할 수 있을 경우
 -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전파되는 것이 입증되었고 인체 감염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 <선택 규정>
 - 질병의 직접적 생산 손실 및 폐사를 포함한 임상 징후의 발생과 함께 심각도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 수준에서 가축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경우

- 야생동물에 있어서, 질병의 직접적 경제적 손실 및 사망률, 생존 가능성에 대한 위험성을 포함하여 임상 징후의 발생 및 심각도를 고려하였을 때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거나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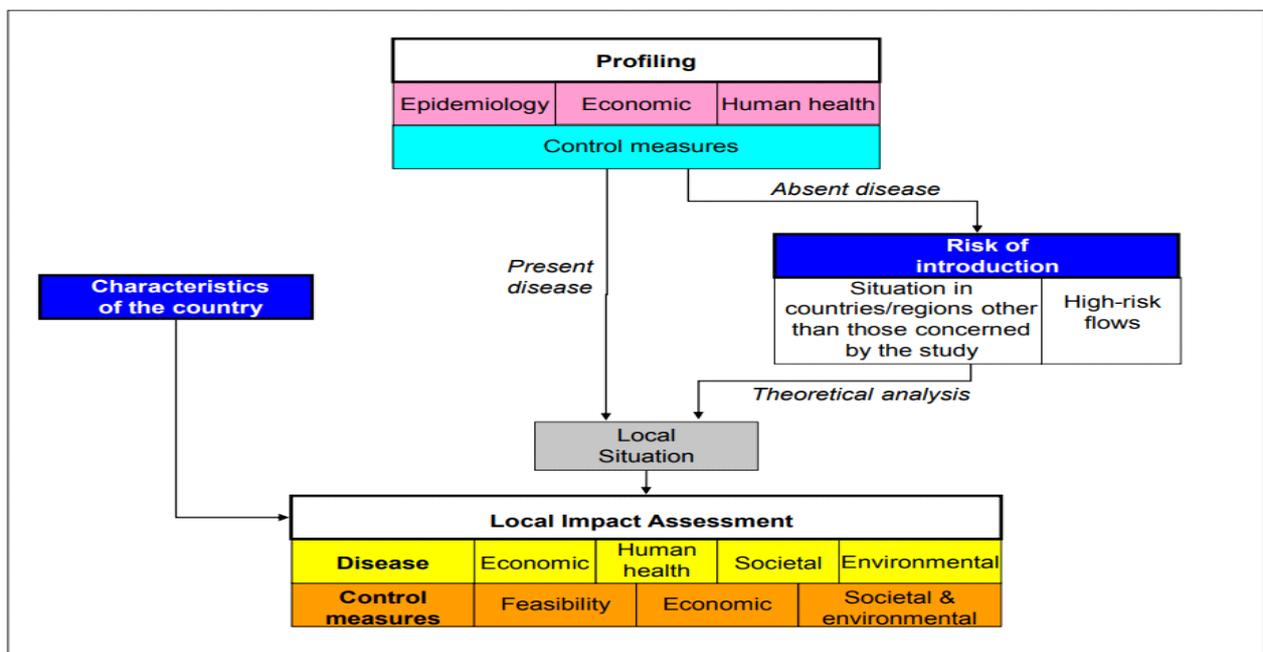
○ 이상의 등재 기준과 우선순위 결정요인들을 고려하여 전문가 그룹의 심층 검토와 분석을 거쳐서 WOAH 등재 질병(Listed diseases)을 결정하며(그림 2-1), WOAH에서는 아래와 같이 총 117종의 보고 의무 질병을 규정하고 있음.

<WOAH listed diseases 117종, 2024> - 구체적 분류체계

- ① 다축종: 탄저, 블루팅, 브루셀라병, FMD, 광견병, 우역, 웨스트나일열 등 21종
- ② 소: BVD, 소백혈병, 우역, BSE, 럽피스킨병(LSD) 등 14종
- ③ 양과 염소: 살모넬라병, 스크래피, 양두, 가성우역 등 12종
- ④ 말: 아프리카 마역(African horse sickness), 말 전염성자궁염 등 11종
- ⑤ 돼지: ASF, CSF, PRRS, TGE 등 6종
- ⑥ 가금: HPAI, ND, 추백리 등 13종
- ⑦ 낙타, 토끼, 꿀벌, 어류 등 40종

그림 2-1. WOAH 질병 우선순위 결정도

(General architecture of the categorisation and prioritisation tool)



(출처: OIE Study. 2010. Listing and Categorisation of Priority Animal Diseases, including those Transmissible to Humans)

□ WOAH 회원국의 질병 분류 및 우선순위 지정 프로세스의 일반적인 구성(OIE Study, 2010)

- WOAH 회원국들의 「동물 질병의 분류 및 우선순위 지정」 프로토콜 작성에 필요한 방법론적 순서를 WOAH에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그림 2-1).

<1단계: 국가의 정치적 목표 파악>

- 주요 가축전염병의 분류 및 관리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가축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정치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이는 서로 다른 유형의 지표 간에 적절한 가중치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며, 이를 위한 접근방법 사례는 다음과 같음.
 - ① 농업 부문, 특히 축산 부문의 목표 설정
 - 식량 안보, 식품 안전, 축산 강화, 축산물 수출 개발 등
 - 대상으로 하는 모집단의 종류: 소농가, 전업농, 기업농 등
 - ② 인체 보건 시스템과의 관계 목표 설정
 - 공중보건 정책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이 차지하는 위치
 - 대상으로 하는 모집단의 종류: 빈민, 자녀 등

<2단계: 분류 및 우선순위 분석에 포함할 질병의 정의 규정>

-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10종 이상의 충분한 수의 관련 질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국가의 질병 존재 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인임.
 - 개발도상국의 경우, 보통 국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질병 몇 종에 초점을 맞추게 됨.
 - 선진국의 경우, 가장 중요한 질병에 대한 합의를 이룬 후, 영향이 중등도 이하인 질병을 배제하는 전략을 사용함.
- 이 때,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질병(예: 드물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질병, 빈도가 높지만 중증도가 낮은 질병, 인수공통전염병, 생산 질병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3단계: 전문가팀 구성>

- 분류 및 우선순위 지정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의 수준은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이며, 결과물은 전문가 그룹의 기술의 깊이와 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작업은 최종 결론의 편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의사와 동물 건강 전문가

외 특정기술 전문 분야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중앙 및 지역의 방역당국, 전염병 및 병리, 임상수의학자, 가축의 생산 및 무역 시스템 유경험 경제학자, 사회학자 및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인체 보건 전문가, 환경 보건 전문가, 가축 전문가 및 야생동물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4단계: 필요한 모든 데이터 수집 및 국가 특성화>

- 질병 우선순위 지정 및 분류의 실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프로토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수집이 필수적임.
 - 프로파일링 단계에 해당하는 질병 및 해당 통제 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 정보수집은 다양한 경로, 특히 국제기구(WOAH, OFFLU, FAO 등) 또는 관련 지역 기관의 DB 검색 또는 과학 문헌 검토, 관련 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수집
 - 그 외 공중 보건, 지역 환경 데이터, 동물 생산, 지역 경제 수치, 관련 인프라 등 다양한 해당 분야의 정보 수집
 - 다양한 질병에 대한 특정 데이터 및 질병 역학, 교역국 및 인접국의 질병 분포와 이동상, 질병에 대한 지역 감시 및 통제 시스템의 존재 등
- 최종적으로 “국가 특성화” 스프레드시트(spreadsheet) 완성 및 각 데이터의 관련성과 신뢰성 평가

<5단계: 질병 프로파일링 수행>

- “질병의 역학적 프로필”, “질병의 경제적 프로필”, “인수공통감염병 프로필” 및 “동물의 통제 조치 프로파일링” 자료를 사용하여 각 질병의 프로파일링을 시작함.
 - 프로필은 질병별로 평가하되,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에 의한 수행 필요
- 다음 단계로서 각 질병에 대한 데이터의 요약 테이블 기록 및 전체 전문가팀에 의한 각 질병의 프로필 검증, 논의 및 식별.

<6단계: 질병에 대한 공개 토론을 통해 해당 국가의 상황 평가>

- 지역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실제상황에 대한 정보와 전문지식 공유를 위해 공개 토론을 우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으며, 공개 질문 또는 설문을 통한 상황 평가 가능.

<7단계: 도구를 사용한 질병 관련 영향에 대한 로컬 접근방식 수행>

- 공개토론 후 질병의 지역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스프레드시트의 “지역 경제적 영향”, “지역의 인간건강적 영향”, “지역 사회 영향”, “사회적 영향”, “환경 영향”) 작성 가능.

- 질병별 분석 후 결과의 요약표 기록

<8단계: 제어 조치에 대한 로컬 접근방식 수행>

- 전문가에 의하여 통제 조치의 지역 타당성, 통제 조치의 경제적 영향, 통제 조치의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에 관한 스프레드시트 자료를 사용하여 통제 조치에 대한 기준 마련.

<9단계: 만들어진 내부자료의 예비단계 평가>

- 후보 질병들에 대한 결과 요약표 비교
 - ① 각 지표의 종류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여 질병의 국소적 특성 검증
 - ② 발생 또는 비발생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우선순위는 각 영향 지표에 대해 다른 가중치로 평가
 - ③ 방제 조치와의 비교 평가 수행

<10단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토론>

- 수의사, 사양가 등 관련 분야의 현지 전문가와 논의하여 우선순위 지정 결과의 검증 및 자체 우선순위 기준에 대한 정보 습득과정을 거침.

<11단계: 반복 프로세스>

- 질병의 분류와 우선순위 지정은 불변의 절대적 평가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반복되어야 함.
 - 과학 지식의 발전, 지역 상황의 변화(질병 퇴치, 새로운 질병 도입 등), 경제적 맥락의 변화, 축산물 수출의 확대, 인접국의 역학적 상황변화 등

나. FAO 질병 우선순위 설정 및 법적 체계 (FAO, 2021. Disease prioritization and legal framework)

- 질병의 우선순위 결정: 어떤 질병이 특정 지역과 국가에 경제적, 공중 보건에 중요한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계이며, 많은 국가에서 동물 건강에 대한 조치는 주로 정치적인 요인과 FAO, OIE와 같은 국제기구의 결정 및 관련 프로젝트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됨.
- FAO는 상황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결정하며, 지속되지 않는 일시적 상황은 고려 대상에서 배제함. 특정 프로젝트 연구를 통해 실제 요구가 조건에 충족되더라도 정부는 당국의 필요와 우선순위,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함.
- 또한, 필요성과 우선순위 및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함.

- 이와 함께, 질병 우선순위 행사, 평가 임무 및 설문조사를 통해 국가의 현재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며, 우선순위 프로세스는 사람, 동물 및 환경의 건강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인간 건강, 동물 건강 및 환경 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One Health 접근 방식에 따라 수행됨.
- 환경·보건 당국, 특히 인수공통질병과 관련된 경우. 우선순위가 설정된 후에는 우선순위가 지정된 질병에 대한 대비, 예방, 감지, 대응 및 복구의 기본적인 법적 기반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

3. 주요 선진국의 법정가축전염병 지정 및 관리 현황

미국, EU,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법정가축전염병 지정 및 관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크게 2 범주(categories)로 구분하여 관리함.

가. 즉시 신고 또는 보고 의무 질병(reportable, notifiable 또는 listed disease)

- 국가적 차원에서 발생 시 즉각적 신고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질병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방역조치 적용.
- 감염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질병 중 사람에게 전파 위험성이 높거나 축산농장에서 국가적 차원의 방역관리가 더 효과적인 질병에 한정함.
 - 이 범주에 속하는 대부분의 질병이 현장에서 발생 빈도는 높지 않지만 발생 시 국가적 피해가 매우 크고 위험한 질병들이며, 필수불가결한 질병에 대하여만 최소한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농장의 불만과 반발이 적음.
 - 질병 유입 시 전파력이 빠르며 질병으로 인한 폐사율이나 증상 피해가 국가적으로 막대한 수준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신속한 방역조치가 필요할 경우 지정.

나. 비신고 또는 즉시 신고 의무 면제 질병

(non-reportable, non-notifiable 또는 non-listed disease)

- 즉각적 신고 의무는 없으나, 발생시 정기적으로 종합하여 보고하거나 축산 관련 협회·단체 및 축산농장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되 질병 발생정보를 공공시스템에 제공하는 형태의 질병으로서 긴급조치가 불필요한 질병이 이에 해당함.
- 농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농장 차원에서 치료와 회복을 통하여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질병은 비신고 질병으로 분류.
- 농장과 축종별 협회·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발생 정보를 정부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 운영.
 - 이 부류에 속하는 질병들에 대한 정확한 발생 정보들을 취합하여 공개함으로써

써 신뢰성 있는 정책지표 설정 및 농가 차원의 효율적인 예방 및 방역대책 수립에 기여.

※ 덴마크, 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농장들이 축종별 전문 수의사와 컨설팅 계약 의무화 → 농장 전담 수의사가 객관적으로 농장의 상황을 파악하여 질병의 발생을 인지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음.

- 계약 수의사는 농장의 상황의 지속적 관찰, 질병 방역 및 관리체계 상시 점검 개선 담당

3-1. 미국 (United States National List of Reportable Animal Diseases, NLRAD)

○ 국가적 방역조치가 필수적 질병에 대하여 국가적 신고 의무 동물질병(notifiable diseases) 리스트를 지정(NLRAD)하여 관리하며, 전문가의 즉각적인 신고와 긴급 방역 조치가 필수적 질병임(9 CFR 57, title 9).

가. 질병 분류별 정의

1) 신고 의무 질병(Notifiable Diseases)

- 신고 대상 질병 및 조건은 다음의 3부류로 구성되며, 동물 보건 전문가(Animal Health Professionals)가 즉시 보고해야 함.

① 비상(emergency) 질병

② 신종(emerging) 질병

③ 규제(regulatory) 질병: 국가 결핵 퇴치 프로그램과 같은 근절 또는 통제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이 있는 질병이며, 이 경우 CFR에 보고 및 통제와 관련된 특정 지침을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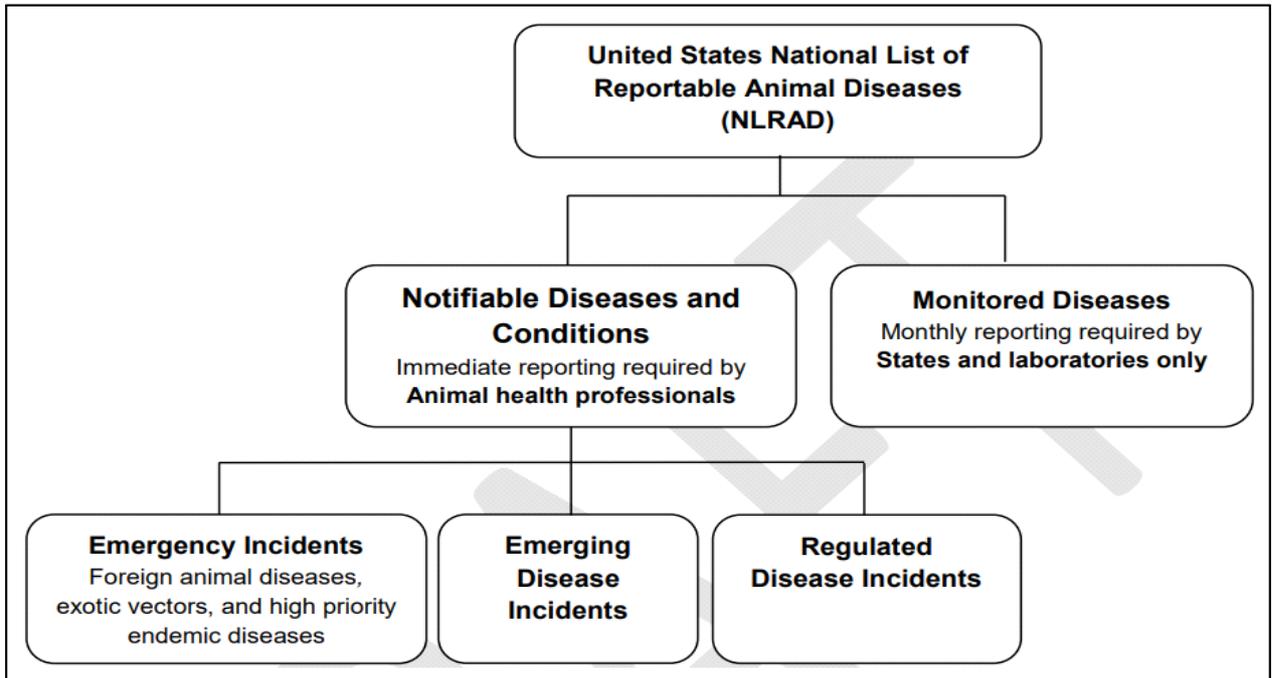
2) 모니터링 질병(Monitored Diseases)

- 모니터링 대상 질병은 풍토병(endemic) 성으로 미국 내에서 연중 발생하고 있는 질병으로서 주 동물보건공무원 및 연구소의 월간 발생보고 대상임.
- APHIS는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방역조치 없이 질병발생 변화 양상만 모니터링함.

나. NLRAD의 목적 및 체계

- NLRAD는 주 동물보건공무원이 APHIS에 자발적으로 질병 발생을 보고토록 하는 국가 동물건강보고시스템(NAHRS)을 기반으로 함.
- 표준매뉴얼은 질병 목록의 구조와 내용, 역할, 정보 요구 사항 및 목록 업데이트를 위한 APHIS의 프로세스를 정하고 있음.
- NLRAD 시스템은 신고의무 질병 및 상태 모니터링 질병의 두 범주를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물질병 보고체계를 정리하면 그림 2-2로 요약할 수 있음.
 그림 2-2. 미국 NLRAD 시스템에 따른 동물질병 보고체계도



(출처: USDA. 2020. U.S. National List of Reportable Animal Diseases (NLRAD) System Standards)

다. 법정 가축전염병의 분류별 지정(표 2-1)

1) 신고 의무 질병(Notifiable diseases)

- 다축종, 우제류 및 기제류 등(57종): 우역, 구제역, 탄저, 블루텅, 광견병 등
- 돼지(4종): CSF, ASF, Nipah virus 감염증, 돼지 수포성질병(SVD) 등
- 가금(7종): HPAI, Virulent ND, TRT, 추백리, 가금티푸스, DVH 등

2) 모니터링 질병(Monitored Diseases)

- 다축종, 우제류 및 기제류 등(35종): 블루텅, Q열, BVD 등
- 돼지(3종): PRRS, TGE 등
- 가금(6종): IB, ILT, IBD, MG, MS, 앵무병

표 2-1. 미국의 신고 의무 질병 및 보고 대상 질병 분류와 목록(A, B)

A. 신고의무 질병 (Notifiable Diseases: Terrestrial)

대상 동물	질 병 명
다축종 Multi-Spec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kabane • Anthrax (<i>Bacillus anthracis</i>)* • Bluetongue* (Serotype 8) • Bovine tuberculosis * (<i>Mycobacterium bovis</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ucellosis (<i>Brucella abortus</i>)* • Brucellosis (<i>Brucella melitensis</i>)* • Brucellosis (<i>Brucella suis</i>)* • Crimean Congo hemorrhagic fever* • Eastern Equine encephalomyelitis* • Epizootic hemorrhagic disease (EHD)* • Foot-and-mouth disease (FMD)* • Heartwater* • Japanese Encephalitis* • Melioidosis (<i>Burkholderia pseudomallei</i>) • 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 (<i>M. caprae</i>, <i>M. tuberculosis</i>) • New World screwworm* (<i>Cochliomyia hominivorax</i>) • Old World screwworm* (<i>Chrysomya bezziana</i>) • Pseudorabies* (Aujeszky's disease) • Rabies* • Rift Valley fever* • Rinderpest* • SARS-CoV-2 • Surra* (<i>Trypanosoma evansi</i>) • Trichinellosis* (<i>Trichinella</i> spp.) • Vesicular stomatitis • West Nile fever/virus*
소 Bov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vine babesiosis* (<i>Babesia bovis</i>, <i>B. bigemina</i>)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 Contagious bovine pleuropneumonia* (<i>Mycoplasma mycoides mycoides</i>) • Hemorrhagic septicemia* (<i>Pasteurella multocida</i>, serotypes B/Asian or E/African) • Lumpy skin disease* • Theileriosis* (<i>Theileria annulata</i>, <i>T. orientalis</i>, <i>T. parva</i>) • Trichomoniasis* • Trypanosomiasis* (tsetse-transmitted) (<i>Trypanosoma congolense</i>, <i>T. vivax</i>, <i>T. brucei</i>, <i>T. evansi</i>, <i>T. simiae</i>)
돼지 Porc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frican swine fever* • Classical swine fever* (hog cholera) • Nipah virus* • Swine vesicular disease
조류 Avi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uck viral hepatitis* (<i>Duck hepatitis A virus</i>) (Domestic poultry) • Fowl typhoid* (<i>Salmonella enterica</i> -Gallinarum) •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reporting of occurrence in all birds) • Low pathogenic avian influenza* (domestic and captive wild birds with LPAI viruses having proven natural transmission to humans associated with severe consequences) • Pullorum disease* (<i>Salmonella enterica</i>- Pullorum) • Turkey rhinotracheitis* (<i>avian metapneumovirus</i>) (Domestic poultry) • Virulent Newcastle Disease* (Domestic poultry)
말 Equ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frican horse sickness* • Contagious equine metritis* (CEM, <i>Taylorella equigenitalis</i>) • Dourine* (<i>Trypanosoma equiperdum</i>) • Equine infectious anemia* (E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quine piroplasmiasis* (babesiosis, <i>Theileria equi</i>, <i>Babesia caballi</i>) • Equine rhinopneumonitis/ equine herpesvirus-1 myeloencephalopathy (EHV1-EHM) • Glanders* (<i>Burkholderia mallei</i>) • Hendra • Venezuelan Equine encephalomyelitis* (VEE) • Western Equine encephalomyelitis* (WEE)
양 및 염소 Caprine and Ov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tagious caprine pleuropneumonia* (<i>Mycoplasma capricolum capripneumoniae</i>) • Mange (<i>Sarcoptes scabiei</i> var <i>ovis</i>, <i>Chorioptes bovis</i>, <i>Psoroptes ovis</i>, <i>Psoroptes cuniculi</i>, <i>Psoregates ovis</i>) • Nairobi sheep disease* • Peste des petits ruminants* • Scrapie* • Sheep pox and goat pox*
사육 사슴 Farmed Cerv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ronic wasting disease (CWD)
토끼류 Lagomorp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yxomatosis* • Rabbit hemorrhagic disease*(infestation with <i>Tropilaelaps</i> spp.)
꿀벌 Honey B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ropilaelaps</i> infestation of honey bees*
기타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mel pox* • Infection of dromedary camels with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 Leishmaniasis*

* 2023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WOAH) 보고 대상 질병

B. Monitored Diseases (육상동물)

대상 동물	질 병 명
다축종 Multi-Spec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uetongue* (Serotypes other than 8) • Echinococcus Granulosis (Hydatidosis)* • Echinococcus Multilocularis (<i>Alveolar Echinococcosis</i>)* • Paratuberculosis* (Johne's disease) (<i>Mycobacterium avium paratuberculosis</i>) • Q fever* (<i>Coxiella burnetti</i>) • Tularemia* (<i>Francisella tularensis</i>)
소 Bov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aplasmosis* (<i>Anaplasma marginale</i>, <i>A. central</i>) • Bovine genital campylobacteriosis* (<i>Campylobacter fetus venerealis</i>) • Bovine viral diarrhea* (BVD, mucosal disease) • Enzootic bovine leucosis* (BLV) • Infectious bovine rhinotracheitis/infectious pustular vulvovaginitis* (IBR/IPV) • Malignant catarrhal fever
돼지 Porc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fection with <i>Taenia solium</i>* (Porcine Cysticercosis) •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PRRS) • 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TGE)
조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vian chlamydiosis* (psittacosis) (<i>Chlamydia psittaci</i>)

Avi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vian infectious bronchitis* • Avian infectious laryngotracheitis* • Avian mycoplasmosis* (<i>Mycoplasma gallisepticum</i>) • Avian mycoplasmosis* (<i>Mycoplasma synoviae</i>) • Infectious bursal disease* (Gumboro disease)
말 Equ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quine influenza* (virus type A) • Equine rhinopneumonitis EHV-1* (non EHM) • Equine viral arteritis* (EVA) • Pigeon fever (<i>Corynebacterium pseudotuberculosis</i>, ulcerative lymphangitis) • Strangles (<i>Streptococcus equi equi</i>)
양 및 염소 Caprine and Ov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prine arthritis/encephalitis* (CAE) • Contagious agalactia* (<i>Mycoplasma agalactiae</i>, <i>M. Capricolum capricolum</i>, <i>M. putrefaciens</i>, <i>M. mycoides mycoides</i>, <i>M. mycoides mycoides</i> LC) • Enzootic abortion of ewes* (Ovine chlamydiosis, <i>Chlamydophila abortus</i>) • Maedi-visna/ovine progressive pneumonia* • Ovine epididymitis* (<i>Brucella ovis</i> infection) • Salmonellosis* (<i>Salmonella abortusovis</i>) Equine • Equine influenza* (virus type A) • Equine rhinopneumonitis EHV-1* (non EHM) • Equine viral arteritis* (EVA) • Pigeon fever (<i>Corynebacterium pseudotuberculosis</i>, ulcerative lymphangitis) • Strangles (<i>Streptococcus equi equi</i>)
꿀벌 Honey B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arapisosis of honey bees* (infestation with <i>Acarapis woodi</i>) • American foulbrood of honey bees* (infection with <i>Paenibacillus larvae</i>) • Deformed Wing Virus, Variant C (DWV-C) • European foulbrood of honey bees* (infection with <i>Melissococcus plutonius</i>) • Slow bee paralysis virus (SBPV) • Small hive beetle infestation* (<i>Aethina tumida</i>) • Varroosis of honey bees* (Infestation with <i>Varroa</i> spp.)

* 2023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WOAH) 보고 대상 질병

라. 신고 의무 및 모니터링 대상 질병 관리(NLRAD System standards)

- 신고 대상 질병 및 조건과 상태는 전술한 대로 발생 즉시 신고하는 긴급질병 발생, 신종질병 발생 및 규제 대상 질병 발생건으로 구성됨.
 - 국가적 방역정책과 조치는 조기검색, 확산 방지, 조기근절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기본으로 하여 국가적 상황에 따라 운용
- 모니터링 대상 질병의 관리는 NLRAD 규정에 따라 APHIS에서 주 정부 및 실험실(정부의 승인을 받은 대학 실험실 포함)의 월간보고를 취합하여 관리함.
 - 대상 질병에 대해 실시된 진단검사 횟수, 확진동물 수, 예방 접종 상태, 감수성 동물 수 또는 기타 역학 정보 등 추가정보의 자발적 제출 요청 가능
 - 개인이나 사설법인에게는 NLRAD 규정에 따른 모니터링 질병의 월간보고 의무가 없으나 주 관리규정 별로 차이가 있음.
- 질병 분류 별로 신고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역할에 차이가 있으며, 신

고시기, 신고주체 별로 역할이 규정되어 있음(표 2-2).

표 2-2. 질병 등급별 신고기관, 신고시기 및 신고자의 역할

	Notifiable Diseases	Monitored Diseases
Diagnostic laboratories	Report to State and APHIS immediately.	Report occurrence and other requested information to States at least monthly
Accredited veterinarians	Report to State and APHIS immediately.	Reporting not required for NLRAD regulation
Non-accredited veterinarians	Report to State and APHIS immediately.	Reporting not required for NLRAD regulation
Other animal health professionals	Report to State and APHIS immediately.	Reporting not required for NLRAD regulation
State officials	Communicate and cooperate with Tribal Nations and APHIS	Report occurrence and other requested information to APHIS monthly
APHIS	Communicate and cooperate with States and Tribal Nations. Report timely, accurate, and consistent summary information on current health status of U.S. animals.	Report timely, accurate, and continuous summary information on current health status of U.S. animals.

(출처: USDA (APHIS). 2020. NLRAD System standards)

3-2. 일본

- 가축전염병 예방법(the Act on Domestic Animal Infectious Diseases Control)에 근거하여 즉시 신고 대상인 가축전염병 28종과 내각령 및 MAFF 부령에서 정한 보고질병 71종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표 2-3).

가. 가축전염병(Domestic Animal Infectious Diseases) 28종

-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축질병 28종을 가축전염병으로 규정하고,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신속한 국가 방역조치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 소(15종): 우역, 구제역, 탄저, 브루셀라병, 광견병, 우결핵 등
 - 돼지(3종): 돈열(CSF), ASF, 돼지수포성질병
 - 가금(5종): HPAI, LPAI, 뉴캐슬병(ND), 가금콜레라, 조류살모넬라증
 - 말(3종): 선역, 말전염성빈혈, 아프리카마역
 - 양 및 염소(1종): 가성우역(Peste des petits ruminants)
 - 꿀벌(1종): 부저병(Foul brood)

나. 신고 대상 전염병(Notifiable Infectious Diseases) 71종

- 상기 28종의 국가적 관리 대상 가축전염병 외에 71종의 가축 관련 전염병을 '보고 대상 감염병(Notifiable Infectious Diseases)'으로 지정하고, 의무 고시를 통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음.
- 발생 시 지자체 등을 통한 신고 및 집계를 통하여 발생상황 변화를 추적하며, 질병별 방역지침을 정하여 지도하고 있음.
 - 소 등 반추류(22종): 블루텅, 아까바네병, 럼피스킨병 등
 - 돼지(9종): 오제스키병, TGE, PRRS 등
 - 조류(13종): 계두, MD, IB, ILT, IBD, AL, DVH, DVE 등
 - 말(10종):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말 인플루엔자 등
 - 양, 염소 등(10종): Toxoplasmosis, Mange, Goat pox 등
 - 기타(7종: 사슴, 토끼, 꿀벌 등 3종)

표 2-3. 일본의 신고 대상 가축전염병

A. 즉시 신고 대상 가축전염병(Domestic Animal Infectious Diseases: 28종)

Type of infectious diseases	Species of domestic animals
1. Rinderpest	Cattle, sheep, goat, pig, water buffalo, deer, wild boar
2. Contagious bovine pleuropneumonia	Cattle, water buffalo, deer
3. Foot-and-mouth disease	Cattle, sheep, goat, pig, water buffalo, deer, wild boar
4. Infectious encephalitis	Cattle, horse, sheep, goat, pig, water buffalo, deer, wild boar
5. Rabies	Cattle, horse, sheep, goat, pig, water buffalo, deer, wild boar
6. Vesicular stomatitis	Cattle, horse, pig, water buffalo, deer, wild boar
7. Rift Valley fever	Cattle, sheep, goat, water buffalo, Deer
8. Anthrax	Cattle, horse, sheep, goat, pig, water buffalo, deer, wild boar
9. Haemorrhagic septicaemia	Cattle, sheep, goat, pig, water buffalo, deer, wild boar
10. Brucellosis	Cattle, sheep, goat, pig, water buffalo, deer, wild boar
11. Tuberculosis	Cattle, goat, water buffalo, deer
12. Johne's disease	Cattle, sheep, goat, water buffalo, deer
13. Piroplasmiasis (limited to that caused by pathogen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Cattle, horse, water buffalo, deer
14. Anaplasmosis (limited to that caused by pathogen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Cattle, water buffalo, deer
15.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Cattle, sheep, goat, water buffalo, deer
16. Glanders	Horse
17. Equine infectious anaemia	Horse
18. African horse sickness	Horse
19. Ovine rinderpest (Peste des petits ruminants)	Sheep, goat, deer
20. Classical swine fever	Pig, wild boar
21. African swine fever	Pig, wild boar
22. Swine vesicular disease	Pig, wild boar
23. Fowl cholera	Chicken, duck, quail, turkey

24.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Chicken, duck, quail, pheasant, ostrich, guinea fowl, turkey
25. Low pathogenic avian influenza	Chicken, duck, quail, pheasant, ostrich, guinea fowl, turkey
26. Newcastle disease (limited to that designated as highly pathogenic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 ₁₎	Chicken, duck, quail, turkey
27. Avian salmonellosis (limited to that caused by pathogen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 ₂₎	Chicken, duck, quail, turkey
28. Foul brood	Honey bee

*1) 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기준은 OIE 육상동물위생법 제10. 4.와 동일.

*2) 장관령으로 정하는 원인균은 *Salmonella Gallinarum* 및 *Salmonella Pullorum*임.

B. 신고 대상 전염병(Notifiable Infectious Diseases: 71종)

Type of infectious diseases	Species of domestic animals
1. Bluetongue	Cattle, water buffalo, deer, sheep, goat
2. Akabane disease	Cattle, water buffalo, sheep, goat
3. Malignant catarrhal fever	Cattle, water buffalo, deer, sheep
4. Chuzan disease	Cattle, water buffalo, goat
5. Lumpy skin disease	Cattle, water buffalo
6. Bovine viral diarrhea / mucosal disease	Cattle, water buffalo
7. Infectious bovine rhinotracheitis	Cattle, water buffalo
8. Bovine leukosis	Cattle, water buffalo
9. Aino virus infection	Cattle, water buffalo
10. Ibaraki disease	Cattle, water buffalo
11. Bovine papular stomatitis	Cattle, water buffalo
12. Bovine ephemeral fever	Cattle, water buffalo
13. Melioidosis	Cattle, water buffalo, deer, horse, sheep, goat, pig, wild boar
14. Tetanus	Cattle, water buffalo, deer, horse
15. Blackleg	Cattle, water buffalo, deer, sheep, goat, pig, wild boar
16. Leptospirosis (caused by only <i>Leptospira pomona</i> , <i>Leptospira canicola</i> , <i>Leptospira icterohaemorrhagiae</i> , <i>Leptospira grippityphosa</i> , <i>Leptospira hardjo</i> , <i>Leptospira autumnalis</i> and <i>Leptospira australis</i>)	Cattle, water buffalo, deer, pig, wild boar, dog

17. Salmonellosis (caused by only Salmonella dublin,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and Salmonella choleraesuis)	Cattle, water buffalo, deer, pig, wild boar, chicken, duck, quail turkey
18. Bovine campylobacteriosis	Cattle, water buffalo
19. Trypanosomiasis	Cattle, water buffalo, horse
20. Trichomoniasis	Cattle, water buffalo
21. Neosporosis	Cattle, water buffalo
22. Cattle grub	Cattle, water buffalo
23. Nipah virus infection	Horse, pig, wild boar
24. Equine influenza	Horse
25. Equine viral arteritis	Horse
26. Equine rhinopneumonitis	Horse
27. Equine morbilli virus pneumonia	Horse
28. Horse pox	Horse
29. Tularemia	Horse, sheep, pig, wild boar, rabbit
30. Contagious equine metritis	Horse
31. Equine paratyphoid	Horse
32. Epizootic lymphangitis	Horse
33. Contagious ecthyma	Deer, sheep, goat
34. Nairobi sheep disease	Sheep, goat
35. Sheep pox	Sheep
36. Maedi visna	Sheep
37. Contagious agalactia	Sheep, goat
38. Enzootic abortion of ewes	Sheep
39. Toxoplasmosis	Sheep, goat, pig, wild boar
40. Mange	Sheep
41. Goat pox	Goat
42. Caprine arthritis / encephalomyelitis	Goat
43. Contagious caprine pleuralpneumonia	Goat
44. Aujeszky's disease	Pig, wild boar
45. 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Pig, wild boar
46. Swine enteroviral encephalomyelitis	Pig, wild boar
47. Porcine reproductive / respiratory syndrome	Pig, wild boar
48. Swine vesicular exanthema	Pig, wild boar

49. Porcine epidemic diarrhea	Pig, wild boar
50. Atrophic rhinitis	Pig, wild boar
51. Swine erysipelas	Pig, wild boar
52. Swine dysentery	Pig, wild boar
53. Avian influenza* ₃	Chicken, duck, quail, turkey
54. Low pathogenic Newcastle disease* ₄)	Chicken, duck, quail, turkey
55. Avian pox	Chicken, quail
56. Marek's disease	Chicken, quail
57. Infectious bronchitis	Chicken
58. Infectious laryngotracheitis	Chicken
59. Infectious bursal disease	Chicken
60. Avian leucosis	Chicken
61. Avian tuberculosis	Chicken, duck, quail, turkey
62. Avian Mycoplasmosis	Chicken, turkey
63. Leucocytozoonosis	Chicken
64. Duck hepatitis	Duck
65. Duck viral enteritis	Duck
66. Rabbit hemorrhagic disease	Rabbit
67. Myxomatosis	Rabbit
68. Varroosis	Honey bee
69. Chalkbrood	Honey bee
70. Acariosis	Honey bee
71. Nosemmosis	Honey bee

*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제외한 모든 조류인플루엔자

*4)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된 뉴캐슬병을 제외한 모든 뉴캐슬병

다. 신고 전염병(Notifiable Infectious Diseases)에 대한 발생 신고 체계

-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감염병에 관한 고지의 의무
- 가축이 가축전염병(28종, 표 2-3A.) 이외의 신고 전염병(= 모니터링 대상 전염병, 표 2-3B)에 걸렸거나 감염이 의심될 경우, 진단에 관여한 수의사는 그 상황에 대하여 지체없이 관할 도도부현 지자체장에게 신고토록 함.
 - 신고를 받은 도도부현의 장은 관할 시정촌의 장에게 발생상황 통지 및 농림수산성에 보고.
 - 보고를 받은 농림수산상(농림수산부 장관)은 실험 연구, 정보 수집 및 기타 가축 감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이행.
 - 지자체장은 신고 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예측을 위하여 필요시 현(縣) 동물위

생검사관의 검사실시 명령과 함께 발병 진행 상황 확인.

- 지자체장의 검사실시 명령은 시행일 1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발령 하되, 긴급시에는 3일로 단축 가능.

- 검사실시 목적, 대상지역, 대상가축의 범위, 실시일, 검사 방법 명시.

→ 지자체장은 농림수산성에 검사 결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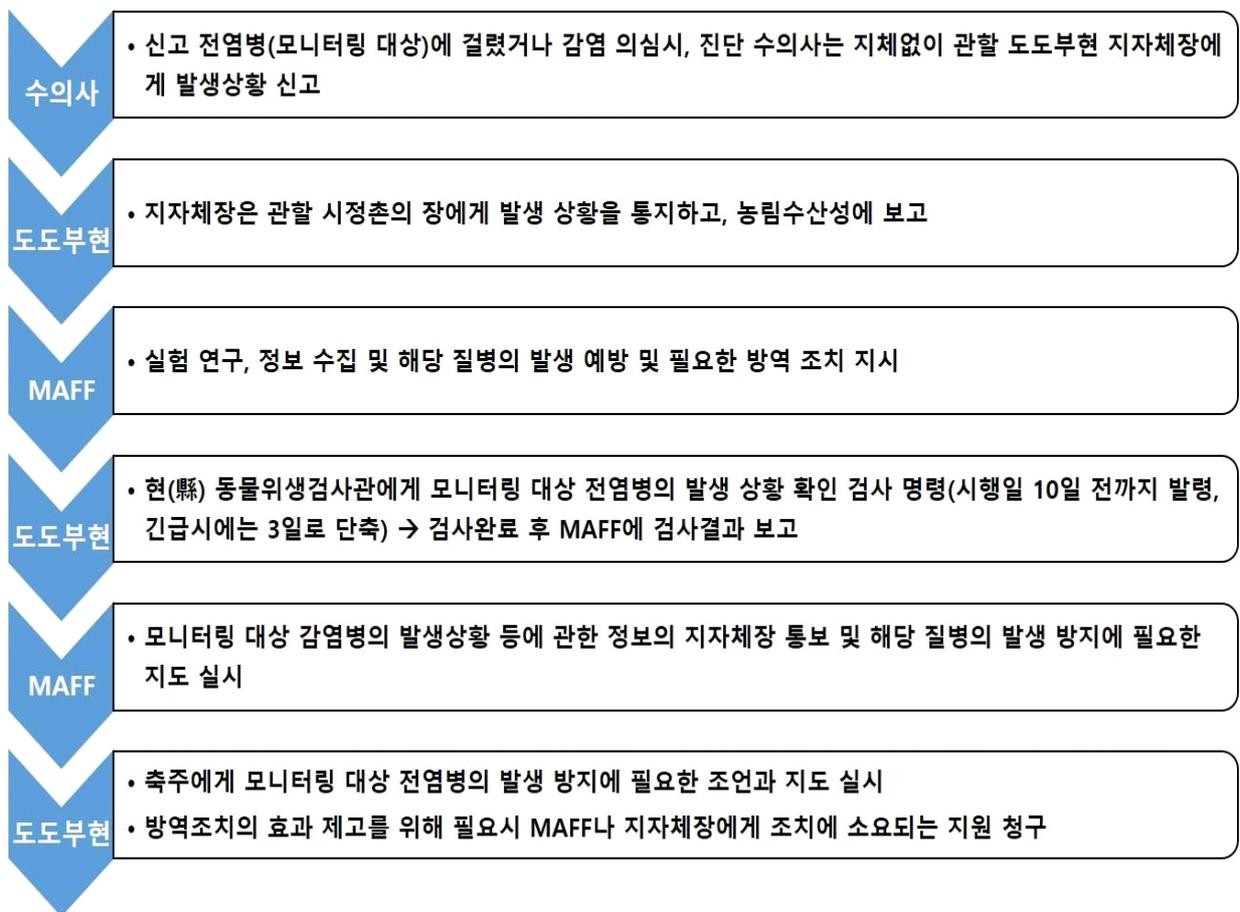
→ 농림수산상은 모니터링 대상 감염병의 발생상황 정보를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질병의 확산차단에 필요한 지침 하달.

→ 지자체장은 축주에게 **모니터링 대상 전염병의 발생 방지에 필요한 조언과 지도 실시.**

- 지자체는 방역조치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필요시 농림수산상이나 관련 도도부현 지사에게 방역조치에 소요되는 지원 청구

○ 이상과 같이 모니터링 대상 질병의 발생시 신고 및 이에 따른 방역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그림 2-3).

그림 2-3. 일본의 신고 전염병(Notifiable Infectious Diseases)에 대한 발생신고 및 조치 체계



라. 민간 차원의 일본 가축전염병 방역조치 기본체계

(Basic Framework of Measures against Infectious diseases in domestic animals, MAFF. Japan. 2024)

1) 국가 방역조직 기본체계

- 중앙방역조직이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과 긴밀한 공조를 하면서 전국의 방역 체제를 총괄하고 있으며, 비상질병 발생시 이동제한, 살처분 등의 긴급 방역조치와 사양위생 관리기준 지도 및 점검 등 사육현장에 대한 방역 관리·지도 업무는 도도부현에서 전담하고 있음.
 - 도도부현 축산 주무과 등 방역 행정조직과 동물보건위생소, 식육위생검사소 등의 실무조직으로 구성.
- 가축방역체제는 방역 주체의 측면에서 2단계로 나눌 수 있음.
 - ① 국가가 법률에 의해 도도부현(가축보건위생소)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가축방역 대책
 - ② 가축사양가에 의한 농장 자율방역
 - 축산농가 또는 축산단체의 자율방역은 1980년에 설립된 (사)전국가축축산물위생지도협회가 중심이 된 민간 자율방역 중심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
- 가축축산물위생지도협회의 회원으로는 도도부현 가축축산물 위생지도협회 45개소, 농협, 낙농, 양돈, 양계, 수의사회 등 비영리 축산 관련 단체 13개소, 마사회, 동물약품협회, 동물용기자재협회 등 찬조단체 3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회원의 연회비와 부과금, 찬조금, 보조금, 기금, 광고 수입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예산으로 가축방역과 질병 모니터링, 홍보, 가축보건과 임상교육 실시는 물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상조금 교부를 통한 농가 보상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음.

<시사점>

-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중심 방역체계는 지자체의 중앙정부 의존성 심화, 지자체의 전문성 확보 노력 약화, 중앙방역기구의 피로감 누적 등 부작용이 많으므로 중앙과 지방의 확실한 역할 분담 및 책임 부여 필요.
- 현장 방역의 상당 부분은 축산인 및 축산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율방역체계로 실행되는 것이 국가 방역조직의 효율성 확보면에서 유리하나 민간 중심 방역체계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서는 중앙 및 지자체의 예산 및 인프라 지원체계 지원 필수.

2) 축산인 및 축산단체의 역할 규정

- 일본의 경우, 가축 사양가의 일상적인 자율방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철저한 차단방역, 적절한 예방접종 및 검사 등에 대한 자율적 조치사항을 질병별로 명확

히 규정하고 있으며, 농가 자율방역은 2종류로 구분됨.

가) 전국적 축산물위생지도협회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수단 확보를 위해 조직적이고 통일된 방법으로 각종 방역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도부현에 민간 주도의 축산물위생지도협회를 설치하여 민간방역을 선도하도록 지원함.

<국가방역에 있어서의 협회 임무>

- 협회 및 기타 단체가 주도하는 조직적인 자율방역은 이를 위한 실행 프로그램 수립, 농장 자율방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제고, 철저한 예방접종, 이를 위한 조직적 감시 활동 등을 포함함.
- 예방접종을 포함한 협회 주도의 자가검역사업(협회사업) 실시: 예방접종은 가축 사양가에 의한 자발적 백신접종과 협회의 예방접종계획에 따른 백신접종 사업으로 구분됨.
- 사업 내용의 다양화, 자율방역 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 확대를 통한 운영 기반 개발 및 강화방안 강구.

나) 가축 사양가에 의한 개별적 자율방역

- 중앙 정부와 지자체는 긴밀한 협력하에 가축 사양가들의 개별적 자율방역 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질병별로 명확한 지침 제공.

3) 민간 수의사의 활용

- 민간 수의사는 모니터링 대상 가축전염병 방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민간 수의사 자원 활용과 교육, 기술 표준화, 수의사의 공공시설 이용 등을 통하여 민간자원을 충분히 활용토록 규정함.
- 전술한 축산물위생지도협회 사업의 수행에는 민간 수의사(지정수의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지정수의사의 배치 및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임상수의사의 지정은 일본수의학협회(JVMA)와 협의를 거쳐 결정함.

3-3. 유럽연합(EU)

가. EU 동물보건전략(출처: Eradication, control and monitoring programmes to contain animal diseases. 2016. EUROPEAN COURT OF AUDITORS)

1) EU 동물 보건 전략의 주요 목표

- ① 인간에 대한 생물학적 및 화학적 위험의 발생 최소화 및 높은 수준의 공중보

건/식품 안전 보장.

- ② 동물 질병의 발생 예방/감소로 동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를 통한 농업과 농촌 경제 지원.
- ③ 경제 성장/응집력/경쟁력 향상,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 및 이에 비례한 동물 이동의 보장.
- ④ 지속가능 발전전략(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을 지원하기 위해 동물 건강 관련 위협을 예방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 관행 및 동물 복지 촉진.

2) EU 동물보건전략의 구현 수단

- 이러한 목표는 4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 실행 계획에 의해 구현됨.
 - EU 개입의 우선순위 지정
 - EU 동물보건 프레임워크
 - 예방, 감시(surveillance) 및 대비(preparedness)
 - 과학, 혁신 및 연구

나. EU 질병 분류체계

- 많은 회원국 내의 다양한 질병 발생 상황을 감안하여 보고의무 질병 목록(list 63종)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음.
 - list 등재 질병은 발생 및 방역조치에 대한 정보 공개, 투명성 유지 등의 방역 기본원칙 하에서 EU 회원국 별로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1) EU에서 개입할 수 있는 질병목록 등재 질병(Notifiable Animal Diseases)

- EU 개입을 규정한 질병목록 등재: EU Regulation 2016/429 PART I, CHAPTER 1 제5조 및 Annex II 규정 질병은 총 63종임(표 2-4).
- EU 집행위원회의 동물전염병 방제를 위한 회원국내 개입은 보고 대상 질병 list에 등재된 63종 질병에 한하며, 방역조치의 긴급성에 관한 유형별로 A, B, C, D, E 5개의 범주(categories)로 구분함(그림 2-4, 그림 2-5).
 - ① Categories A: EU 내 비발생 질병으로서 조기근절 목표
 - ② Categories B: 회원국의 근절 의무 질병
 - ③ Categories C: 회원국 상황에 따른 근절 추진 질병
 - ④ Categories D: 이동을 통한 회원국 간 확산 차단조치 필요 질병
 - ⑤ Categories E: EU내 보고 및 예찰 필요 질병

표 2-4. 유럽연합의 신고 의무 동물전염병 목록(63종)

• Foot and mouth disease	• Lumpy skin disease	• <i>Salmonella pullorum/gallinarum/arizonae</i>
• Classical swine fever	• Contagious bovine pleuropneumonia	• Low pathogenic avian influenza
• African swine fever	• <i>Echinococcus multilocularis</i>	• Equine infectious anaemia
•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 Epizootic haemorrhagic disease virus	• Equine encephalomyelitis
• African horse sickness	• Anthrax	• Aujeszky's disease
• Rabies	• Surra (<i>Trypanosoma evansi</i>)	•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 Bluetongue	• Ebola	• Newcastle disease
• Rinderpest virus	• Paratuberculosis	• Avian mycoplasmosis
• Rift Valley fever virus	• Japanese encephalitis	• Viral haemorrhagic septicaemia
• <i>Brucella abortus/melitensis/suis</i>	• West Nile fever	• Infectious haematopoietic necrosis
• <i>M. bovis/caprae/tuberculosis</i>	• Q fever	• Avian chlamydiosis
• Glanders	• Trichomonosis	• Infectious salmon anaemia (HPR del)
• Equine arteritis virus	• Enzootic bovine leukosis	• Koi herpes virus disease
• Bovine rhinotracheitis	• Sheep pox and goat pox	• <i>Mikrocytos mackini</i>
• Bovine viral diarrhoea	• Peste des petits ruminants	• <i>Perkinsus marinus</i>
• Bovine genital campylobacteriosis	• Contagious caprine pleuropneumonia	• <i>Bonamia ostreae</i>
• Varroosis	• Ovine epididymitis	• <i>Bonamia exitiosa</i>
• <i>Aethina tumida</i> (Small hive beetle)	• Epizootic haematopoietic necrosis	• <i>Marteilia refringens</i>
• American foulbrood	• Viral haemorrhagic septicaemia	• Taura syndrome virus
• <i>Tropilaelaps</i> spp.	• Infectious haematopoietic necrosis	• White spot syndrome virus
• <i>Batrachochytrium salamandrivorans</i>	• Dourine	• Yellow head virus
• Contagious equine metritis	• Venezuelan equine encephalomyelit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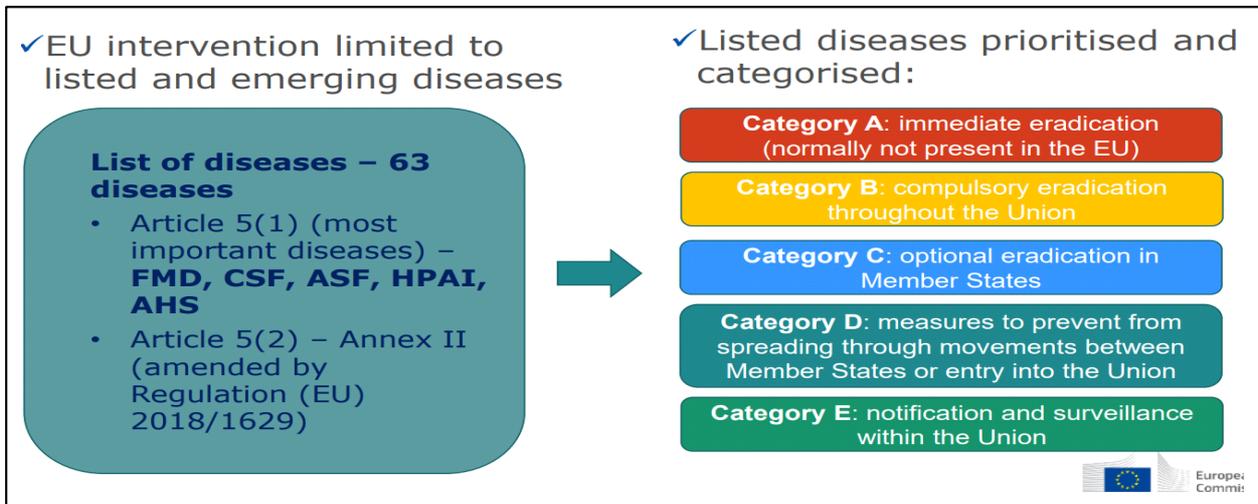
- Listed diseases Article 5(1) and Article 5(2) Annex II 규정 질병(63종)

(출처: D.G. Sante. 2021. Listing and categorisation of animal diseases and list of species)

○ EU의 질병별 방역조치 설정에 대한 질병 범주 분류 근거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이 원칙을 바탕으로 EU 회원국 간, 회원국 내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 수준을 결정하고 있음.

- 질병 대응계획, 인식 및 질병 통제 조치
- 질병 방제와 근절
- 이동 및 무역을 위한 동물 건강 요건
- 질병 통보 및 보고, 감시

그림 2-4. EU의 보고 대상 동물질병의 유형별 분류



(출처: D.G. Sante. 2021)

그림 2-5. EU의 보고 대상 동물질병의 범주별 방역정책 설정 내역

CATEGORY A	Diseases that do not normally occur in the Union and for which immediate eradication measures must be taken as soon as they are detected
CATEGORY B	Diseases which must be controlled in all Member States with the goal of eradicating them throughout the Union
CATEGORY C	Diseases which are of relevance to some Member States and for which measures are needed to prevent them from spreading to parts of the Union that are officially disease-free or that have eradication programmes for the listed disease concerned
CATEGORY D	Diseases for which measures are needed to prevent them from spreading on account of their movements between Member States or entry into the Union
CATEGORY E	Diseases for which there is a need for surveillance within the Union

(출처: D.G. Sante. 2021)

2) EU의 5개 범주(categories) 별 보고 의무 질병 분류

- 위에서 언급한 5개 범주별로 보고 대상 질병을 상세히 분류한 내역은 그림 2-6과 같음.

그림 2-6. EU의 5개 범주(categories) 별 질병 분류

Category A diseases	Category B diseases	Category C diseases	Category D diseases	Category E disea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ntrol measures in case of an outbreak FMD, Rinderpest, CSF, ASF, RVFV, LSD, AHS, Glanders, SPGP, PPR, CBPP, CCP, HPIA, NCD, EHN, Yellow head...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mpulsory eradication (TB, Brucellosis, Rab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Optional eradication BTV, BVD, IBR, EBL, ADV, Varroa, IHN, VHS, Bonamia exito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Trade conditions Anthrax, Surra, EHD, Echinococcus, PRRS, Mycoplasma gallisepticum, LP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Surveillance and notification Paratuberculosis, WNF, Q fever, EEE/WEE, Koi Herpes vir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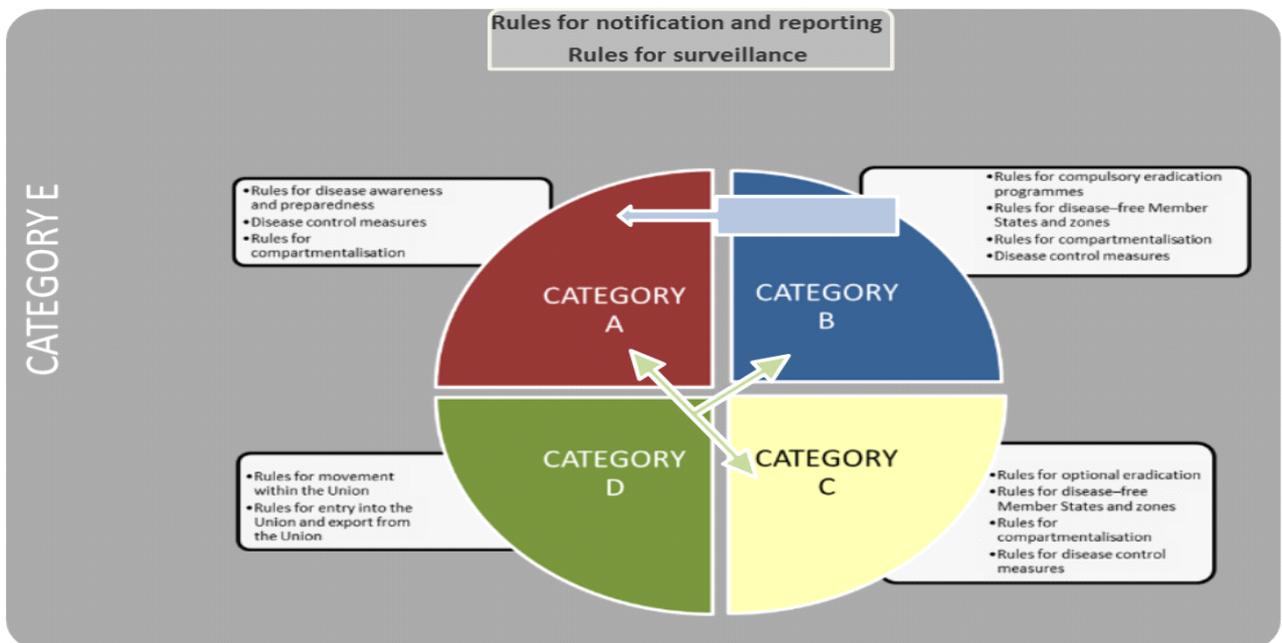
- 적색 원(D 및 E)에는 Category A, B 및 C 질병도 포함됨.

(출처: D.G. Sante. 2021)

3) EU의 동물질병 범주(categories)별 예방 및 방역관리 세부규칙

- EU는 보고 의무 질병의 범주별로 질병 예방과 방역관리를 위한 세부규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은 이를 원칙으로 하여 각국의 방역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함(그림 2-7)

그림 2-7. EU의 동물질병 범주별 질병 예방 및 방역관리 세부규칙



(출처: D.G. Sante. 2021)

3-4. 영국

- 신고 의무 질병(Notifiable Animal Diseases)은 감염 의심축 또는 질병 발생 시 환경식품농촌부(DEFRA)의 동식물보건청(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 APHA)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동물질병 41종을 규정(UK DEFRA 홈페이지)하고 있음.
- 신고의무 질병 41종은 영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풍토병(endemic diseases)과 외래성 동물전염병(exotic diseases)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외래성 동물질병 발생시 중앙정부는 각 주 정부와 긴밀히 연계하여 긴급방역조치(contingency plan for exotic notifiable diseases of animals) 실시

가. 신고 의무 동물전염병(Notifiable Animal Diseases) 지정

- 신고 의무 동물전염병은 총 41종이며, 대부분은 외래성 질병이지만 일부 질병은 영국에서 연중 발생하는 상재성(endemic) 질병도 포함됨(표 2-5).
 - 상재성 질병 사례: 소 결핵, 스크래피 및 박쥐 광견병 등

표 2-5. 영국의 신고 의무 가축전염병(Notifiable Diseases) 목록(41종)

• African Horse Sickness	• Equine Viral Encephalomyelitis
• African Swine Fever	• Equine Infectious Anaemia
• Anthrax	• Foot and Mouth Disease
• Aujeszky's Disease	• Glanders and Farcy
• Avian Influenza	• Goat Pox
• BSE	• Lumpy Skin Disease
• Bluetongue	• Newcastle Disease
• Brucella abortus	• Paramyxovirus in pigeons
• Brucella melitensis	• Peste des Petits Ruminants
• Classical Swine Fever	• Porcine Epidemic Diarrhoea
• Contagious Agalactia	• Rabies
• Contagious Bovine Pleuro-pneumonia	• Rift Valley Fever
• Contagious Epididymitis	• Rinderpest
• Contagious Equine Metritis	• Scrapie
• Dourine	• Sheep Pox
• Echinococcus multilocularis	• Sheep scab
• Enzootic Bovine Leukosis	• Swine Vesicular Disease
• Epizootic Haemorrhagic Virus Disease	• Teschen Disease
• Epizootic Lymphangitis	• Tuberculosis (Bovine)
• Equine Viral Arteritis	• Vesicular Stomatitis
	• West Nile Virus

(출처: Notifiable Diseases - A Guide for Official Veterinarians. APHA 2017)

나. 신고 의무 전염병에 대한 조치

- 비상 질병 발생 시 24시간 내 보고가 원칙이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전문가에 의한 현장 조사후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방역조치의 완급조절이 이루어짐.
 - 현지 APHA 근무 수의사 또는 북아일랜드처럼 질병 의심 여부를 판단할

- DAERA 전염병 부서 수의관(DVO)이 현지조사 실시.
- 영국은 여러 자치국가(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연방이므로 연방에서 정한 방역원칙에 의거하여 자치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역옵션이 존재함.
 - 신고 의무 전염병 확인 시 APHA는 여러 연관 조직에 발생상황 통보.
 - 영 연방의 지방자치단체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WOAH(세계동물보건기구)
 - 질병 확진 시 CVO의 조치사항은 질병 종류에 따라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질병의 경중, 경제적 피해 정도, 전파속도, 인체 위험성 등 여러 요인을 판단하여 규정된 질병별 대응매뉴얼에 근거하여 방역조치를 하고 있으나 주로 외래성 질병에 치중하고 있음.
 - 구제역, 고병원성 AI(HPAI), 돼지열병(Classical 및 African Swine Fever) 등의 다수의 외래성 악성 가축전염병은 영향을 받은 농장동물의 즉각적 살처분 실시 및 이동통제 등 국가 방역조치 실시.
 - 블루팅 등 기타 질병은 질병 특성에 따라 APHA의 판단하에 백신접종 및 이동통제 등 실시.

3-5. 호주

가. 호주의 신고 의무 동물전염병(Nationally Notifiable Diseases)

- 호주의 신고 의무 동물전염병은 총 109종(DAFF. 2023. National Notifiable Disease List of Terrestrial Animals)이며, 중앙정부 외에 주 및 지역 정부의 신고 의무 동물질병 목록에는 해당 주 또는 준주(territory, 準州)에만 해당되는 질병도 포함될 수 있음.
 - 신고 의무 질병 보고요건은 개별 주 및 지역 정부 또는 준주 법률에 포함되어 있음.
 - WOAH 분류체계와 유사하게 가축 종별로 나누어 신고 의무 질병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략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다축종: FMD, 우역 등 31종
 - 소: 우폐역, 럼피스킨병, 브루셀라병 등 24종
 - 돼지: 돈열, ASF, 오제스키병 등 17종
 - 가금: HPAI, 뉴캐슬병, 추백리, SE 감염증 등 11종
 - 말: 헨드라바이러스 감염증 등 16종
 - 기타: 개 브루셀라병, 꿀벌 부저병 등 10종
- 호주의 신고 의무 동물전염병은 발생 시 보건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4개

의 범주(categories)로 구분하며, 총 60종에 대하여는 질병 분류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을 차등화하고 있음(표 2-6).

표 2-6. 호주의 신고 의무 동물전염병 60종과 범주별 예산 지원체계

분류	질병명	분류 조건
Category 1 5종 질병 (정부 100%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stralian lyssaviruses • Japanese encephalitis • Nipah virus • Rabies • Western, Eastern and Venezuelan equine encephalomyelit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위생 및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 - 축산업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적음
Category 2 12종 질병 (정부 80%, 업계 20%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vian influenza(highly pathogenic) • Brucellosis(B.abortus, B.melitenis) • BSE • FMD • Glanders • Hendra virus(equine morbillivirus) • peste de petitis ruminants • Rift valley fever • Rinderpest • Screw worm fly • Sheep pox • Vesicular stomatit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무역 감소, 국내 축산 시장 붕괴, 축산업계의 생산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으로 큰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 - 국가의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을수 있으나 공중위생이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 포함됨
Category 3 16종 질병 (정부 50%, 업계 50%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frican horse sickness • African swine fever • Anthrax(major outbreak) • Avian influenza (highly pathogenic; H5 및 H7 외) • Avian influenza (H5 및 H7형 low pathogenic) • Bluetongue • Classical swine fever • Contagious bovine pleuropneumonia • Encephalitides (tick-borne) • Lumpy skin disease • Menangle virus(porcine paramyxovirus) • Newcastle disease • Scrapie • Swine vesicular virus • Trichinellosis • Vesicular exanthe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주 이상에서 국제무역 감소, 국내 축산시장 붕괴와 축산업의 심각한 생산성 감소를 초래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일반적으로 중등도)을 미치는 것 - 그러나, 공중위생이나 환경에는 영향이 거의 없음
Category 4 27종 질병 (정부 20%, 업계 80%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jeszky's disease • Borna disease • Bovine tuberculosis due to <i>Mycobacterium bovis</i> • Contagious equine metritis • Dourine • East coast fever • Epizootic lymphangitis • Equine babesio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생산성 감소 질병이 포함됨 - 국제무역 감소나 지역적인 축산시장 붕괴는 심하지 않으나 국가경제에는 영향이 클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quine encephalosis • Equine influenza • Getah virus • Hemorrhagic septicemia • Heartwater • Infectious bursal disease (hypervirulent form) • Jembrana disease • Maedi/visna • Nairobi sheep disease • porcine epidemic diarrhoea • PRRS • Potomac fever • Pulmonary adenomatosis • Sheep scab • Surra • Influenza A virus of swine • Teschen disease • 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 Wesselsbron disease 	
--	---	--

(출처: Animal Health Australia. 2022)

나. 호주 가축방역조직 및 체계

- 호주는 섬의 특성상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어 대부분의 질병에 대하여 엄격한 검역체계를 수립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질병 유입에 대한 감시활동이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연방정부, 6개의 주(state) 정부, 2개의 준(準) 주정부(territories) 및 연합정부(특별 행정 자치주, Canberra 소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정부별 방역조직과 민간방역 기구(Animal Health Australia : AHA)에 의한 현장방역으로 운영되고 있음.
 - 가축질병 방역에 있어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확고한 역할 분담과 독자적 법령체계를 구비하고 있음.
 - 연방정부는 국경검역, 수출입 업무, 호주내 주별 방역 체계간 조율·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주 및 준 주정부는 국내방역 담당으로 역할 분담.
- 가축질병 발생 정보 수집, 대응전략 수립 및 집행은 다음과 같음.
 - (정보 수집) 동물보건정보시스템(National Animal Health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여 가축질병 발생정보 수집 및 분석.
 - (가축질병 비상대응) 긴급 가축질병 대비 프로그램(Emergency Animal Disease Preparedness Program: EADP)을 통하여 긴급 가축질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
 - (대응체계 매뉴얼) 호주 긴급가축질병방역계획(AUSVETPLAN)에 가축질병별 대응체계가 상세히 수립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방역정책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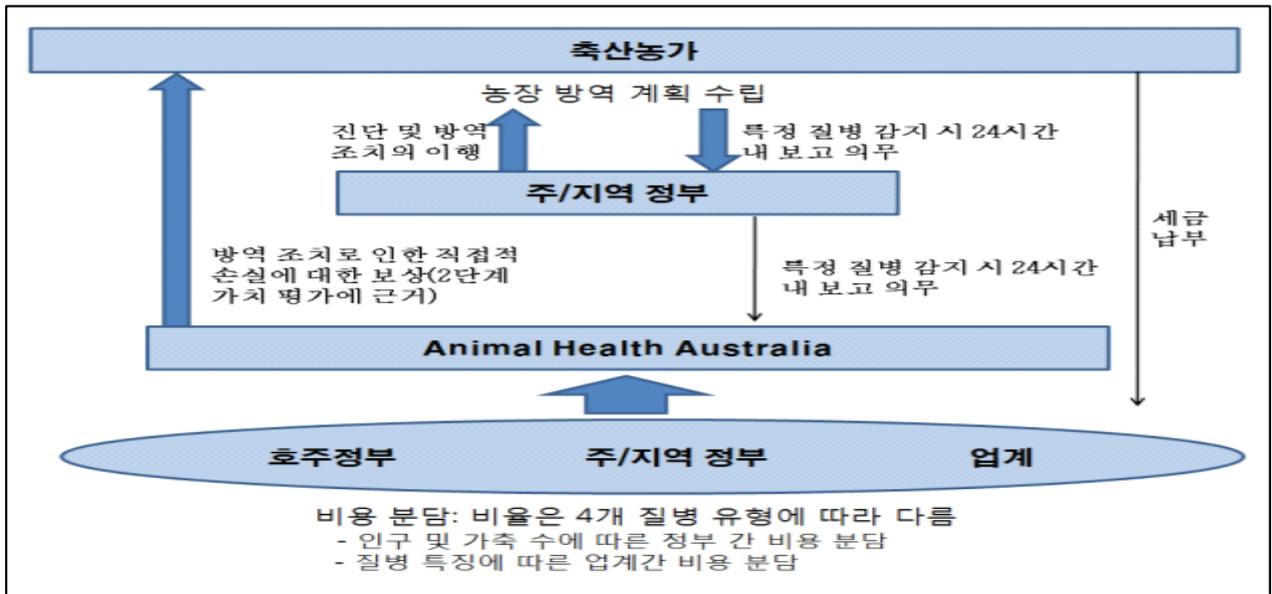
1) 신고 의무 전염병에 대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 WOAH 보고질병 분류체계에 기반하여 신고 의무 가축전염병 국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각 지방정부 별로 탄력적 운용.
- 신고 의무 질병 의심시 지역 수의사, 해당 주 또는 지역의 관련 부서에 신고.

2) 민간 중심 가축질병 방역시스템(AHA)

- 호주동물보건연합(AHA)은 정부기관과 제도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민관연합체 형식으로 국가방역에 참여하며, 반관·반민의 비영리 공기업의 성격을 띤 현장 방역 실행기구 역할 수행.
-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정부와 민간이 동등한 지위로 참여하는 ‘참여방역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방역에 있어서의 민간기구 및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임무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음.
 - AHA는 방역 및 검역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단계의 전략계획(2020-2025 AHA 전략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음(AHA 홈페이지, 2023).
- (구성 및 임무) AHA는 연방정부, 주 및 지역 정부, 관련 산업 및 서비스 제공업체를 중심으로 5개 범주의 준회원과 32개 회원단체로 구성.
 - 연방, 주 및 지역 정부(8), 생산자단체(16), 서비스 제공 단체 등 참여.
 - 이사회 구성: 농업수자원환경부 장관, 주 정부 농업장관, 축산 관련 단체장, 수의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 등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
 - (재정) 정부, 축산단체의 공동부담 형식으로 운영되며, 연방정부, 주 정부 및 축산단체에서 각각 1/3씩 공동부담.
 - (추진체계) 가축방역 정책 협의 및 조정은 AHA, 연방과 주 정부의 수의관, 시 협소 대표들이 참여하는 긴급 가축질병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 on Emergency Animal Diseases: CCEAD)를 통해서 이루어짐.
 - (주요사업 및 임무)
 - 호주 정부와 협력하여 긴급 동물질병 대비 프로그램(Emergency Animal Disease Preparedness Program) 등 방역 프로그램 운영, 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 방역사업 등 실시(그림 2-8).
 - 가축질병 예찰 및 방역, 전염병 예방 프로그램 실시, 동물복지에 관한 각종 정책 및 집행에 관한 현장업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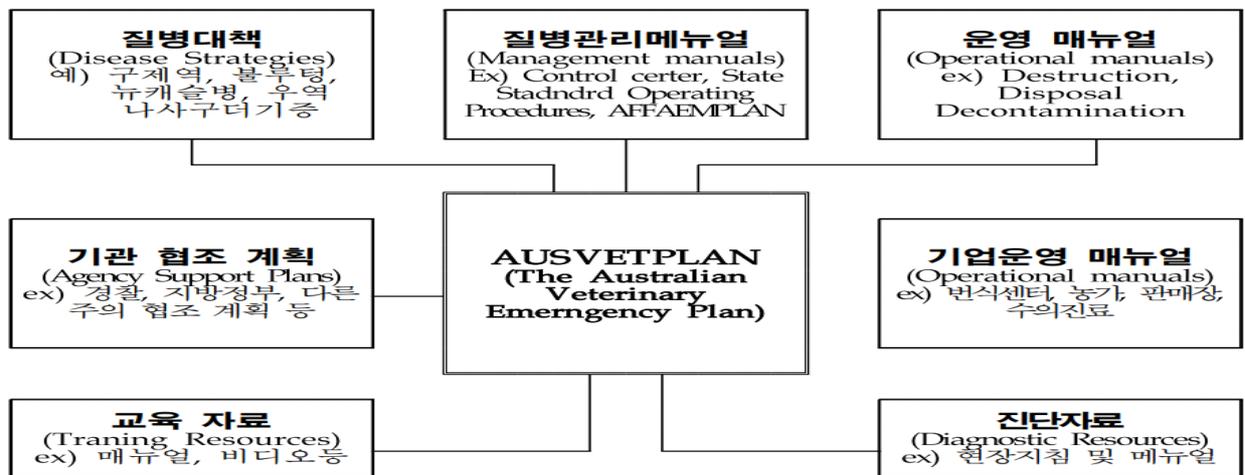
그림 2-8. 호주 긴급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조도(출처: 세계농업, 2010)



다. AUSVETPLAN을 통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운영

- AUSVETPLAN은 긴급 질병발생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행동요령을 구조화한 지침서로서 과학적 이론, 기술 수준, 유효한 방역수단, 현장에서의 적용방법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그림 2-9).
-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질병별로 작성된 질병전략 매뉴얼(Disease Strategy Manual)임.
 - 질병의 특성, 방역 및 근절 원칙, 정책 및 근거, 격리 및 이동제한에 관한 사항 등 종합적인 방역 매뉴얼을 포함하고 있음.
-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현장, 산업체, 진단실험실 등에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음.
 - 현장에서의 대응요령에 관한 운영절차 매뉴얼(Operational Procedure Manual)
 - 축산관련 산업체의 행동요령을 담은 기업 매뉴얼(Enterprise Manual)
 - 진단실험실과 상황실 준비에 대한 관리 매뉴얼(Management Manual) 등

그림 2-9. AUSVETPLAN과 관련된 자원의 구성요소



(출처: AUSVETPLAN. 2023. Animal Health Australia)

4. 국내 법정 인체감염병 지정 및 관리현황

가.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 사람의 감염병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총칭함.
- 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 등에 따라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분류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 관리함.
 - 단, 제1급~제3급까지는 정해진 전염병 이외에도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감염병 추가 가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1급감염병은 질병 별로 환자 분류기준, 법정 감염병의 신고범위(환자, 의사, 병원체 보유자별) 등을 세세히 정하여 관리토록 함.

나.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의 개편

- 1957년에 사람의 「전염병예방법」이 시행되어 법정전염병 중별 분류체계가 최초로 제정됨.
- 2000년 신종 전염병의 출현과 전염병 발생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전염병을 제1군~제4군 전염병으로 나누는 군(群)별 분류체계가 정립되었음.
- 2015년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확산의 재난 상황 이후 질병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 수준, 신고 시기 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 및 신고체계를

대폭 개편함(2020, 표 2-7).

- 군별 분류체계 → 86종의 감염병을 제1급~제4급 감염병으로 나누는 ‘급(級)’ 별 체계로 개편
- 감염병 신고 시기 관련 개편: 1급 감염병 → ‘즉시’, 2급 및 3급 감염병 → ‘24시간 이내’ 신고
- 제4급 감염병 23종은 신고없이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감시활동만 지속토록 함.
- 신고 의무 위반 및 방해자에 대한 벌칙 강화

다.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의 기준

- 급별 법정감염병 분류체계는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을 고려하여 4부류로 분류되며, 최근 신변종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해당 감염병의 종류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조사시점에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법정감염병의 급별 기준(표 2-7)
 - ① 1급: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② 2급: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③ 3급: 격리는 필요 없지만 발생률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④ 4급: 1~3급 이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 필요.

표 2-7. 인체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기준(' 23.7월 기준)

구분	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0종)	제3급감염병 (26종)	제4급감염병 (23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 필요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 가 있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 이 필요한 감염병
사례	에볼라출혈열, 신종플루	결핵, 홍역, 수두	B형 간염, 일본뇌염	독감, 매독

- 사각형 내의 제3급 및 제4급 감염병은 조치없이 신고 및 감시체계 유지.
- 개편 전에는 제1~5군 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이 총 80종이었으나, '20.1월 이후 제1~제4급 감염병이 총 86종으로 변경됨.
 - 이후 '20.7.1.부터 E형간염이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서 제1~제4급 감염병이 총 87종으로 확대됨.

II. 국내 법정가축전염병 관리 현황 및 분류체계 개편

1. 국내 법정가축전염병 지정, 등급 분류 및 방역조치 현황

가. 법정가축전염병의 축종별 지정 현황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총 68종의 가축전염병을 제1종(15종), 제2종(32종) 및 제3종(21종) 가축전염병으로 구분하여 지정함(표 2-8).
 - 1종(15종): FMD, 우역, ASF, 고병원성 AI, 뉴캐슬병 등
 - 2종(32종): 탄저, BSE, 브루셀라병, 오제스키병, 추백리, 가금티푸스 등
 - 3종(21종): 소 유행열, BVD, PRRS, TGE, PED, 저병원성 AI, 마력병 등

나.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조치

-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조기근절을 위한 강력한 방역조치가 취해지며, 가축사양가 및 임상수의사는 그 필요성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방역조치에 동참하고 있음.
 - 즉시 신고, 격리 및 살처분, 반출금지, 시설 폐쇄, 입식 제한 등
- 제2종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질병의 성격 및 국내 상재성 질병(endemic disease)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조기신고를 제외한 격리, 이동중지, 사육제한, 반출금지, 방목제한, 시설폐쇄, 필요시 도태, 도축장 출하 등의 방역조치는 방역목적 달성의 효과는 있으나 농가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어 발생신고 기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시사점>

- 앞에서 조사해 본 바와 같이, 선진국의 경우 2종 및 3종에 준하는 풍토병성 법정전염병에 대하여는 즉시보고(일본, 호주 등), 주간보고(영국) 또는 월간보고(미국 등)로 발생상황 모니터링 수준의 변화 추이만 분석하고 있으며, 국가방역이 반드시 필요한 특정전염병이라면 이를 특별히 지정하여 제1종 전염병에 준하여 탄력적으로 관리하며 질병별 관리메뉴얼을 수립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음.
- 전국적 상시 발생 질병이라면,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통제가 의미가 없으므로 농장의 자율방역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개입만 하는 것이 국가의 방역역량 소모를 줄이는 방안이며, 사양가의 발생신고를 촉진하고 국가의 질병발생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으로 평가됨.

표 2-8. 법정 가축전염병 지정 현황

구분	근거 법규	질병명	방역조치
제1종 (15종)	가전법 (15종)	우역, 우폐역, 구제역, 가성우역, 블루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 뉴캐슬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즉시 신고 - 격리, 살처분 - 반출금지 - 시설 폐쇄 등
제2종 (32종)	가전법 (24종)	탄저, 기종저,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소해면상뇌증,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 말 전염성빈혈, 말 바이러스성동맥염, 구역, 말전염성자궁염, 동부말뇌염,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 말뇌염, 추백리(雛白痢), 가금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	- 이동중지 - 사육제한 - 반출금지 - 방목제한 - 시설폐쇄 - 필요시 도태, 도축장 출하 등
	부령 (8종)	타이레리아병(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놀라타만 해당), 바베시아병(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 아나플라즈마(아나플라즈마 마지날레만 해당), 오리바이러스성간염, 오리바이러스성장염, 마(馬)웨스트나일열,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만 해당), 낭충봉아부패병	
제3종 (21종)	가전법 (5종)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	- 이동중지 - 반출금지 - 방목제한 - 필요시 사육 제한 등
	부령 (16종)	소전염성비기관염, 소류코시스(Leukosis, 지방병성소류코시스만 해당), 소렙토스피라병, 돼지전염성위장염, 돼지단독,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성설사, 돼지위축성비염, 닭뇌척수염, 닭전염성후두기관염, 닭전염성기관지염, 마렉병, 닭전염성F낭병, 토끼출혈병, 토끼점액종증, 야토병	

2. 우리나라의 법정 가축전염병 관리 체계 개편 및 개선 필요사항

2-1. 법정가축전염병 등급 지정 현황 및 문제점

- ① 법정가축전염병의 등급을 결정하는 명확한 정의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전파력, 병원성, 국내 발생 여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황에 따라 정하고 있어 전술한 선진국의 사례나 인체 법정감염병 분류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② 상재성 질병인 제2종 또는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도 지체없는 신고 의무화(가전법 제11조1항) 및 지자체에 의한 이동제한 조치 등 방역조치로 인한 사양

가의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어 신고 기피 요인으로 작용.

→ 가전법 제3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입력 및 분석 정보 왜곡 초래.

→ 가축질병 방역정책 오류 및 실제상황과 괴리되거나 편향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 증가 유발.

2-2. 종별 법정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조치 비교

- 종별 법정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조치를 개략적으로 표 2-8에서 비교하여 제시 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1종 및 2종 전염병 간에 방역조치 상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3종의 경우에도 지자체에서는 1종 및 2종과 큰 차이가 없는 현장 방역조치를 관행적으로 명령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대로 법정가축전염병 종별로 현장상황을 반영한 방역조치의 차별적 적용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음.
- 즉, 가전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종별 법정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조치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살처분 조치 등 일부 사항 외에는 1종, 2종 및 3종 전염병에 대한 조치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음(표 2-9).
 - 살처분 등 1종에만 적용하는 일부 규정을 제외하면 1~3종 법정가축전염병 간에 차이가 없으며, 3종 전염병도 1종과 동일한 방역조치 적용.

표 2-9. 종별 법정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조치 비교

구분	방역 조치	가전법 관련 조항
제1종 (15종)	- 지체없는 신고, 진단 및 역학조사 - 격리 및 이동제한, 교통차단 및 출입통제 - 농장 외 반출 금지 - 방목 제한 - 사육 제한,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 가전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업무제한 명령 - 살처분 명령** - 도태 권고 및 출하 명령** - 해당농장 소유자와 관리인 등 사람들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11조1항 19조1항 19조2항 19조3항 19조4항 19조8항 20조 21조 19조1항2호
제2종 (32종)	- 지체없는 신고, 진단 및 역학조사 - 격리 및 이동제한, 교통차단 및 출입통제 - 농장 외 반출 금지 - 방목 제한 - 사육 제한,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11조1항 19조1항 19조2항 19조3항 19조4항

	- 가전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업무제한 명령 - 살처분 명령** - 도태 권고 및 출하 명령**	19조8항 20조 21조
제3종 (21종)	- 지체없는 신고, 진단 및 역학조사 - 격리 및 이동제한, 교통차단 및 출입통제 - 농장 외 반출 금지 - 방목 제한 - 사육 제한,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 가전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업무제한 명령	11조1항 19조1항 19조2항 19조3항 19조4항 19조8항

*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에만 적용되는 방역조치

** 제1~2종 법정가축전염병에만 적용되는 방역조치

1)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조치

- 가전법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종 가축전염병에 적용하는 가전법 제19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1조를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제1종과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에 대한 공통적인 방역조치 내용은 다음 표 2-10과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2종 법정전염병에 대하여도 1종과 다를 바 없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 하지만, 일부 2종 법정가축전염병은 이미 전국적으로 상재화 또는 연중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확산 차단을 위한 발생농장의 격리나 이동제한 조치가 무의미하므로 3종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음.

표 2-10. 제1종 및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에 대한 공통적인 방역조치 내용

방역조치 내용	관련 법조항
격리 및 이동제한, 교통차단 및 출입통제	제19조1항
반출 금지	제19조2항
방목 제한	제19조3항
사육 제한,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제19조4항
가전법 방역조치 위반 행위자에 대한 업무제한 명령	제19조8항
살처분 명령	제20조
도태 권고 및 출하 명령	제21조

2) 제3종 법정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조치

- 가전법 제28조의2(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다만,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 후 도축장 출하 또는 계약사육농가로 이동 시 이동제한 적용 면제).
- 앞서 2종 전염병에서 기술했듯이, 가전법 제19조에서 정한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에 대한 격리 및 이동제한, 반출금지, 방목제한, 사육제한,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가전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업무제한 명령 등이 3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1종에 준하는 방역조치로 인하여 농장에 발생하는 피해는 임상수의사 또는 사육농가 등이 제3종 가축전염병 신고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결론적으로, 1, 2, 3종 가축전염병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방역조치는 차단 및 출입통제, 살처분, 도태 권고 및 출하 명령만 제외하면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명령, 반출금지, 사육제한 또는 방목제한, 가전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업무제한 명령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발생신고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분류체계 개선이 시급함.

2-3. 현 법정가축전염병 분류체계 및 방역조치 개선(안)

가. 법정가축전염병의 명확한 정의 설정 및 분류체계 개선

1) 가축전염병 예방법 명칭 및 제1조 목적에 대한 현대적 개념의 보강 필요

① 법 명칭 변경: “가축전염병 예방법” →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법”

② 법정가축전염병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개념 보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1조의 내용 개정을 필요로 함.

- (현)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건강 및 위생에 해가 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고, 가축 전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의·축산업의 발전과 원헬스(One Health)에 기반한 질병의 통합적 예방·관리 조치 및 공중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제1, 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전염병에 대한 정의와 개념 변경 및 보강
- 현행 법정가축전염병 분류체계에서는 종별 법정가축전염병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현 시점에서 법정가축전염병의 명확한 정의 설정에 따라서 분류체계도 제1종~제3종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종별로 개념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정전염병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음.
 - 법정가축전염병의 구분 및 종별 정의(안)은 표 2-11과 같음.

표 2-11. 법정가축전염병의 구분 및 종별 정의 제정(안)

구분	정의(안)
제1종 가축 전염병	국내 비발생 해외 악성 가축 전염병 또는 국내 발생 가축전염병으로서 치명률이 높거나 전파속도가 빨라서 <u>지역 및 농장간 집단 발생의 위험성과 전국적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발생 또는 의심축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지역 및 농장간 격리와 이동제한, 살처분 등 강력한 국가 방역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가축전염병</u>
제2종 가축 전염병	국내 발생 또는 비발생 가축전염병으로서 가축에 대한 치명률과 전파속도를 고려하여 발생 또는 의심축 발생 시 <u>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 농장간 격리와 이동제한, 살처분 등 체계적 국가 방역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가축 전염병</u>
제3종 가축 전염병	제1종부터 제2종 가축전염병 외에 <u>발생상황 변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가축 사육농가에 발생 위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표본감시 활동 및 주간/월간 발생보고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가축전염병</u>

3) 법정가축전염병의 종별 정의 신규 설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재분류

개선방향

- ▶ 농가 및 축산단체의 자율적 방역으로 대체 가능한 상재성 또는 만성 소모성 질병은 2종에서 3종으로 재분류하여 질병 발생 변화 추이만 모니터링하는 것이 국가적 방역역량의 지나친 소모와 방역조직의 피로현상을 줄일 수 있음.
- ▶ 주의할 만한 상황 변화 발생 시 지역별 주의보 발령 및 사양가에 해당 질병에 대한 효율적 방역 가이드라인 제공 및 민간 자율방역 중심의 방역 실시.

- 조기신고,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방역조치 및 비상대책이 필수적인 질병은 1종 및 2종으로 분류(표 2-11)
 - ① 1종 질병: 국내 비발생 외래성 가축 전염병 또는 국내 발생 가축전염병으로

서 폐사율이 높거나, 전파속도가 빨라서 지역 및 농장간 집단 발생과 전국적 확산 우려가 크고 대규모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발생 또는 의심축 발생시 지체없이 신고하여 강력한 국가적 방역체계에 따라서 질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거나 살처분 등에 의하여 조기근절 해야 하는 질병으로서, 현행 15종 체계를 유지함이 바람직함.

- ② 2종 질병: 국내 발생 또는 비발생 가축전염병으로서 가축에 대한 폐사율과 전파속도를 고려하여 발생 또는 의심축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토록 함으로써 체계적 국가 방역조치에 의하여 이동 통제, 농장 격리 등 질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야 하는 질병으로서, 현 32종 → 25종으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③ 3종 질병: 제1종 및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 외에 질병의 발생상황 및 변화 양상을 모니터링하여 가축 사육농가에 필요한 질병발생 정보와 방역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간/월간 발생보고 및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질병으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방역지도 하에 농가의 자율방역 조치가 우선인 질병으로서 현 21종 → 28종으로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가) 현행 법정가축전염병의 분류체계('24.3. 현재)

- 현행 법정가축전염병의 분류체계는 표 2-12와 같음.

나) 법정가축전염병의 종별 정의 신규 설정에 따른 재분류(안)

- 법정가축전염병을 새롭게 정의하고 분류함에 있어서 핵심 개념은 앞 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음.
- 법정전염병의 구분 및 정의에 따른 종별 분류체계 개선(안)에는 1종은 현행 대로, 2종 중 상재성(endemic) 질병으로서 농가 자율방역이 핵심적인 질병은 제3종으로 분류하였고, 이동제한, 격리 등 현행 방역조치를 미적용함으로써 신고 기피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였음(표 2-13).
- 2종→3종으로 변경이 필요한 질병과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 ① 기생충성 및 원충성 전염병은 현대적 축산환경에서는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2종에서 3종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종→3종 재분류: 타이레리아병(팔마 및 에놀라타), 바베시아병(비제미나 및 보비스), 아나플라즈마병(마지날레)
 - ② 돼지테센병 및 돼지인플루엔자(H5, H7 및 신종 인플루엔자 H1N1)의 경우, 전국적 발생이 미미하고, 그 중요성이 감소하여 2종→3종으로 변경함.
 - 현 단계에서는 H5, H7 및 신종 인플루엔자 H1N1의 발생조건이 큰 의미가 없어 3종으로 변경하되, 추후 새로운 변종 출현으로 분류 변경이 요구될 경우 사람의 인플루엔자 및 동물인플루엔자의 위험성과 연동하여

수시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질병임.

- ③ 가금의 가금티프스 및 오리 바이러스성간염은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농장을 통제할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3종으로 변경함.
- 가금의 제2종 법정전염병인 가금콜레라의 경우, 만성 가금콜레라는 수년간 전국적, 산발적 발생을 보이고 있으나 그 피해도 경미하므로 법정전염병 분류 필요성이 낮으며, 급성형의 경우 현행대로 2종으로 분류하고 “급성에 한함”이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급성 가금콜레라만 2종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당함.
 - 만성 가금콜레라 발생 현황: 2010년 이후 15년간 충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에서만 총 13건 18,431마리 발생.
- ※ 림피스킨 및 블루팅병의 경우, 일부 전문가들은 1종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신중한 검토 필요
 - 일본에서는 림피스킨과 블루팅병을 보고 대상 전염병으로 관리, 미국에서는 블루팅병 중 혈청형 8형, 림피스킨은 신고 의무, 혈청형 8형 이외의 블루팅병은 모니터링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음.

다)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강화가 필요한 질병

- 아래의 가축전염병은 발생 증가 또는 공중보건학적 측면에서 3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1단계로 현행 법정전염병 분류체계를 우선 개정할 다음, 추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개정이 필요한 질병임.
- ① 반추수의 건락성 림프절염(CLA)은 소 및 염소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염소관절염뇌척수염(CAE) 및 전염성농포성피부염(Orf virus)도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정확한 발생실태 조사 후 반영 여부 결정 필요.
- ② 소바이러스성설사는 전국에 만연되어 면역저하 유발은 물론 소의 생산성 저하 등 사육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질병 모니터링과 방역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한 질병임.
- ③ 닭의 SE(*Salmonella enteritidis*) 감염증은 가금 유래 식중독의 중요한 원인균으로서 선진국에서는 국가적 방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질병관리청에서도 식중독 원인균으로 집중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 측면에서 가금산업에서도 3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원헬스 차원의 원천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질병임.

표 2-12. 현행 법정가축전염병의 구분 및 종별 분류체계(2024.3. 현재)

가축	원인체	제1종 (15종)	제2종 (32종)	제3종 (21종)
반추수 (26종)	세균(8)	- 우폐역	탄저, 기종저,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규열	소렙토스피라병
	바이러스 (12)	- 우역 - 가성우역 - 구제역 - 블루텅병 - 리프트게곡열 - 럼피스킨병 - 양두 - 수포성 구내염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소전염성비기관염, 소류코시 스(지방병성)
	원충(3)		타이레리아병(팔바 및 에늘 라타), 바베시아병(비제미나 및 보비스), 아나플라즈마병 (마지날레)	
	프리온 (3)		소해면상뇌증, 스크레피(양 해면상뇌증), 사슴만성소모 성질병	
돼지 (12종)	세균(2)			돼지단독, 돼지위축성비염
	바이러스 (10)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 병, 돼지수포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 염, 돼지테센병, 돼지인플루 엔자 (H5, H7 및 신종 인플 루엔자 H1N1)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 지전염성위장염, 돼지유행성 설사
가금 (14종)	세균(4)		추백리, 가금티프스, 가금콜레라	닭마이코플라즈마병
	바이러스 (10)	뉴캐슬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오리바이러스성간염 오리바이러스성장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닭 뇌척수염, 마렉병, 닭전염성후 두기관염, 닭전염성기관지염, 닭전염성에프(F)낭병,
말 (10종)	세균(2)		비저, 말전염성자궁염	
	바이러스 (7)	아프리카마역	말전염성빈혈, 말전염성동맥 염, 동부말뇌염, 서부말뇌염, 베네주엘라말뇌염, 마웨스트 나일열	
	원충(1)		구역(Dourine)	
기타 가축 (6종)	세균(2)			부저병, 야토병
	바이러스 (4)		광견병, 낭충봉아부패병	토끼출혈병, 토끼점액종증

표 2-13. 법정가축전염병의 구분 및 정의에 따른 종별 분류체계 개정(안)

가축	원인체	제1종 (15종)	제2종 (25종)	제3종 (28종)
반추수 (26종)	세균(8)	우폐역	탄저, 기종저, 결핵병, 요네병, 브루셀라병, 규열	소렙토스피라병
	바이러스(12)	우역, 가성우역, 구제역,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 수포성 구내염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소전염성비기관염, 소류코시스(지방병성)
	원충(3)			타이레리아병(팔바 및 에놀라타), 바베시아병(비제미나 및 보비스), 아나플라즈마병(마지날레)¹⁾
	프리온(3)		소해면상뇌증, 스크레피(양해면상뇌증),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돼지 (12종)	세균(2)			돼지단독, 돼지위축성비염
	바이러스(10)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수포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전염성위장염, 돼지유행성설사, 돼지테센병, 돼지인플루엔자²⁾
가금 (14종)	세균(4)		추백리, 가금콜레라(급성에 한함) ³⁾	닭마이코플라스마병, 가금티프스
	바이러스(10)	뉴캐슬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오리바이러스성장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닭뇌척수염, 마렉병, 닭전염성후두기관염, 닭전염성기관지염, 닭전염성에프(F)낭병, 오리바이러스성간염
말 (10종)	세균(2)		비저, 말전염성자궁염	
	바이러스(7)	아프리카마역	말전염성빈혈, 말전염성동맥염, 동부말뇌염, 서부말뇌염, 베네주엘라말뇌염, 마웨스트나일열	
	원충(1)		구역(Dourine)	
기타 가축 (6종)	세균(2)			부저병, 야토병
	바이러스(4)		광견병, 낭충봉아부패병	토끼출혈병, 토끼점액종증

1) 3종 법정전염병의 짙은 밑줄 글씨는 2종에서 3종으로 분류 변경된 전염병임.

2) 3종으로 변경된 돼지인플루엔자(H5, H7 및 신종 인플루엔자 H1N1)는 H5, H7 및 신종 인플루엔자 H1N1로 한정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돼지인플루엔자로만 수정하였음.

3) 가금콜레라의 경우, 만성은 풍토병화하여 문제가 미미하므로 급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분류체계 개정안 요약

새로운 법정가축전염병 분류체계에 따라 2종에서 3종으로 재분류된 질병은 다음과 같음.

- 반추수: 원충성 질병인 타이레리아병(팔바 및 에놀라타), 바베시아병(비제미나 및 보비스), 아나플라즈마병(마지날레)
- 돼지: 돼지테센병 및 돼지인플루엔자
 - 돼지인플루엔자의 경우, “H5, H7 및 신종 인플루엔자 H1N1” 이라는 조건을 추가할 당시에는 그 때 상황에서 필요했으나 지금은 조류 및 사람의 인플루엔자 발생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삭제함이 타당함.
- 가금: 가금티프스 및 오리바이러스성간염
 - 두 질병의 경우,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종으로 분류하여 이동통제 등의 방역조치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 3종으로 분류.

4) 법정가축전염병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국가 방역조치 범위 재설정

- ① 제1종 또는 2종 가축전염병은 질병 근절과 전파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관리와 통제가 필수적인 질병이므로 이러한 질병의 발생 시에는 가전법에 의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방역조치 필수.
 - 가전법 제19조 (격리와 가축사육 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19조의2 (가축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제20조 (살처분 명령), 제21조 (도태의 권고 및 명령) 등 근거
 - 전파가 매우 빠르고 치명적이므로 치료와 회복보다는 대부분 빠른 시간 내에 농장 또는 지역 단위의 격리 또는 살처분 조치 긴급요.
- ② 제3종 법정가축전염병의 경우, 질병 발생상황 및 변화 양상을 모니터링 하고, 방역조치는 지자체의 지도 아래 민간 자율방역을 유도하는 것으로 방역조치 범위 조정이 전제되어야 함.
 - 이미 전국적으로 연중 발생하고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시급한 국가적 방역조치보다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의·축산업계에 정확한 발생정보와 효율적 방역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연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목표 달성이 중요함.
 - 연중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하여 발생농장에 대한 격리, 시설 폐쇄, 이동중지 등의 방역조치는 논리적으로 불합리하며, 모니터링 및 표본감시 활동 위주로 방역범위를 설정함과 아울러 농가 및 축간단체에서 자율적 방역을 실시토록 정책 전환 필요.
 -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에서 사육현장의 질병 발생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축산 관련 단체와 현장 임상수의사들이 연계하여 방역방안을 지도하며, 이들의 정

확한 발생 상황 신고를 통하여 KAHIS에 정확하게 집계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관계 형성 추진.

③ 감염증 감시(monitoring) 방안에 대한 지침 수립

- 특정 질병의 확산에 대한 지리적, 시간적 분포를 충분히 파악하고, 확산 위험 증가 시 조기경보 발령, 발병의 적절한 예방조치 지도, 확산 방지 조치의 시행,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조치 실시
- 필요 시 발병 원인의 파악과 적절한 격리 조치를 위한 추가 역학조사 실시.
 - ▶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질병별 발생 상황과 병원체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한 전염병의 실태에 대한 신속한 파악 및 홍보와 아울러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역조치를 수행해야 함.

④ 감시(모니터링) 대상 질병 및 지역 결정

- 감시는 모니터링 대상 전염병의 병리학, 발병 상태, 지질 분포 및 이 질병에 대한 검역 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국적 또는 지역적 감시로 구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중앙방역기구에서는 지자체에 질병 발생정보에 근거한 감시체계(감시 대상 질병 및 지역 포함)를 수립하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필요한 구체적 지침 설정 및 이행.

■ 전국적 모니터링

- 질병이 특정 시·도의 경계를 넘어 타 시·도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축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집중적으로 파악해야 할 정보를 국가가 결정하여 전국적인 방역·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여기에는 아직 국내 발생이 보고되지 않은 모니터링 대상 전염병(외래성 전염병) 및 제3종 법정가축전염병이 포함됨.

■ 지역적 모니터링

- 전국 감시체계에 따른 지역별 감시를 실시하여 모니터링 대상 감염병의 발생 상황과 항체 보유 현황을 파악, 분석하여 해당지역의 방역체계 구축 필요.
- 지자체에서는 현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전국적 감시체계와는 별도의 지역감시체계를 수립하여 수행하는 이원적 체계가 바람직할 것임.
- 해당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유행하는 법정가축감염병 및 특정 지역에 상존하는 법정가축전염병을 포함함.

방역조치 범위 재설정 요약

- ▶ 중앙 및 지방 방역기관은 1종과 2종 법정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방역조치를 하고, 3종 법정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긴급상황이 아닌 한, 별도 방역조치 없이 표본 감시활동 강화 및 질병 발생 변화양상 분석
- ▶ 그러나, 3종 법정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질병 발생상황에 따라 축산농가에 대한 상황 전파, 경보 발령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도 실시와 함께 농가 자율방역 중심으로 협회·단체를 지원하는 정책적 전환 필요.

나. 종축으로부터의 수직 감염성 전염병 검색 강화

- 전술한 대로, 제2종 법정전염병 일부를 3종으로 분류하고, 제3종 법정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조치를 신고 및 질병 모니터링 위주로 완화하는 개정안은 잘못된 메시지를 줌으로써 현장방역 개념을 약화시키고 질병의 만연을 조장할 우려도 있음.
-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종축에서 갓난 송아지, 자돈, 병아리 등 새끼로 수직감염이 가능한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종축의 가축전염병질병 관리 및 운영 규정을 강화하여 사양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 대안이 될 수 있음.
 - 가전법 제3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및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운영하고 있으나 규정에 따른 엄격한 적용 필요(표 2-14).
 - 관할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주기적으로 방역규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종축 소유주의 참여의식 부족, 검사물량 과다 및 일선기관의 인력난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

표 2-14. 현행 종돈장 및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적용 대상 전염병

구분	축종	대상 감염병(전염병)
종축 감시대상 전염병 (8종)	종돈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종계	추백리, 가금티푸스, 닭마이코플라스마병(MG)

▶ PRRS는 제3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재분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일반 양돈장이 아닌 종돈장의 경우 비발생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으므로 종돈장에서는 특별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종돈장 및 종계장·부화장 질병 검색 강화 추진 필요

- 1) 종돈장 방역관리요령(농식품부고시 제2016-51호, '16.6.7.) 운영 강화

- 종돈장은 다음의 5개 질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음성이어야 함.
 - 전국의 종돈장 수: 총 206개소
- 종돈장 방역관리 실태
 - 2000년부터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라 종돈장을 포함하여 전체 농장별로 연 3회 이상 구제역,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혈청검사 실시.
 - “종돈장위생관리요령(농식품부고시)”에 따라 관할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등 실시.
 - '97년부터 “위생·방역관리우수종돈장인증요령(농식품부고시)”에 의한 질병 비발생 농장 인증제도 운영.
- 2000년 이후 '23년말 현재까지 발생통계를 보면, 5개 질병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종돈장에 대한 검색 강화 필요
 - ① 구제역
 - 2018년 2개의 돼지농장 발생 이후 돼지농장에서 추가 발생보고 없음.
 - ② 돼지열병
 - 2002~2016년까지 118농장, 9,633두가 발생하였고, 2017년 이후 발생보고 없음.
 - ③ 돼지오제스키병
 - 2000~2009년까지 550농장, 30,582두가 발생하였고, 2010년 이후 발생보고 없음.
 - ④ 돼지브루셀라병
 - 2007년 경남 1, 2008년 전북 1건 발생, 그 이후 발생보고 없음.
 - ⑤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 2000년 이후 '23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총 1,054농장, 39,407두가 발생하였음.
- 종돈장 방역관리 강화대책
 - 종돈장 및 인공수정 센터를 대상으로 구제역, 돼지열병 및 돼지오제스키병 및 PRRS 검사 강화
 - 시·군 동물위생시험소의 관내 종축장에 대한 방역규정 이행여부 확인 강화: 종모돈·웅돈 등 번식돈군 반기 1회 이상 정기검사 및 농장당 10두 이상 검사(해당 지역 양돈 전문수의사의 시료 채취 의무화) 철저
 - 분양 후보모돈은 연간 분양두수의 20%에 대하여 3개월 간격으로 정기검사
 - 후보모돈 분양시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 종돈장의 연도별 대상 질병 모니터링 결과 공개로 자율방역 의식 강화

- 2)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농식품부고시 제2022-119호, '22.12.8.) 운영 강화
- 육용 종계는 2만수 이상, 산란 종계는 1만5천수 이상 기준.
 - 2000년 이후 '23년말 현재까지 전국적 발생통계를 보면, 5개 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종계장·부화장 검색 강화 필요
 - ① 추백리
 - 발생건수는 많지 않으나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총 43농장에서 발생하였음.
 - ② 가금티푸스
 - 연중 다발하고 있으며, 2000~'23년 말까지 총 1,399건의 발생보고가 있어 많은 발생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최근 15년간('09~'23) 503개 농장에서 발생을 보임.
 - 다만, '22, '23년도에는 각각 3개 농장, 8개 농장의 발생통계만 있어 현저히 줄고 있는 추세이나 일정 기간별로 폭발적 발생을 보이므로 전국적 질병 모니터링과 질병 변화양상을 추적해야 할 질병임.
 - ③ 닭마이코플라스마병(*Mycoplasma gallisepticum* 감염증)
 - '15~'23년까지 총 63건의 발생이 기록되어 있으며 연중 다발하고 있음.
 - 종계장·부화장의 방역관리 강화대책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관내 종계장·부화장에 대한 방역규정 이행여부 확인 강화.
 - 종계장·부화장의 연도별 대상 질병 모니터링 결과 공개로 종계장·부화장의 자율방역 의식 강화.

참 고

- ◆ *Mycoplasma synoviae*에 의한 닭마이코플라스마병(MS 감염증)도 난계대전염병이긴 하지만, 야외에서 발생이 너무 많아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대상 질병으로 정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됨.
 - '16~'23년까지 총 35개 농장에서 발생보고 되었으나 발생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종계장 및 양계장에서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 ▶ 정책적 성공을 위해서는 현재 발생상황을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시킨 후에 종계장 방역관리 대상 질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임.

2-4. 법정가축전염병 분류체계 개선(안)에 따른 민간 자율방역제도 강화 방안

가. 필요성

- 새로운 법정가축전염병 분류체계에 따라 2종에서 3종으로 재분류된 질병은 반추수 전염병 3종, 돼지 전염병 2종, 가금 전염병 2종임.
 - 반추수(3종): 원충성 질병인 타이레리아병(팔바 및 에놀라타), 바베시아병(비제미나 및 보비스), 아나플라즈마병(마지날레)
 - 돼지(2종): 돼지텃센병 및 돼지인플루엔자
 - 가금(2종): 가금티프스 및 오리바이러스성간염
- 2종 법정가축전염병인 가금콜레라의 경우, 만성질병은 3종 법정가축전염병에서도 삭제하고, 2종으로 분류된 가금콜레라에 “급성에 한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급성 가금콜레라만 2종 법정전염병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개선함.
- 분류체계 개정안이 야외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관리 의지를 느슨하게 할 수 있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크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 자율방역체제 강화가 병행되어야만 할 것임.

나. 민간 자율방역체제 강화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가금질병을 중심으로 일본과 같이 가축질병 현장 방역시스템을 민간 자율방역 체제로 전환하자는 운동이 전개된 바 있음.
 - 가금 사육농가의 자율방역 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나 2000년 구제역 발생 이후 국가방역이 강조되면서 소독제, 백신 등을 무상공급함에 따라 자율방역 의식이 오히려 쇠퇴하는 계기로 작용함.
- 차단방역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는 산란계 농장에게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조건부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용하여 농가의 자율방역 유도('21년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계획, 농식품부).
- 지자체 별로 ‘가금 사육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자율방역) 전개
 - 농가별 맞춤형 가금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질병 발생 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가금의 질병 관리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 가금수의사의 방역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별 자율방역 관리시스템 구축과 시설개선 방안 지도.
- 정부 및 지자체에서 부분적으로는 사육농가 자율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추진 주체가 모호하고 제도적 지원이 없어 구호에 거치고 있으므로 조직적으로 농가 자율방역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의 사례

□ 호주 동물보건연합(Animal Health Australia, AHA)에 의한 민간 자율방역 실현
(출처: AHA 홈페이지, <https://animalhealthaustralia.com.au/>)

- AHA는 정부의 방역기구와 방역현장을 연결하는 반관·반민의 비영리 공공기관으로서 호주 농업수자원환경부 장관, 주 정부 농업장관, 축산 관련 단체장, 수의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 등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긴급동물질병 및 가축질병 방역에 관한 각종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여함.
 -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정부와 민간이 동등한 지위로 참여하는 ‘참여방역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방역에 있어서의 민간기구 및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임무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음.
- AHA는 호주 정부와 협력하여 긴급 동물질병 대비 프로그램(Emergency Animal Disease Preparedness Program) 등 방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 방역사업 등을 실시하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 긴급 가축질병 방역 훈련, 축산업계 및 대국민 방역인식 강화, 방역당국과 공조하여 AUSVETPLAN 개발 및 보완, 긴급 가축질병 예찰 감시체계 유지, 정보체계 개발, 긴급방역 재정 지원 등이며, 광범위한 방역업무 수행.
 - 이미 검증된 거친 민간 수의사의 참여가 핵심적 역할을 함.

□ 일본의 가축축산물위생지도협회 주도의 민간 자율방역체계

- 가축 사양가의 일상적인 자율방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철저한 차단방역, 적절한 예방접종 및 검사 등에 대한 자율적 조치사항을 질병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농가 자율방역은 2부류로 구분됨(MAFF, 2023).

① 축산물위생지도협회를 통한 전국적 민간방역 선도

- (성격)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수단 확보를 위해 조직적이고 통일된 방법으로 각종 방역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도부현에 민간 주도의 축산물위생지도협회를 설치하여 민간방역을 선도하도록 지원함.
- (예산) 회원의 연회비와 정부 및 지자체의 부과금, 보조금, 기금, 찬조금, 광고 수입 등을 통해 예산 확보
- 이 예산으로 가축방역과 질병 모니터링, 홍보, 가축보건과 임상교육 실시는 물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상조금 교부를 통한 농가 보상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음.

- 자율방역 실시를 위한 실행 프로그램 계획, 자율방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제고, 예방접종, 각종 농장검사 실시 등 담당.
- 협회 사업은 민간 수의사, 특히 지정 수의사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민간 수의사의 배치 및 활용 방안 수립 필요.
 - 민간수의사의 지정은 일본수의학회(JVMA)와 협의.

② 가축 사양가에 의한 개별적 자율방역(Self-protective quarantine)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하에 사양가들의 개별적 자율방역 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질병별로 명확한 지침 수립 및 제공.
- 지자체의 지침 및 가축축산물위생지도협회 지도에 따라 농장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 위생적 사양관리, 소독, 백신접종 등 자율적 실시

<시사점>

-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중심 방역체계는 지자체의 중앙정부 의존성 심화, 지자체의 전문성 확보 노력 약화, 중앙방역기구의 피로감 누적 등 부작용이 많으므로 중앙과 지방의 확실한 역할 분담 및 책임 부여 필요.
- 현장 방역의 상당 부분은 축산인 및 축산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율방역체계로 실행되는 것이 선진국형 방역개념으로서 국가 방역조직의 효율성 확보와 현장방역의 효율성 면에서 실익이 많음.
- 협회·단체와 사양가 중심의 민간 자율방역체계나 민간 중심 방역체계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서는 중앙 및 지자체의 예산 및 인프라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함.
 - ※ 현재 지역축협에서 운영하는 공동방제단은 자율적 개념이 아닌 농장 주변 소독 등 방역체계의 일부 영역에 한정되어 활동하며, 매년 농협경제지주에서 무이자자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에 연 1000억원 가량이 배정되고 있음.

3) 국내 민간 자율방역체계 구축방안

가) 축산 관련 단체·협회를 활용한 축종별 민간 자율방역체계 구축

- 정부 및 지자체의 방역예산과 축산 관련 협회의 자조금을 활용하여 방역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일본 축산물위생지도협회를 벤치마킹하여 자율방역체계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및 운영방안 수립이 우선시됨.

나) 축종별 임상수의사 활용 체계 수립 및 제도화

- 소임상수의사회, 돼지임상수의사회, 가금임상수의사회 등 축종별로 전국의 임상수의사회의 숙달된 전문가 집단에게 현장 방역 지원 및 농가 지도 기능 부여.

- 현재 지자체 별로 공수의제도가 있지만 축종별 전문성 면에서는 효율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제도적으로 축종별 임상수의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 수립 필요.

제3장 주요 가축전염병의 단계적 방역목표 수립 및 방역지표 설정

1. 현황 및 가축질병 발생 원인 분석

1. 국가별 가축질병 발생 현황

표 3-1. 우리나라의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단위 : 두, 수)

축종	병명	'00	'20	'21	'22
소	구제역	81(15건)	-	-	-
	결핵	541(148건)	3,042(299건)	2,086(255건)	1,895(228건)
	브루셀라	1,375(153건)	784(126건)	1,678(187건)	1,148(115건)
돼지	구제역	-	-	-	-
	돼지열병	-	-	-	-
	오제스키병	7,416(137건)	-	-	-
	아프리카 돼지열병	-	3(2건)	20(5건)	80(7건)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2,542(51건)	65(22건)	178(44건)	152(35건)
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42건	86건	84건
	뉴캐슬병	1,148,499(76건)	-	-	-
	추백리	-	2,420(2건)	25,500(1건)	-
	가금티푸스	1,343,620(105건)	42,796(13건)	20,463(10건)	1,631(3건)
개	광견병	28(24)	-	-	-
사슴	만성소모성질병	-	101(4건)	30(4건)	60(7건)

<법정가축전염병> 총 68종 : 1종 15종, 2종 32종, 3종 21종

※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95종)

표 3-2. 해외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단위 : 두, 수)

분류	대륙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아메리카	-	-	224	66	56
	유럽	7,798	8,809	11,676	6,087	9,048
	아프리카	36	53	131	85	94
	오세아니아	-	4	-	-	-
	아시아	9,692	668	889	358	464
	계	17,526	9,534	12,920	6,596	9,662
고병원성 조류인플 루엔자 (HPAD)	아메리카	33	1	1	1,093	1,279
	유럽	9	1,104	3,728	5,429	3,854
	아프리카	30	5	449	284	221
	오세아니아	-	3	-	-	-
	아시아	162	270	394	672	526
	계	234	1,383	4,572	7,478	5,880
구제역 (FMD)	아메리카	-	-	-	8	-
	유럽	17	1	1	5	17
	아프리카	462	41	103	488	462
	오세아니아	-	-	-	-	-
	아시아	43	2	37	123	43
	계	522	44	141	624	522

* (럼피스킨) 중동지역('12), 동유럽('15), 방글라데시-인도-중국('19), 몽골-러시아('21.9)

(아프리카마역) 태국('20.2)에서 아시아 최초 발생, 캄보디아-홍콩('21.1), 라오스('21.8) 등

2.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

가. 무역자유화(2000년) 이전

- ① 세계 자유무역화가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질병 유입기회가 적어 토착형 인수공통전염병 2종(탄저, 브루셀라)만 발생
 - 그 외 소모성 가축질병 위주로 발생하여 생산성 저하
 - 기종저·유행열·아까바네 등(소), 오제스키·유행성설사 등(돼지), 뉴캐슬병·가금티푸스·추백리 등(닭)
- ② 인수공통전염병(제2종)에 대한 홍보 및 인식부족으로 소탄저나 브루셀라에 걸린 생고기를 먹은 사람의 피해 사례 발생
 - 소탄저 1명('94), 광견병 5명('99 1, '01 1, '02 1, '03 2) 사망, 브루셀라 14명 증상 호소('03)

나. 무역자유화와 광우병의 세계적 확산(2000년) 이후

- ① 세계 무역자유화 이후 인적·물적 교류 증가로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
 - 구제역('00년 발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03년), 사슴만성소모성질병('01년, 광우병의 일종), 렘피스킨('23.10.19 발생)
- ② 우리나라는 축산물 수입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2000년도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 이후 이들 국가로부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됨으로써 축산물을 수입할 국가가 호주와 뉴질랜드로 한정되어 수입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돼지, 닭 등 사육두수가 증가
 - 그 중 무허가 축사와 밀집사육도 증가하여 방역에 취약요인이 되었으며, 무역자유화로 해외 가축질병의 유입과 맞물려 최악의 방역 상황이 됨

표 3-3. 연도별 국내 가축 사육현황 변화

(단위 : 천두)

구분	'83년	'95년	'05년	'15년	'20년	비고
한 육우	1,940	2,594	1,819	2,909	3,396	
젖소	275	553	479	428	408	
돼지	3,649	6,461	8,962	10,187	11,365	
닭	49,239	85,800	109,628	164,131	173,312	

* 출처 : 통계청(2020), 통계로 본 축산업 구조변화

표 3-4. 우리나라의 연도별 축산물 수입 현황

(단위: 천톤)

구 분	'80년	'90년	'00년	'05년	'10년	'15년	'22년
쇠고기			233	143	245	299	477
돼지고기	13	89	394	433	524	358	442
닭고기			68	59	106	119	188

3. 발생원인 분석 및 피해 정도

가. 발생 특징

- 무역 자유화 이전에는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이 일부 대륙에서 발생하고 다른 대륙으로 전파되는 것이 몇 십년 걸렸으나, 무역자유화 이후에는 비행기나 선박의 행로를 따라 전세계로 급속 확산
-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국 등 악성가축전염병 상재 지역에 둘러 쌓여 있어 유입가능성이 높고 청정화 유지에도 어려움 상존
 - 구제역('00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04)의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이 동시발생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계절 질병으로 반복발생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국가에서 겨울나기를 하고 북극으로 돌아간 철새가 각대륙에서 온 철새에게 전염을 시킨 후 다음해 각대륙으로 날아가 전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대 유행을 시키는 일도 있음
-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는 계절별로 다른 종류의 가축질병이 발생
 - 구제역(봄, 겨울), 브루셀라(년중), 돼지열병(봄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겨울)
- 호주의 경우 섬나라로서 축산업을 주 산업으로 하는 국가로서 가축질병 퇴치에 국력을 쏟아부어 가축질병 청정국으로 전세계에서 으뜸인 국가임
 - 청정질병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열병, 소브루셀라병, 소 결핵
 - 발생질병 :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나. 발생원인 분석

- 역학조사 결과 해외여행객, 휴대육류, 야생철새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집단밀

집지역에서 발생되어 큰 피해초래

- 친환경적으로 키운 가축은 **내병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구제역 : '00년 최초 발생 시 여행자·휴대육류·수입건초로 추정
 - 돼지열병 : '02년 중국으로부터 여행자 등에 의해 재 유입 발생
 - 조류인플루엔자 : 해외여행객, 불법반입 육류, 야생철새 추정
- 공항만의 검색시스템과 검역인력 부족으로 병원체 유입방지가 어렵고, 방역조직 및 인력부족으로 유입병원체의 박멸에 한계
- 중앙조직 축소 및 민선 시장·군수가 농업부서 축소

II. 국내방역 추진 현황

1. 가축방역 추진 상황

가. 방역 추진체계

(1) 국경검역 추진체계

- 검역방향 : 동·축산물은 수출국의 방역체계 및 질병상황을 조사, 안전한 국가로부터만 수입 허용
 - 구제역·광우병 등 주요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부터 수입금지
 - 주요 질병 비발생 국가에 대하여 위험분석 실시
 - 수입허용 국가에 대한 품목별 수입위생조건 제정, 검역기준 제시
- 검역절차 : 비행기선박의 집중 검역 등으로 위해요인 차단 추진
 - ① 상품검역(교역) : 국가간 동·축산물별 위생조건 제정 → 수출국 검역(1차)→ 국내 수입검역(2차) → 이상이 없을 경우 통과
 - ② 여행자(휴대품) : 휴대검역증명서가 있을 경우 검사 후 통과
검역증명서가 없는 불법휴대 동·축산물 압수폐기
 - ※ 수입금지물품 수입 등 행위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휴대품 미신고자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검역방해자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검역장소별 조치
 - 공 항(휴대품 중심)

- 전국 국제공항에 해외여행자 발판 소독조 운영
- 여행자 수화물에 대한 X-ray 검사
- 주요 질병 발생국 출발노선에 대한 검역·검색 강화

○ **항 만(상품중심)**

- 자동수입시스템(AIIS)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주요 질병의심 국가산 검역물 정밀 검사

(2) 국내방역 추진체계

《**평시방역**》 매년 가축종류별·질병별 **예방접종**(구제역, 돼지열병 등), **검진**(브루셀라, 결핵 등), **혈청검사** 등 실시결과 양성 판정시 살처분도태 등 조치

□ **방역체계**

- **농식품부** : 방역정책·가축방역사업계획 수립·시행, 점검, 평가
- **지자체**
 - **검진**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사 등 농가 방문 실시
 - **혈청검사** :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이 채혈을 실시하여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 시험소에서 정밀검사 및 판정
 - **농가예찰** : 가축방역관이 농장 현장 정기 예찰 추진
 - **예방접종** : 가축방역관, 수의사 등을 통해 접종, 전업농의 경우 자가접종도 병행
 - **현장점검** : 위반자 처벌

* 정부는 **제1종 위주 방역, 제2종이라도 경제적 피해가 클 경우 정부 방역 추진**

□ **방역추진 사항**

- 매주 수요일을 “**전국일제소독의날**” 로 지정·운영
 - 마을단위로 “**공동방역단**” 이 소독 조치
- 농가·공무원·단체·협회 회원 홍보·교육
- 소독 등 방역추진사항 현장 점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소독·예찰·홍보 등 실시
-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가 및 산업연수생 방역관리 강화

《**발병시 방역**》 : **조기 진단 및 초동방역 철저히 조기종식 추진**

□ **법적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

□ 신고 및 진단체계

- 신고체계 : 의심축 신고(농가진료수의사 등) → 읍면·시군, 시험소 등 → 가축방역관(시군·시험소) 현장 출동 → 해당농장 이동제한(시·군) → 임상검사시료채취(검사기관 송부)
- 진단체계 : 검사시료 접수(시험소, 검역본부) → 부검(병리검사) → 정밀검사(혈액검사·병원체분리·유전자 분석 등) → 판정
 - 가축방역관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 검역본부에 정밀검사 의뢰
- 역학조사 : 검역본부와 시·도 합동
 - 학계·단체·협회·마을이장·경찰 등 전문가로 편성된 역학조사반을 운영, 가축·사람·차량 이동사항 등 발생원인 및 전파경로 신속 파악 및 대처

□ 방역조치(양성판정 시)

- 농식품부, 시·도, 시·군에 방역상황실을 가동 및 보고체계 유지
- 방역대 설정(보호지역 : 3km, 예찰지역 : 10km) 이동제한 조치
 - * 군병력·공무원·민간단체 등 합동 통제초소 근무
- 살처분(질병종류상황에 따라 범위 산정),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및 농가지원 대책 시행

□ 관계 부처 신속협조

- 행정안전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원본부 설치 운영(필요시), 주관·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강화, 특별교부세 등 지원
- 환경부 : 매몰지 환경관리대책반 운영,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등 기술지원
- 국방부 : 현장 인력 및 장비 지원
- 관세청 : 항공기·선박 등을 통한 동·축산물 등 불법 반입 단속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시 가축방역요원 등에 대한 방역 강화 등
- 문화체육관광부 : 소비자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 협조(TV, 자막광고 등)

2. 그간의 방역 및 위생대책 평가

- 1990년 대 이후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 되고 무역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세계는 하나의 국가처럼 사람 및 동물질병도 동시에 유행하게 되었음.
- 2000년 유럽의 BSE(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 2003년 미국 캐나다의 BSE 발생으로 쇠고기 등 육류 수입이 금지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비상이 걸렸고, 농장 사육 규모가 대형화 되었으나 무허가 축사가 늘어나고 밀집사육 등으로 인해 사육환경이 악화됨.
- 2000년 구제역(FMD)이 발생한 이후 돼지열병, BSE 사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이 계속하여 발생하였고, 질병 발생시 모든 조직 구성원이 방역하느라 체력적·정신적 소진 상태에서 방역이 끝나면 사후대책 수립은 물론 관련 법령과 규정 제·개정에 매달리는 등 20년 이상을 방역조직의 혹사가 지속되어 한계에 봉착함.
- 그 덕분에 해방 이후 기초적으로 허술하고 미비된 법령 등 관련규정은 거의 완전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가축질병 예방 및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가축방역 통합시스템(KAHIS)을 구축하여 과학적인 방역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KAHIS 구축, 관련 산업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차량이 움직이는 루트도 파악하여 질병 전파확산 방지에 활용 : '21 기준〉
 - 축산농장 186천개, 축산과계시설 14천개, 축산차량 61천대, 질병발생정보 176천건, 방역관리정보 75천건/일, 축산시설 GIS 정보 295천개, 축산차량 방문정보 175천건/일, 축산차량 이동(GPS) 정보 10,000천건/일, 축산관계자 377천명, 외국인 근로자 17천명 등
- 광우병 사태에서 보듯이 가능성 만으로도 나라가 흔들리고, 구제역으로 3백만두를 살처분할 때는 작업 과정에서 다수의 인력이 부상을 당하거나, 트라우마로 정신치료를 받고, 3조원의 피해와 전 국토가 무덤으로 환경이 파괴되는 부작용이 있었음.
- AI 등 국가재난형 질병 발생시 전 직원이 퇴근이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의 방역에 따른 신체기능 악화, 수면시간 부족 등의 열악한 환경이 지속되었음.
- 그런 아픔의 결과로 질병 방역이 마무리 됨과 동시에 제도를 고치고 시스템을 정비해 방역체계가 많이 정립되었음.

- 그 중 광우병(BSE : 소해면상뇌증) 방역은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임.
 - '02년에 SOP를 제정, 유럽산 육골분 수입을 차단하여 광우병 발생을 막았고, 일본은 SOP를 제정하지 않아 광우병이 발생하였음.
 - 광우병 사태 때 미국산 SRM(특정위험물질) 수입금지 및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되도록 조치하여 촛불집회 진정시키는데 역할을 하였음.
- 그간 아래와 같이 3가지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국민먹거리를 만들어 공급하는데 기여하였음.

첫째, 동물약품 의약분업(수의사처방제)도 하였음.

- 축사우리는 가축의 분노가 상재하여 질병에 취약하므로 항생제 등을 많이 사용하여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서 항생제가 검출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여 사회 문제가 되었음. 이에 따라 의약분업이 필요하였으나 수의사법과 약사법을 동시에 개정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아 사람의 의약분업보다 어려웠음.
- 농가와 축산단체는 극렬히 반대했고 시민단체, 약사, 국회에서도 반대하였으나 오랜 설득 끝에 12년에 법제화 되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수 있게 되었으며, 수의사 처방에 따라 약을 사용하게 하여 항생제 등 동물약품 사용을 줄임으로써 항생제 검출 축산물이 거의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도출하였음.

* 수의사처방제 도입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약사법 및 수의사법 개정 : '11.12)

둘째, 원유등급제도를 도입하였음.

- 고름우유 사건과 원유통에 쥐가 빠지는 사건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고, '93.6월 원유 등급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원유의 세균수와 체세포수에 따라 원유값을 차등지급 하여 우유의 질을 고급화 하였음.
- 주한미군이 미국에서 우유를 공수해 먹다가 원유등급제 이후 한국 우유가 미군부대에 납품되었고, 중국의 많은 가정에서 한국우유가 어린이용으로 선호되고 있고 다른 국가로도 수출되는 계기가 되었음.

셋째, '07.12.21 축산물 이력제를 시행하여 핸드폰으로 마트에서 농장, 도축장, 가공장을 알수 있도록 하여 축산물에서 항생제 과다 검출 등 문제시 될 경우 해당 농장 등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건강하고 좋은 축산물 생산을 하게 하였음.

- 상기 3가지 정책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되어 우리나라는 축산물 먹거리의 품질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되었음.
- 또한 농장질병등급제, '12년 동물복지 인증제, '14년 반려동물등록제를 도입하여 동물보호의 초석을 놓았음.
- '04년과 '11년 가축방역종합대책, '09년 국경검역 대책 수립으로 440명의 인원을 확충하였고, 그 외에도 농식품부에 수의 관련 조직을 계속 확대하여 국민 먹거리와 국민정서에 기여하였음.

3. 문제점

가. 가축사육 및 급여 문제

(1) 사육환경 취약

-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의 축사는 질병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과학적으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나 사육에만 중점을 둔 축사가 많음
 - 축사는 기본적으로 축사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한지, 습도 조절이 가능한지 등 쾌적한 사육환경이 이루어져야 하나 좁은 국토에서 지형에 맞춰 시공
 - 축사 시공시 건축가 + 축산전문가 + 수의전문가 + 기상전문가의 조언이 필요
 - 친환경축산직불제, 축산업등록제 등이 도입되었으나 밀집사육 여전
- 무허가 축사는 제도적으로 수용하여 다시 건축하지 않는 한 방역에 취약

(2) 폐사축 불법 처리

- 폐사축을 개사료로 공급하거나 거름 무더기에서 썩게 하여 쥐 등이 질병을 전파

(3) 축산분뇨처리 미흡

- 축산분뇨를 축사내에 오랜기간 쌓아 두어 파리·모기의 서식지 역할

(4) 남은 음식물 급여

- 남은음식물을 열처리 없이 사료로 사용하여 질병 발생

나. 지리적 및 활발한 교역·여행 문제

(1) 질병의 온상인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포위된 지리적 위치

- 동남아 국가에는 다양한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되고 있으나 생활패턴상 근절이 쉽지 않아 이웃 국가로 전파 위험성이 높음

(2) 2000년 이후 무역 자유화가 활발히 이루어 짐으로서 사람 및 동물 전염병이 전세계로 급속히 전파

○ 인천공항과 부산신항 등은 전세계로 실어나르는 교역물품의 중간 기착지 역할

(3)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의 유입 위험도 급증

다. 국경검역 문제

(1) 국경검역 한계

□ 여행객 검사

○ 여행객의 급격한 증가에 비하여 검역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휴대품 검색에 한계

○ 인력 및 장소 등의 한계, 공항 통과 시간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객 및 물품에 대한 전수검사를 하지 못함에 따라 구제역 등 주요 가축질병 발생국 여행자를 통한 질병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할 우려도 존재

□ 상품, 우편물 검사 한계

○ 해외 직구 및 국제 우편물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탐지전 배치 증가 등 검사를 확대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 100% 검사에 한계

□ 컨테이너 화물

○ 우리나라는 축산물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여 검역물량이 많아 샘플검사 등을 하고 100%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가축질병 유입 가능성 상존

(2) 해외 악성 가축 질병 및 위험도·위험경로별 대책에 대한 연구 미흡

□ 해외 악성 가축질병은 사전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유입을 차단하는 대책과 유입시 초동대처 방안이 필요하나 해외 현지 운영 연구소 및 파견 연구인력이 전무

다. 국내 방역상의 문제

(1) 농가 질병 및 위생관리 이원화

□ 농장에 대한 가축질병에 대하여는 농식품부가 관장하고 있으나 농장 HACCP를 식약처에서 담당하고 있어 농장 가축질병관리에 대한 부처 일원화가 시급함

- 농장 HACCP : (현행) 축산물위생처리법,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개선) 가축전염병예방법, 농식품부 검역(방역)본부 담당

- 일본은 농림수산성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농장 HACCP 담당('02)

(2) 농장 질병 등급제 실시 미흡

- 농장 또는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 방역 및 사육환경 등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소모성질병 농가 및 단체 자율방역 도입

- 3종 가축전염병은 풍토병화 되어 있으나 발생시 1종과 같이 이동제한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어 신고를 기피
- 제3종 가축질병에 대하여는 농가 및 민간에 자율방역으로 규정 필요
- 정부에서 백신 및 예방약을 무상공급하는 제도 재검토 필요

(4) 민간기관의 질병 정보 전산화 강화

- 현재 민간병성감정기관은 KAHIS에 질병정보를 의무적으로 입력하여야 함

(5) 개업수의사 농장 방문 법제화 도입

- 재난형 전염병 사전 예방 및 유입시 초동대처가 가능토록 하고 소모성질병의 정확한 파악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력풀 활용 대책 수립 필요

(6) 농가 자율방역활동 미흡

- 농가의 소독기구 설치 미비 및 소독 등 자율방역 소홀
- 질병증상 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고 지연 등 방역위반 사례 발생

(7) 가축질병의 민관 공동 관리 제도 도입 필요

- 우리나라 축산업 규모가 커지고 전업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관 주도 질병관리 한계
 - 농가 스스로 위생과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웃 농가로부터 견제받는 체계 도입 필요

(8) 수의직 공무원 기피 현상 개선책 필요

- 수의대 학제가 6년제로 됨에 따라 우수학생이 배출되어 대도시 개업 선호
- 공무원 채용을 위한 유인책 미흡
- 대학 입학시부터 일정기간 농어촌 근무를 의무로 하는 특례제도 도입 등 대책 마련 필요

(9) 지자체의 일부 방역조치 이행 미흡

- 가축방역 전담수의사가 없는 시군이 많아 가축방역 소홀 우려

□ 시·군의 민간방역 단체·협회 활용 미흡

(10) 유통 및 확산경로에 대한 파악 미흡

□ 질병발생 예방을 위한 사육·출하·도축단계의 방역 관리 강화 필요

(11) 유기동물 관리 부족

□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방치 할 경우 사람에 대한 위협 증가

□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전파 위험

(12)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미흡

□ 반려동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등록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전체적인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인수공통전염병의 전염 우려

(13) 신종 해외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인식 부족

□ 해외 신종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예방대책 사전 마련 필요

□ 광우병 발생시에는 사회적 큰 파장이 우려되므로 사전 예방 및 발생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

(14) 국내 상재 발병 저감대책 미흡

□ 한우 브루셀라 검진체계 보완·강화 필요

□ 돼지설사병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등 소모성질병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라. 조직·인력상의 문제

(1) 중앙조직

□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전통적으로 식량과 식품 위주로 국민먹거리를 관리하는 조직이었으나 가축방역에 대한 중요성과 애견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관련조직 확충

- 예전에는 축산국만 존재하였으나 이제는 국민정서를 관리하는 조직 신설

* (중전) 축산국 → (개선) 축산국 + 방역정책국 +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 그러나 업무가 서로 연관된 3개 국이 3개 실장 아래에 분산되어 업무 효율성 저하

○ 농식품부의 조직은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변화되고 있으나 산하 방역기관 및 지방조직은 수의직 공무원이 절대 부족한 상태임

- 농식품부도 수의직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행정직과 농업직이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

□ 농림축산검역본부

- 검역과 동물방역 업무는 늘어나고 있으나 수의직 공무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함
 - 결원이 약 50여명으로 업무가 근무자에게 전가되어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연쇄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부작용 발생
 - 2024년 환경부에서 야생동물 검역기관이 신설되고, 검역본부 수의직들이 환경부로 이직을 할 경우 검역본부의 수의직 공무원 결원이 늘어나 검역 및 방역 공백 상태가 우려됨
- 2008년부터 수의과 대학이 6년제로 운영되어 수준 높은 인력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임상 대비 급여 등 처우가 열악한 공무원 기피 현상 가중
- 신종 인수공통전염병 유입방지 및 연구, **반려유기동물 관리, 역학조사 보강**, 수입위험 평가 등 **역량 제고** 및 관련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해 **조직인력 확충 필요**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수의사는 공무원도 기피하는 형편이므로 방역본부에는 더 수의사 채용이 어려운 실정임
- 가축질병 지속 발생 등으로 비상임 기관장의 대외활동 한계
-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사업 확대 및 현장인력 증가 대비 행정인력이 인력이 매우 부족하며, 행정인력 부족에 따라 기관운영 문제점 발생 및 현장업무 차질
- 가축전염병 전국 발생 시 시·도 단위로 편성·운영 중인 방역인력의 신속한 투입이 어려워 확산 방지 지난, 경제적 피해 확대
- 구제역·AI·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직원 처우 개선을 통한 소통과 기관의 노력 공유
- 지속적인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신속한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 및 신속대응을 위한 별도의 기동방역기구 필요

(2) 지방조직

□ 시·도

- 농식품부와 마찬가지로 시도에 가축방역 담당과를 신설하여 잘 대처하고 있으나 산하 시·군이나 동물위생시험소에 수의사 인력이 부족해 원활한 지시사항 이행이 어려운 실정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도 수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해 일선 방역 업무에 차질
- 수의대 6년제 도입 이후 동물병원 등에서의 처우 개선과 수의사의 대도시 근무 선호 등의 이유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

□ 시·군

- 농촌의 도시화로 농업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민선 시장·군수가 복지·건설 등 주민 지원부서 증원을 위해 농업부서 축소

III. 주요 가축질병 방역 대책 및 방역지표 설정

1. 주요 가축전염병 선정 및 방역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단계적 목표

가.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가축질병

(1) 청정화 대책 질병

- ① 구제역
- ② 돼지열병
- ③ 렘피스킨

(2) 발생 저감 대책 질병

- ① 아프리카돼지열병
- ② 추백리
- ③ 가금티푸스
- ④ 돼지생식기호흡기중후군
- ⑤ 돼지유행성설사병
- ⑥ 브루셀라병
- ⑦ 결핵병
- ⑧ 사슴만성소모성질병
- ⑨ 낭충봉아부패병

(3) 발생 최소화 대책 질병

- 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4) 비발생 유지

- ① 가성우역
- ② 아프리카마역

2. 가축 질병별 방역 대책 및 지표 설정

■ 청정화 대책 질병 ■

가. 구제역(FMD)

(1) 최근 5년간 발생 현황

- '19년 3건 발생 이후 3년간 발생이 없었으나, ' 23년 11건(소 10, 염소 1) 발생(표 3-15)

(2) 국내·외 발생 사례

□ 발생동향

- (2000) 우리나라 구제역 첫 발생, 소 사육농장에서 총 15건 발생, 2,216두 살처분
 - 발생지역 Ring 백신 실시, 예방접종 중단 1년 후 2021.9월 미접종 청정국 지위 최초 획득
- (2002) 경기, 충북지역 소, 돼지 사육농장 총 16건 발생, 160,155두 살처분
 - 백신 미접종, 방역대 예방적 살처분, 2022.6.23.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2022.11.29. 청정국 지위 회복
- (2010.1월) 경기도 소 사육농장 총 6건 발생, 5,956두 살처분
 - 백신 미접종, 방역대 예방적 살처분
- (2010.4월) 인천, 경기, 충북, 충남지역 소, 돼지 사육농장 총 11건 발생, 49,874두 살처분
 - 백신 미접종, 2010.9.27. 청정국 지위 회복
- (2010.11월~2011) 전국 11개 시도 67개 시군에서 총 153건 발생 3,480천두 살처분
 - 전국 백신접종 실시, 2014.5.29.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
- (2014.7월) 경북, 경남지역 돼지 사육농장에서 총 3건 발생, 2,009두 살처분
 - 전국 백신접종 실시, 백신접종 중으로 종식 선언은 하지 않음
- (2014.12월~2015) 7개 시도 33개 시군에서 총 185건 발생, 171,128두 살처분
- (2016) 충남, 전북 돼지농장 총 21건 발생, 33,073두 살처분
- (2017) 3개 시군 소 농장에서 총 9건 발생, 1,392두 살처분
- (2018) 김포지역 돼지농장에서 총 2건 발생, 11,726두 살처분
- (2019) 안성, 충주 소 농장에서 총 3건 발생, 2,272두 살처분

- (2023) 충북지역 소, 염소 농장에서 총 11건 발생, 1,571두 살처분
 - 약 4년만에 발생, 2016~2023년 발생 시 전국 백신접종 실시

□ **외국의 대규모 발생사례**

- (영국) 2001년 영국에서 약 2000건의 구제역 발생, 이로 인해 약 7백만 마리의 양과 소가 살처분되는 등 18조원의 피해 발생
- (대만) 대만은 1997년에 구제역이 발생한지 2주 만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4백만 두의 돼지가 살처분되고 돼지고기 수출이 막히는 등 41조원의 경제적 피해와 양돈산업이 무너지는 피해 발생
 - 2020년 23년만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청정화 달성

(3) 청정화 대책(5단계 방역)

- (목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 후 장기적으로 백신미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

□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 조건 충족을 위한 비발생 유지
 - 전국 우제류 대상 백신접종(상·하반기 소·염소 일제접종 및 돼지 상시접종)
 - NSP, SP 혈청예찰을 통한 백신접종 및 발생 모니터링
 - 구제역 예방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축주 등 관계자 대상 교육 실시
 - 발생 시 양성축 부분 살처분,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실시 등
- (2단계)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
 - 24개월간 구제역 비발생, 12개월간 순환 바이러스 없음 증명, 예방접종 실시, 보고 및 기록 유지, 통제 등 규제 조치 이행 등 WOAHP 육상규약에 따른 6개 항목 충족 시 신청 가능
- (3단계) 백신접종 중단 검토
 - 우제류 사육농장 방역관리 강화
 - 구제역 통제 가능 일부 지역에 대한 백신 미접종 시범사업 추진
- (4단계) 전국 백신접종 중단
 - 구제역 방역실시요령(고시) 및 긴급행동지침(SOP)개정 등 제도 개선
 - 국경검역 강화

- 발생 등 긴급상황 대비 백신 완제품 및 항원 비축
- (5단계) 백신 미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
 - 백신접종 중단 후 12개월간 구제역 비발생, 백신 미접종, 구제역 예방시스템, 의심축의 이동통제, 보고 및 기록 유지 등 WOAH 육상규약에 따른 조건 충족 시 신청

나. 돼지열병

(1) 최근 5년간 발생 현황

- '16년 2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발생 없음

(2) 청정화 추진 사례

□ 돼지열병 근절대책 수립('96.7)-추진

- 돼지열병 근절대책을 추진하던 중 일본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국가는 2000년 10월부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98)
 - '99년부터 100% 예방접종, 미접종 농장 과태료부과, 집중관리 등을 통해 목표대로 5년 후인 '01년 청정화에 성공함

□ '01년 청정화 이후 1년도 못되어 재발생, 예방접종 재실시

- '02년 중국 등 돼지열병 상재지역으로부터 재 유입 등의 원인으로 발생
- 철원('02)과 김포·강화('03) 발생 시 살처분 정책 등 청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종돈장에서 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를 전국에 분양하여 확산시킴으로서 전국적 예방접종 실시

(3) 청정화 대책

□ 목 표 : 국내 돼지열병 청정화 로드맵에 따른 청정화 추진

- 생산성 향상 및 수출산업 육성(제주도는 조속히 청정화 + 유지 관리)

□ 추진 계획

○ (제1단계) 청정화 로드맵 수립

- 세계동물보건기구의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획득 세부 평가기준 조사
- 돼지열병 방역 추진 및 청정화 관련 해외 사례 조사
- 돼지열병 마커백신의 국내 도입 시 양돈농가 사료비 절감 등 경제적 효용성 평가

- 돼지열병 마커백신 도입 시 지역별(제주 포함) 세부 접종방안 마련
- 돼지열병 청정화 관련 양돈농장 사육돼지 및 야생멧돼지 질병 모니터링 방안 제시
- (제2단계) 청정화 요건 충족을 위한 방안 시행
 - 생독백신 사용금지 - 전국적 동시 실시
 - 유전자 재조합 백신 접종 의무화 - 감별진단법으로 발생 확인
 - 도축장 검사 강화로 발병농장 추적 및 집중관리
- (제3단계) 청정화 지위 획득
 - 예방접종 금지, 검색 강화로 청정화 유지 → 청정화 선포
 - 돼지열병 예방접종국으로부터 종돈·돼지고기 수입금지

다. 렘피스킨

(1) 최근 5년간 발생 현황

- '23년 10월 19일 충남 서산 소재 한우농장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11.20일까지 총 107건 발생

(2) 방역대책 추진 현황

- 렘피스킨 재발 방지를 위해 '24년 렘피스킨 방역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
-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 지역과 '23년 발생지역 등 40개 시·군*의 소 129만두에 대해 렘피스킨을 전파하는 침파리 등 매개곤충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인 4월에 백신을 접종하고, 그 외 지역의 소 267만두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접종
 - * 강화, 평택, 시흥, 파주, 김포, 화성, 포천, 여주, 연천, 수원, 철원, 횡성, 양구, 고성, 청주, 충주, 음성,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보령, 서천, 고창, 부안, 임실, 군산, 김제, 무안, 신안, 함평, 영광, 김천, 예천, 창원
- '23년 발생 농가가 서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항만 등을 통한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비한 농가와 항만 인접 도로 등에 대한 예찰·방제를 집중 실시
- 해외에서의 렘피스킨 발생 상황을 지속 감시하고, 발생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로 인한 병원체나 매개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주요 항만 방제, 수입원료 운송차량에 대한 방역 조치 등 국경관리 대책 추진
- 방역 추진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정보를 토대로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긴급행동지침(SOP) 등 제도 개선
 - * 주요 개선 사항: 백신접종에 따른 선별적 살처분 적용 기준, 매개곤충 고려 방역대 범위 조정 등

- 현장, 학계, 관련 단체 및 방역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학 전문가협의회를 지속 운영
- 축산농가의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

(3) 청정화 대책

□ (목표) 중장기적으로 백신미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 추진

○ (1단계) 백신접종을 통한 비발생 유지

- 전국 소 대상 백신접종 실시
- 백신접종 이력 관리를 위한 규정 및 전산 시스템 구축
- 백신접종 후 바이러스 순환, 재유입, 새로운 계통군의 유입 등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한 예찰(임상검사 → 증상 확인 시 정밀검사) 실시

○ (2단계) 백신접종 중단

- 시·군별 위험도 분석에 따른 단계적 백신접종 중단 또는 전국 일괄 백신접종 중단 방안 수립
- 소 사육농장 방역 관리 강화

○ (3단계) 백신 미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

- 백신접종 중단 후 14개월간 럼피스킨 비발생, 백신 미접종, 럼피스킨 예방시스템, 의심축의 이동통제, 보고 및 기록 유지 등 WOAH 육상규약에 따른 조건 충족 시 자체적으로 청정국 지위 회복 선포

■ 발생 저감 대책 질병 ■

가.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1) 최근 5년간 발생 현황

- 2019년 9월 국내 최초 발생 이후 '23년까지 매년 발생 중임(표 3-5).

표 3-5.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2019년) 이후 연도별 발생 현황(발생농장 수)

질병명	'19	'20	'21	'22	'23	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14	2	5	7	10	38

* 출처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

- 야생멧돼지의 경우 2019년부터 2024년 2월까지 강원, 경기, 충북, 경북 및 부산에서 총 3,727두의 양성 개체 확인

(2) 문제점

- 감염 시 100% 치사율, 백신 및 치료제 없음, 야생멧돼지 박멸 어려움, 동 바이러스는 환경저항성으로 장기간 감염원* 존재 *멧돼지수 7만5천여두 추정
-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울창하여 멧돼지에 대한 ASF 방역이 어려움
- 소관부처 2원화(환경부 : 야생멧돼지, 농식품부 : 사육돼지)로 종합적인 대응이 미흡할 우려
- 정부와 민간에서 백신 개발을 추진중이나, 상용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3) 방역대책 : 연도별 단계적 발생 저감을 통한 비발생을 목표로 추진

① 농장방역 추진

- 농장주위 철책을 설치하여 멧돼지 등 오염동물 농장출입 방지
- 농장주 교육철저로 오염원이 농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행동요령 시스템 마련
- 농장주위 소독 등을 통해 2중 3중 바이러스 유입 방지

- 멧돼지의 양성개체가 경북에 이어 부산까지 확산되었으므로 농장돼지에 대한 사전 ASF 검색 강화, 혈액채취를 통한 실험실 검사 추진

② 백신 개발 및 예방접종 추진

- 국내 여러 민간회사에서 ASF백신을 개발 중에 있어 필요시 외국의 연구진과도 공동연구를 추진토록 검역본부에서 협조
- 검역본부도 신속히 실험 및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업체와 공동연구를 실시 하고 효과성과 안전성이 입증될 경우 신속허가 절차 추진

③ 멧돼지 개체수를 줄여 확산 방지

- 환경부와 협의하여 경북 멧돼지에 의한 ASF 미검출지역으로의 확산 차단 대책 마련
- ASF 검출지역에서 멧돼지를 통한 농장 내 유입 차단 방안 마련

④ 농장 방역 관리(농식품부) 및 멧돼지 포획 관리(환경부)에 따른 방역 협력 강화

- 접경지역 및 경북 ASF 확산지역의 상이한 전파 양상에 따른 적합한 대응 방안 마련
 - (농식품부) ASF 전파 위험지역 소독 및 가축·분뇨 운반차량 모니터링 추진 등
 - (환경부) 야생멧돼지 수색·포획 및 폐사체 관리에 따른 인위적 확산 요인 차단 방안 마련
- 가축방역관리시스템(KAHIS) 고도화를 통한 야생멧돼지 ASF 검출 정보 신속 전파

나. 추백리

(1) 최근 5년간 발생 현황

- '22년을 제외하고 매년 1~2건씩 발생 확인(표 3-6)

표 3-6. 최근 5년간의 추백리 발생 현황(발생농장 수)

질병명	'19	'20	'21	'22	'23	계
추백리	2	2	1	-	1	6

* 출처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

(2) 질병 특성

- 추백리는 종계에서 병아리로 수직감염되는 난계대전염병으로서 주로 초생추에 감염 되어 대량 폐사를 유발하며, 생존후에는 평생 보균계(carrier)로 남아 질병의 수평 전파에 주된 역할을 하므로 종계장·부화장 관리가 중요한 전염병임

- 현재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농식품부고시 제2022-119호, '22.12.8.)에 따라 난계대전염 방지를 위한 방역강화 추진 중

(3) 방역대책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관내 종계장·부화장에 대한 방역규정 이행 및 준수 여부 확인 강화
- 종계장·부화장의 연도별 대상 질병 모니터링 결과 공개로 종계장·부화장의 자율 방역 의식 강화

(4) 방역관리 지표 설정 추가 검토 제안

- ① 지자체별 종계장·부화장에서의 연간 추백리 검색건수
- ② 육계 및 산란계 병아리의 추백리 발생건수 및 질병 감소 추세
- ③ 발생농장의 즉시 신고 여부(발생 후 24시간 이내)
- ④ 발생농장 방역조치 신속성(발생 후 완료까지 경과일수)
 - 발생농장 격리 및 이동통제 등 신속한 방역조치 등

다. 가금티푸스

(1) 최근 5년간 발생 현황

-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연도별 발생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표 3-7)

표 3-7. 최근 5년간 가금티푸스 발생 현황(발생농장 수)

질병명	' 19	' 20	' 21	' 22	' 23	계
가금티푸스	23	13	10	3	1	50

* 출처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

- '22, '23년에는 각각 3건 및 1건으로 발생이 격감하고 있으나 발생신고 기피 사례가 있으며, 병아리 가격이 높은 연도에 발생의 위험이 높아 난계대전염병의 특성상 철저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가 요구되는 질병임.

(2) 방역대책

- ① 현재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농식품부고시 제2022-119호, '22.12.8.)에 따라 난계대전염 방지를 위한 방역강화 추진 중.
- ② 질병 발생 요인 최소화를 위하여 난계대전염의 사전 차단조치가 중요하므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감독 강화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관내 종계장·부화장에 대한 방역규정 이행 및 준수 여부 확인 강화
 - 종계장·부화장의 연도별 대상 질병 모니터링 결과 공개로 종계장·부화장의 자율 방역 의식 강화

(3) 방역관리 지표 설정 추가 검토 제안

- ① 지자체별 종계장·부화장에서의 연간 가금티푸스 검색건수
- ② 산란계 농장에서의 가금티푸스 발생건수 및 질병 감소 추세
- ③ 발생농장의 신고 여부
- ④ 발생농장에 대한 지자체의 차단방역 지도 건수 및 내용

라.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PRRS)

(1) 최근 5년간 발생 현황

- 매년 연중 발생하는 상재성 질병으로서 '21년에 발생이 증가하여 44건이 발생하였으나, '23년 33건으로 감소(표 3-8)

표 3-8. 최근 5년간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발생 현황(발생농장 수)

질병명	'19	'20	'21	'22	'23	계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26	22	44	35	33	160

* 출처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

(2) 방역 대책

<농장관리>

- PRRS 청정농장에서 정액 및 후보돈 구입

- 도입하는 후보돈 및 웅돈은 최소 30일 이상 격리사에서 순화
- 농장, 출입차량 소독 등 청결유지, 외부와의 출입통제
- 정기적인 위축돈 항원검사 및 사육단계별 혈청검사
- 감염된 돈사에 대해 세척·소독 후 3주 이상 비워둔 후 다시 검사

<방역제도·체계>

- PRRS 등 3종 가축전염병에 대해 이동제한 등 강제 방역을 지양하고 민간 자율 방역을 추진토록 법령 개정
- 일정 주기로 농장별 혈청검사를 하여 PRRS 발생농장을 대한한돈협회에 통보하여 자돈 거래 등에 활용토록 조치
- PRRS 질병 발생 진단 모니터링을 통한 청정 농가 보호 조치(오염농가로부터 돼지 이동금지 등)
- 국내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정보체계 구축과 위험도 예측을 통한 방역 예방 조치
 - * 유전적으로 다양한 PRRS 바이러스간 교차로 지속적인 재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정확한 발병 현황 파악과 백신 처방이 어려움
- 바이러스 지속적인 변이로 인해 국내 유행 바이러스에 대한 병원성 및 면역원성 평가
- 다양한 유전형의 PRRSV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백신주를 포함한 국내 유행 PRRSV 분석

마. 돼지유행성설사(Porcine Epidemic Diarrhea : PED)

(1) 최근 5년간 발생 현황

- 매년 연중 발생하는 상재성 질병으로서 '22년 발생이 급증하여 230건이 발생하였으나, '23년에는 83건으로 감소(표 3-9)

표 3-9. 최근 5년간 돼지유행성설사 발생 현황(발생농장수)

질병명	'19	'20	'21	'22	'23	계
돼지유행성설사(PED)	135	45	40	230	83	533

* 출처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

(2) 방역 대책

<예방>

- 청정농장에서 돼지를 구입하여 일정기간 격리 사육 및 관찰
- 농장, 출입차량 소독 등 청결유지, 외부와의 출입통제
- 임신돈에 백신 2회 접종
 - 임신모돈에 매 분만 5~6주전에 1차 예방접종하고 다시 분만 2~3주전에 2차 예방접종
- 분만 후 초유 수유로 모체이행항체 공급
- 모니터링 진단을 통한 유효 백신 공급 지원 및 접종 지도(G1a → G2b)
- PED 질병 발생 진단 모니터링을 통한 청정 농가 보호 조치(오염농가로부터 돼지 이동금지 등)

<발생시>

- 감염 포유자돈은 일괄 도태 및 이환 모돈 격리, 소독
- 감염 분만사와 비감염 분만사 구획 및 별도 관리
- 신생자돈 초유 급여 철저 및 면역제제 투여
- 모돈 예방접종 프로그램 강화
- 자돈은 생후 3주까지 격리 사육
- 올인 올 아웃 사육 방식 권고
- 포도당, 전해질과 물 충분히 공급
- 보온 및 청결 유지

* 방역당국의 조치는 PRRS 조치와 동일

바. 소브루셀라병

(1) 최근 5년간 발생 현황

□ '21년 187건까지 발생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3년 59건 발생(표 3-10)

표 3-10. 최근 5년간 소브루셀라병 발생 현황(발생농장수)

질병명	'19	'20	'21	'22	'23	계
브루셀라병	66	126	187	115	59	553

* 출처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

(2) 방역 대책

□ (1단계) 발생 저감을 위한 방역 조치

- 현행 방역 조치의 철저한 이행으로 발생 경감 유도(표 3-11)
 - (검사) 1세 이상 한·육우 암소, 젖소, 거래소 등에 대해 검사

표 3-11. 브루셀라병 발생 저감을 위한 1단계 방역조치 내용

구 분	검사 대상	검사 주기
정기	• 1세 이상 한·육우 암소	• 연 1회
	• 가축거래상인 사육소, 자연교배 수소	• 연 4회
	• 젖소(집유된 원유)	• 연 6회
거래·출하 시	• 가축시장·농장간 거래소, 도축장 출하 소 * 단, 질병전파 위험성이 낮은 거세우는 제외	• 거래 시마다
발생시	• 발생농장 모든 소(거세우 포함) * 500m 이내 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 포함	•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4회이상 재검사

- (발생시 조치)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 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에 대해 살처분 조치
 - * 다만, 브루셀라병이 3회 이상 반복 발생하거나 사육두수의 1/3 이상이 감염되어 추가 발생이 우려될 경우, 시·도 가축방역 기관장이 시·군에 발생농장 소 전 두수를 도태 처분(도축장 출하)토록 건의할 수 있음
-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4회 이상 재검사(발생후 10일 이내 최초 검사, 30~60일간격 2회 검사, 마지막 발생 6개월후 최종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방역 조치 해제
 - * 이동제한 기간 중 도축장 출하는 가능(검사 음성시), 농장거래 및 신규입식은 금지
- 브루셀라병 양성으로 판정되어 살처분한 소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 거래 시세의 80% 보상
 - * 농가의 귀책사유(신고지연, 소독미실시 등) 발견 시 추가 감액 가능
- 브루셀라병 예찰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농협, 생산자단체를 통해 소브루셀라병에 대한 예방 및 방역요령 교육·홍보
- 살처분 농장 재입식시 감염방지를 위한 재입식요령을 마련·시달

□ (2단계) 발생 최소화

- (예찰 개선) 위험도 기반 브루셀라병 조기 검출 예찰 시스템 구축
 - 위험도 분석을 위한 검사결과 등 데이터 수집 시스템(Agrix) 개선*
 - * 농장별/개체별 검사결과, 개체별 농장간 이동정보 등 데이터 수집 개선

- 위험도 분석을 통한 목적 예찰(targeted surveillance) 대상* 선정
 - * 역학농장 (발생농장 가축 거래 농장, 발생농장 500m 이내 농장), 소규모 농장, 가축거래상인 사육소, 네트워크 분석 결과 슈퍼 전파 농장
 - 고위험 농장 통계 예찰 적정 시료채취 물량 선정*
 - * 고위험 농장 브루셀라병 유병률을 등을 고려한 통계 기반의 예찰 물량 산정
 - 기존 검사체계 평가(민감도, 특이도) 및 지역별 진성 유병률(실제 감염정도) 추정
 -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도태 추진 방안 검토
 - (현행)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에 대해 살처분 조치 ⇒ (개선) 감염 소 살처분 + 발생농장 전두수 도태
 -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 등
 -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철저 이행
 - *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는 소 포함
 -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농식품부고시)” 철저 이행
 - 검진을 앓고 거래하여 발생한 경우 살처분보상비 차등지급
 - 가축과 사람감염 예방수칙 등 홍보·교육(질병관리본부 공조)
- (3단계) 비발생 유지
- 비발생 유지를 위한 소 거래 강화 방안 마련
 - 소 거래시 시군 등 방역당국에 허가를 받도록 제도 개선
 - 검사결과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하지 않는 농가에서만 소 거래 가능토록 추진
 - 도축장 검사 강화로 발생농장 추적 및 집중관리

사. 소 결핵병(TB)

(1) 최근 5년간 발생 현황

- '19년 444건이 발생한 이후 연도별 발생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23년에는 197건 발생(표 3-12)

표 3-12. 최근 5년간 소 결핵병 발생 현황(발생농장 수)

질병명	'19	'20	'21	'22	'23	계
결핵(TB)	444	299	255	228	197	1,423

* 출처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

-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검진·살처분(도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감염시 우군에 급속히 확산되어 근절이 어려움

(2) 방역대책

□ (제1단계) 발생 저감을 위한 방역 조치

- (예찰·검사) 1세 이상 젖소, 거래소 등에 대해 검사 강화(표 3-13)

표 3-13. 소 결핵병 발생 저감을 위한 1단계 방역 조치 내용

구분	검사 대상	검사 주기
정기	•1세 이상 젖소	•연 1회 이상
거래	•가축시장·농장간 거래 소	•거래 시마다
발생	•발생농장 사육 소	•이동제한 해제까지 2회 이상

○ 소 결핵병 근절 대책본부 구성

- 농식품부, 식약처, 방역본부,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등
- 단계적 발생 저감을 위한 방역 대책 수립
- 결핵병 검사기관 및 검사요원 교육 실시

□ (제2단계) 발생 최소화

- 근절정책의 당위성 홍보 : 교육, 언론매체 등
- 검진 강화 : (현재) 농장간 소 거래시 검사 → (개선) 전국 소 주기적 일제 검사
- (예찰) 위험도 기반 결핵병 조기 검출 예찰 시스템 구축
- (검사) 기존 검사체계 평가(민감도, 특이도) 및 지역별 진성 유병률(실제 감염정도) 파악
-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도태 추진 방안 검토
 - (현행) 결핵병에 감염된 소에 대해 살처분 조치 ⇒ (개선) 감염 소 살처분 + 발생농장 전두수 도태

□ (제3단계) 비발생 유지

- 비발생 유지를 위한 소 거래 강화 방안 마련
 - 소 거래시 시군 등 방역당국에 허가를 받도록 제도 개선
 - 검사결과 소 결핵병이 발생하지 않는 농가에서만 소 거래 가능토록 추진
- 도축장 검사 강화로 발병농장 추적 및 집중관리

아.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

(1) 최근 5년간 발생 현황

- '19년부터 '23년까지 매년 발생 중이며, 해당 기간내 총 21건의 발생 확인(표 3-14)

표 3-14. 최근 5년간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발생 현황(발생농장 수)

질병명	'19	'20	'21	'22	'23	계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	4	4	4	7	2	21

* 출처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

(2) 방역대책

- (CWD 관리방안) 결핵 검진사업 실효성 확보를 통한 장기적 CWD 근절 추진
 - 양성·인접 및 친인척농가 등 CWD, 결핵 발생위험도를 고려한 결핵 검진대상 확대
 - 일정 사육규모 이상 농가 정기검사 및 폐육 처리방안 등 검토
 - 차량 출입기록, 사슴 거래내역 보존, 검사증명서 휴대 등 점검을 통한 사슴거래 양성화
 - 살처분 보상금 결핵 확대 및 CWD 삭감을 통한 결핵 검사 참여 유도
- (검사 강화) CWD 발생 축이 식용에 사용되지 않도록 검사 방안 마련
 - CWD 발생 시 해당 농장 및 분양 등 역학관련 농장도 검사 철저
- (신고 체계 구축) 사슴 사육농장 축주에 대한 교육 등 방안 마련
 - 사슴사육농장에서 이상증상이 있거나 폐사된 사슴이 있을 경우 방역당국에 신고 하도록 교육·홍보

자. 낭충봉아부패병

(1) 최근 5년간 발생 현황

- '19년 468건 발생 이후 매년 감소하여 '22년 116건, '23년 65건 발생(표 3-15)

표 3-15. 최근 5년간 낭충봉아부패병 발생 현황(발생농장 수)

질병명	'19	'20	'21	'22	'23	계
낭충봉아부패병	468	165	153	116	65	967

* 출처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

(2) 방역대책

- 양봉농가 대상 임상증상에 따른 조기 신고 독려 및 예방 관리 교육 등을 통하여 감염농장 조기 색출 및 발생군 처리, 소독 등 방역 관리를 통한 발생 저감 추진
-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촉진 등을 통한 양봉 농가 분포 파악 등 질병 관리 체계 마련

■ 발생 최소화 대책 질병 ■

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1) 현황 및 문제점

- 가금 사육 농장 90%이상이 겨울철 철새도래지인 서해안 벨트에 집중되어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많은 발생이 필연적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형되어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변할 경우 우리나라 가금산업의 큰 손실이 예상됨

(2) 대책

- 겨울철 사육제한시 지원을 통해 감염원 축소
- 위험도 평가를 통해 일률적 예방적 살처분을 지양하여 농가 피해 예방
- 가금농장의 자율방역 체계 구축(산란계농가 방역기준 유형부여, 전문관리업종)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방역 추진(중소규모와 대규모 농장에 대한 방역 관리 기준 설정)
- 계열화 사업장 관리메뉴얼 제정

□ 축종별 방역기준 유형부여 확대 등을 통해 농가 스스로 방역을 강화 유도하기 위해
농장관리 기준 마련·시행

㉠ 농장별 전산화

- (농장 위치) 가금 밀집 사육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 방역
- (축사규모) 농장 규모에 따라 SOP를 달리하여 방역대책 추진
- (축사환경) 축사의 시설 및 무허가 축사 여부에 따라 차등 방역
- (사육규모) 사육규모에 따라 방역 완충구역 설정 등 추진
- (사육인원) 축사 및 사육규모에 따라 적정 사육인원 배치 추진
- (방역의식) 축주의 방역의식을 평가, 정부의 역할 정립

㉡ 동물사육 자격증 도입하여 무분별한 밀집 사육 제한

- 축주 방역의지, 무허가 축사 방지, 사육면적 및 사육두수에 따른 적정 사육인원 배치 등

□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 매뉴얼

- 철새가 농장 또는 농장주변에 출몰하여 바이러스 전파 차단
- 오염된 농장에서 사람, 차량, 쥐 등에 의한 수평감염 차단

□ 계열화 사업장과 계열농장간 방역매뉴얼

- 겨울철 사육제한의 범위 등에 대해 관련협회와 협의 추진
- 정부도 살처분 건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살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논의

□ 재발방지 보완대책

- 국내 잔류 또는 유입 병원체 박멸을 위한 소독·예찰 강화
 - 마지막 발생지역과 위험도가 높은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여 집중관리
- 발생농장 분변검사·입식시험, 야생조류 바이러스 검사 철저 추진
- 산란계 농장 모니터링 검사와 임상관찰 생활화 계도
- 전국 종오리 농장 오리 및 도축장 출하 육용오리 혈청 검사 강화

■ 비발생 대책 질병 ■

□ 우리나라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성우역(PPR), 아프리카마역(AHS), 등
가축전염병이 아프리카와 유럽을 거쳐 최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

- 이에 따라 정부,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 상호 협력하여 국내 유입 방지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비 필요
 - (유입방지) 수입위생조건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부터의 가축 수입을 차단하고, 축산 종사자 휴대품 단속·소독 강화 및 홍보
 - (사전대비) 렘피스킨 대응 사례와 같이 사전에 긴급행동지침(SOP) 마련, 농가 대상 방역수칙 교육 및 예찰, 해외 상황 모니터링, 백신 사전 비축 등 추진
 - 발생 시를 대비하여 의심축 신고요령 안내 및 방역기관별 초동조치 체계 구축도 필요

■ 참고문헌

AHA 누리집. 2023. Australia (<https://animalhealthaustralia.com.au/>).

AHA. Strategic Plan 2020-2025.

Animal Health Australia. 2022. Schedule 3 - Categories of emergency animal diseases. Government and livestock industry cost sharing deed. In Respect of emergency animal disease response

APHA. 2018. Notifiable Diseases. A Guide for Official Veterinarians. UK.

AUSVETPLAN. 2023. Animal Health Australia.

Amenu K., K.M. McIntyre, N. Moje, T. Knight-Jones¹, J. Rushton¹ and D. Grace. 2023. Approaches for disease prioritization and decision-making in animal health, 2000-2021: a structured scoping review. *Frontiers in Veterinary Science*. 10:1231711.

Cito F. et al. 2016. Prioritization of Companion Animal Transmissible Diseases for Policy Intervention in Europe. *J. Comp. Path.* 2016, Vol. 155,

DAFF. 2023. National Notifiable Disease List of Terrestrial Animals. Australian Government.

EU. 2016. Eradication, control and monitoring programmes to contain animal diseases. EUROPEAN COURT OF AUDITORS. EU.

FAO. 2021. ANIMAL HEALTH AND PRODUCTION STRATEGY FOR FAO REGIONAL OFFICE FOR EUROPE AND CENTRAL ASIA 2020-2025.

FAO, 2021. Disease prioritization and legal framework.

Kim TY. 2005. Risk Analysis and Efficiency Control Measures On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in the Republic of Korea. *J.Vet.Med. Ser.* 67(8): 743-752.

Kim TY. 2005. Additional Cases of Chronic Wasting Disease in Imported Deer in Korea. J.Vet.Med. Set. 67(8): 753-795.

MAFF. 1953. Government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Act on Domestic Animal Infectious Diseases Control (Government Ordinance No. 235, 1953). Japan.

MAFF. 1953. Ministerial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Act on Domestic Animal Infectious Diseases Control. Japan.

MAFF. 2023. Outline of Measures against Infectious Diseases in Domestic Animals. Japan.

Mark, Schipp. 호주 전 CVO. 호주 가축질병 방역정책(부록).

National Notifiable Disease List of Terrestrial Animals as of April 2019.

OIE. 2014. Guidelines for Animal Disease Control.

OIE study. 2010. Listing and Categorisation of Priority Animal Diseases, including those Transmissible to Humans - Methodological Manual.

RISKSUR. 2013. The evaluation attributes used for evaluating animal health surveillance systems. EC.

Sante D.G. 2022. Listing and categorisation of animal diseases and list of species. EC.

USDA (APHIS). 2020. U.S. National List of Reportable Animal Diseases (NLRAD) System Standards.

USDA (APHIS). 2023. Voluntary 2023 U.S. National Animal Health Reporting System (NAHRS). Reportable Diseases, Infections, and Infestations List.

김재홍, 손영호, 신성호, 최선민. 2022. 조류인플루엔자 예찰·검사 체계 개선방안 연

구 보고서. 주관연구기관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2016. 구제역·AI 방역 선진지 시찰 결과 보고 - 해외(호주·뉴질랜드) 가축방역시스템 실태조사.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동·축산물 수출입 데이터 자료.

농식품부. 2019.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19호, 2019.5.21.)」

농식품부, 2022.10.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점방역관리기구 개편방안 연구.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 2021. 민간전문인력 국가방역예비단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용역연구보고서.

법제처 자료(법령 등 개정사항).

세계농업. 2010. 호주의 동식물 질병 위험관리시스템, 세계농업 124권. KREI. pp 2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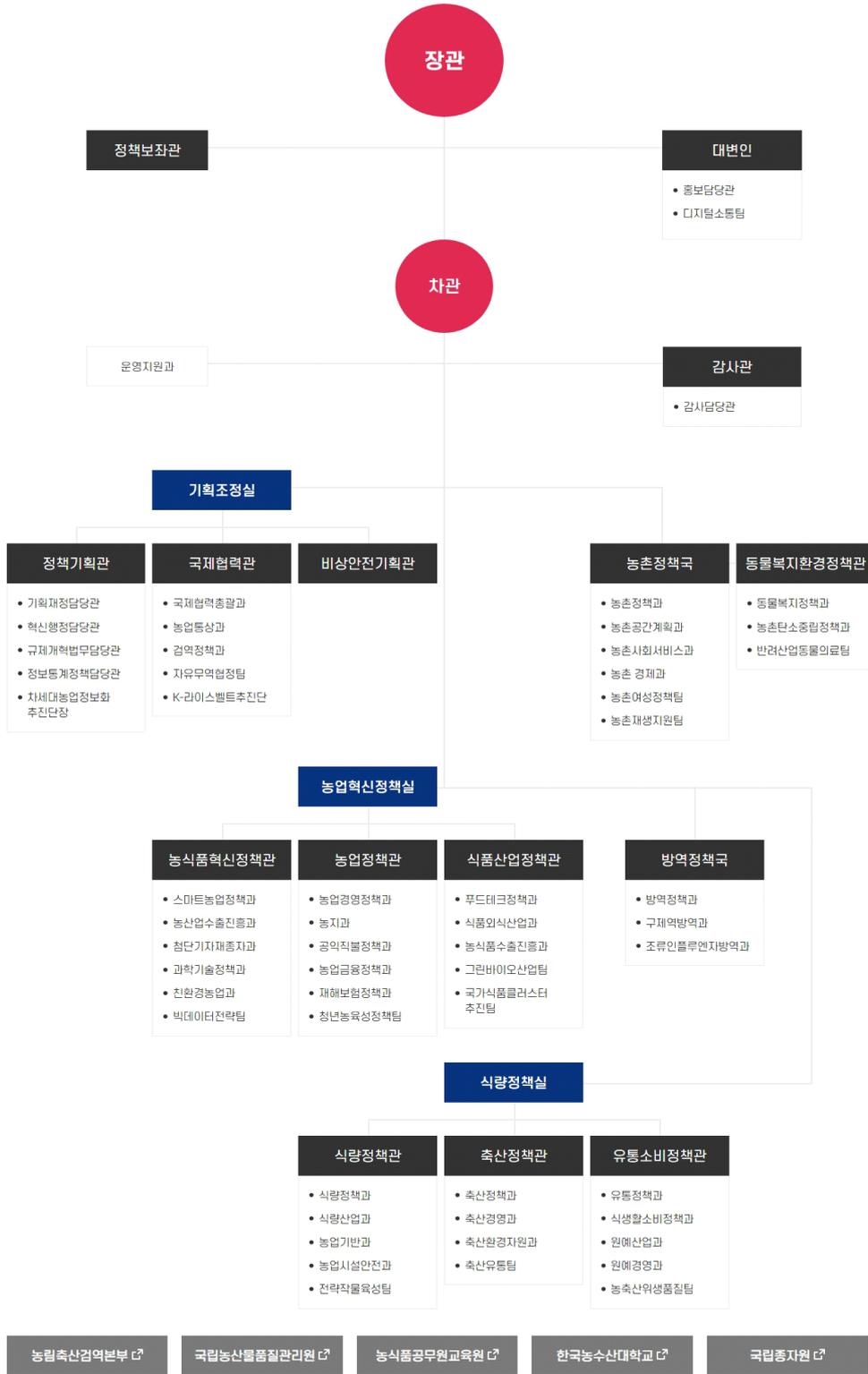
한국사료협회 제공 사료공장 등 데이터 자료.

한국종축개량협회 제공 종축 등 데이터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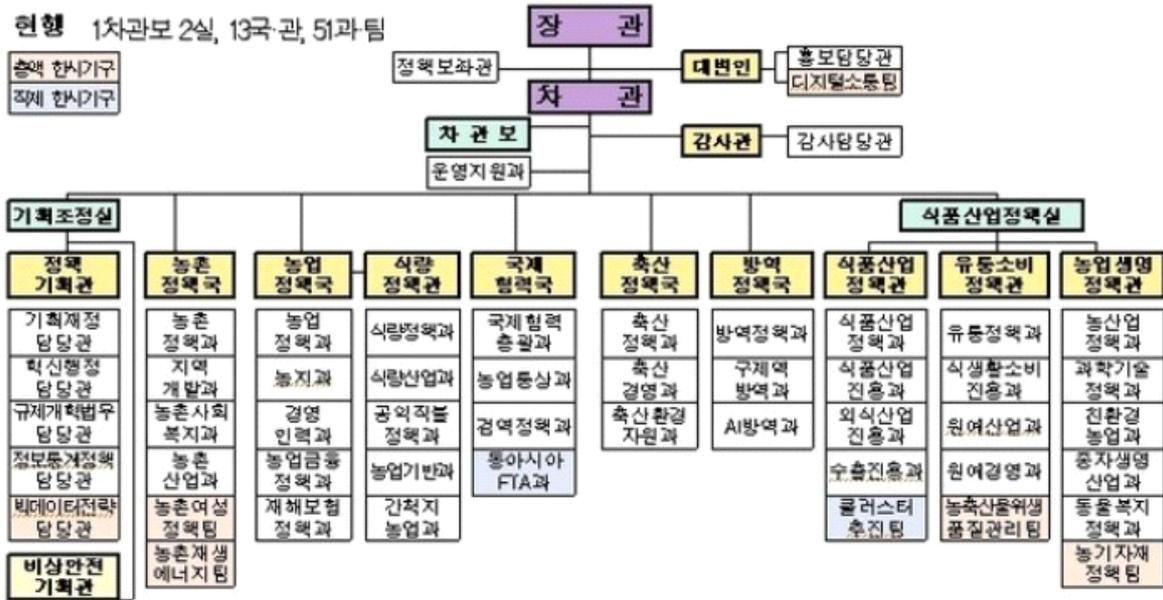
한국종축개량협회, 전국한우협회, 전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제공 설문 답변서.

한국지식산업연구원 2022. 중장기 가축질병 방역시스템 개편 및 R&D 추진전략 고도화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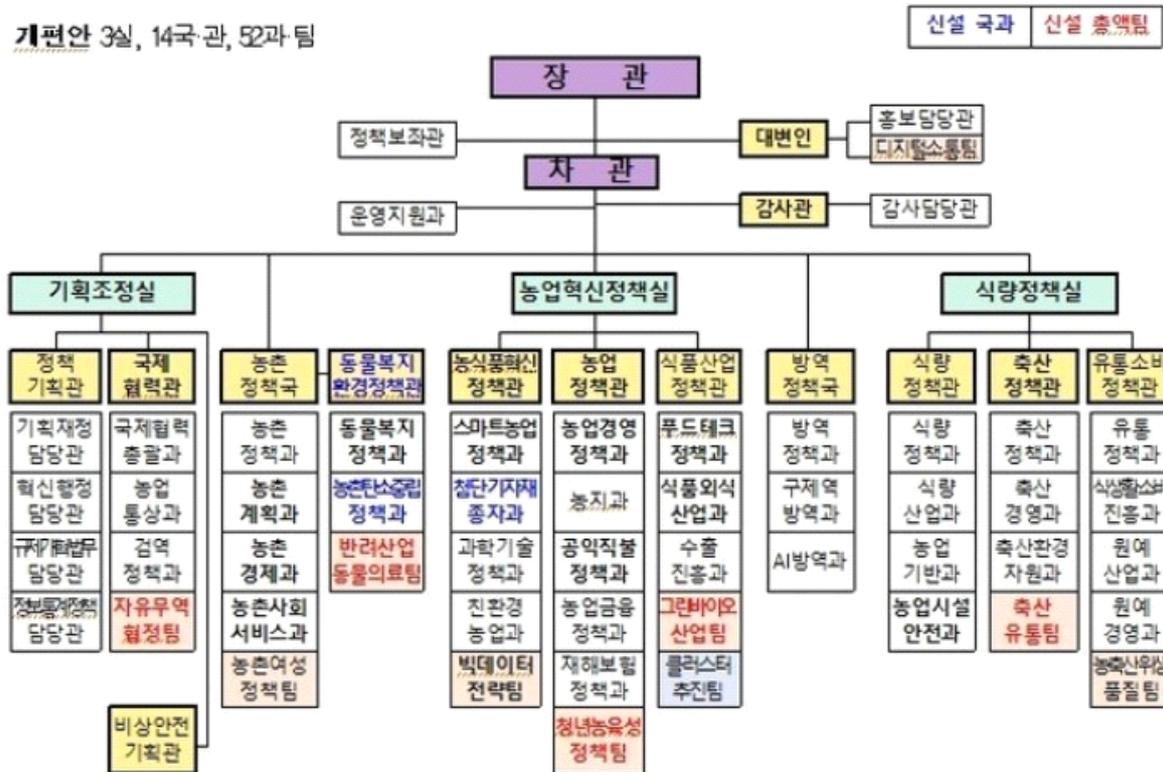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조직도



현행 1차관보 2실, 13국·관, 51과·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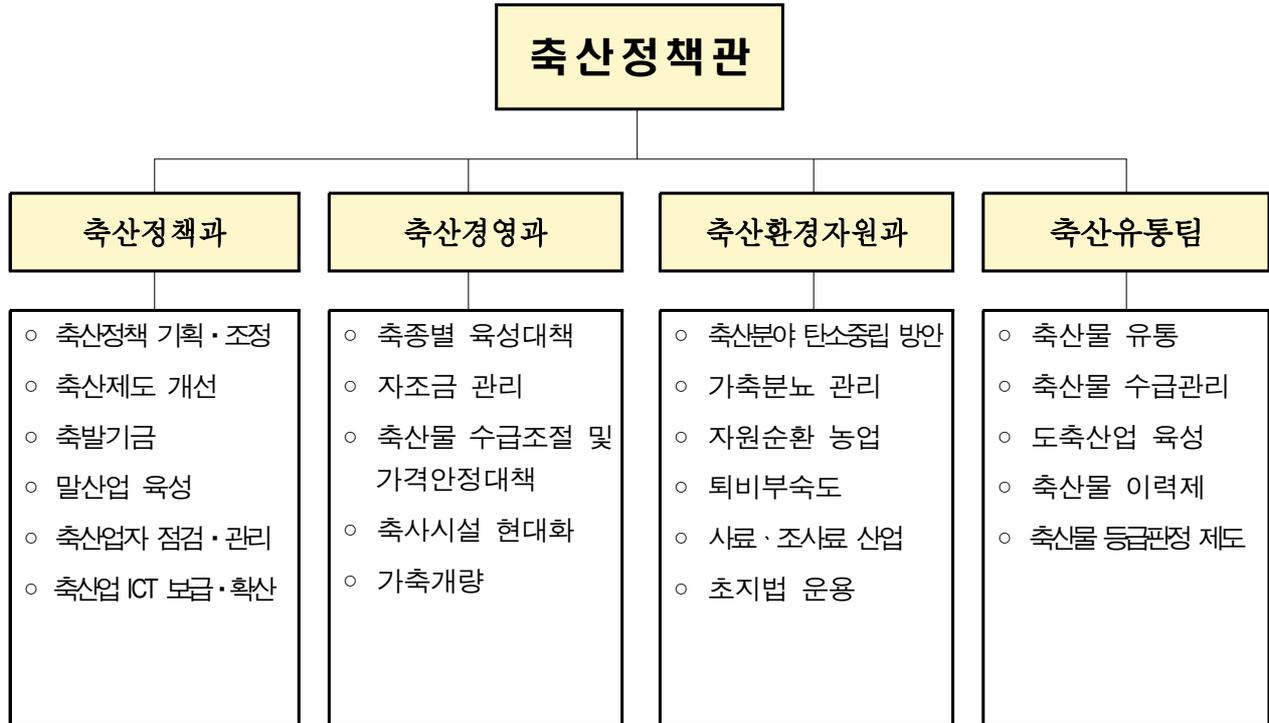
개편안 3실, 14국·관, 52과·팀



<별첨 2>

축산정책관 조직도

가. 조직 및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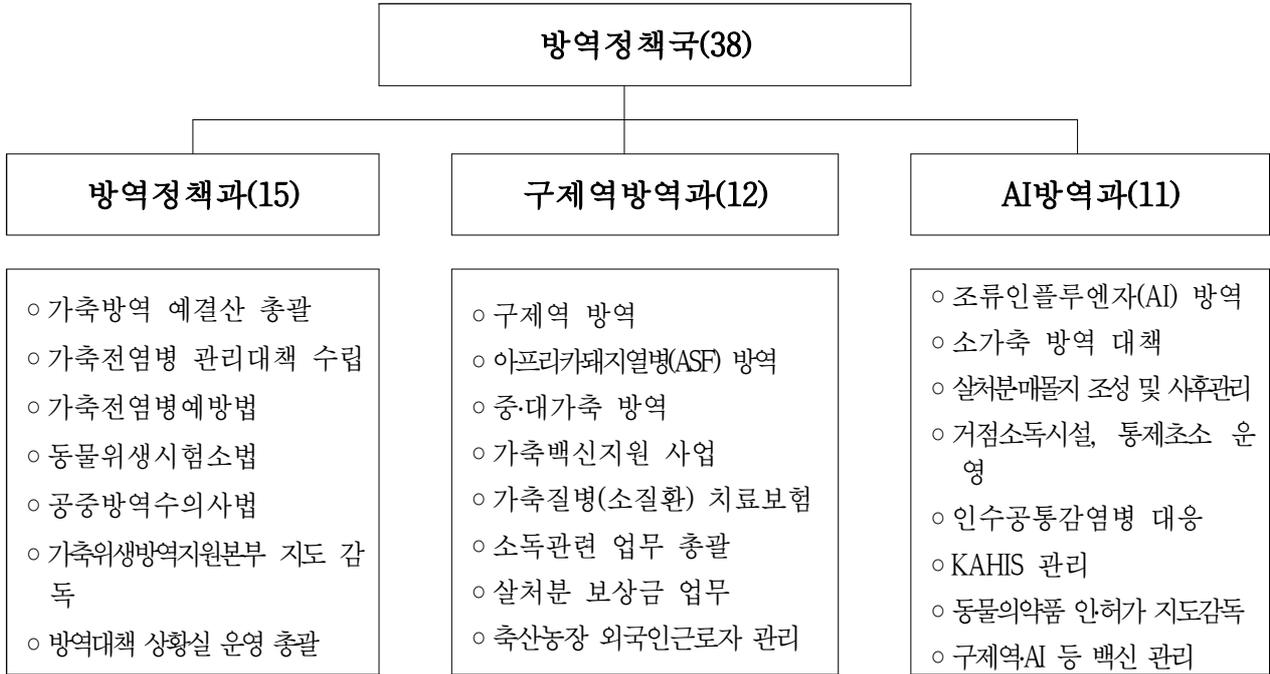
나. 정·현원

구 분	계	고위공무원	3·4~4급	4·5~5급	6~8급
계	49	1	3	24	21
축 산 정 책 과	15	1	1	6	7
축 산 경 영 과	13	-	1	7	5
축 산 환 경 자 원 과	14	-	1	7	6
축 산 유통 팀	7	-	-	4	3

<별첨 3>

방역정책국 조직도

1. 조직 및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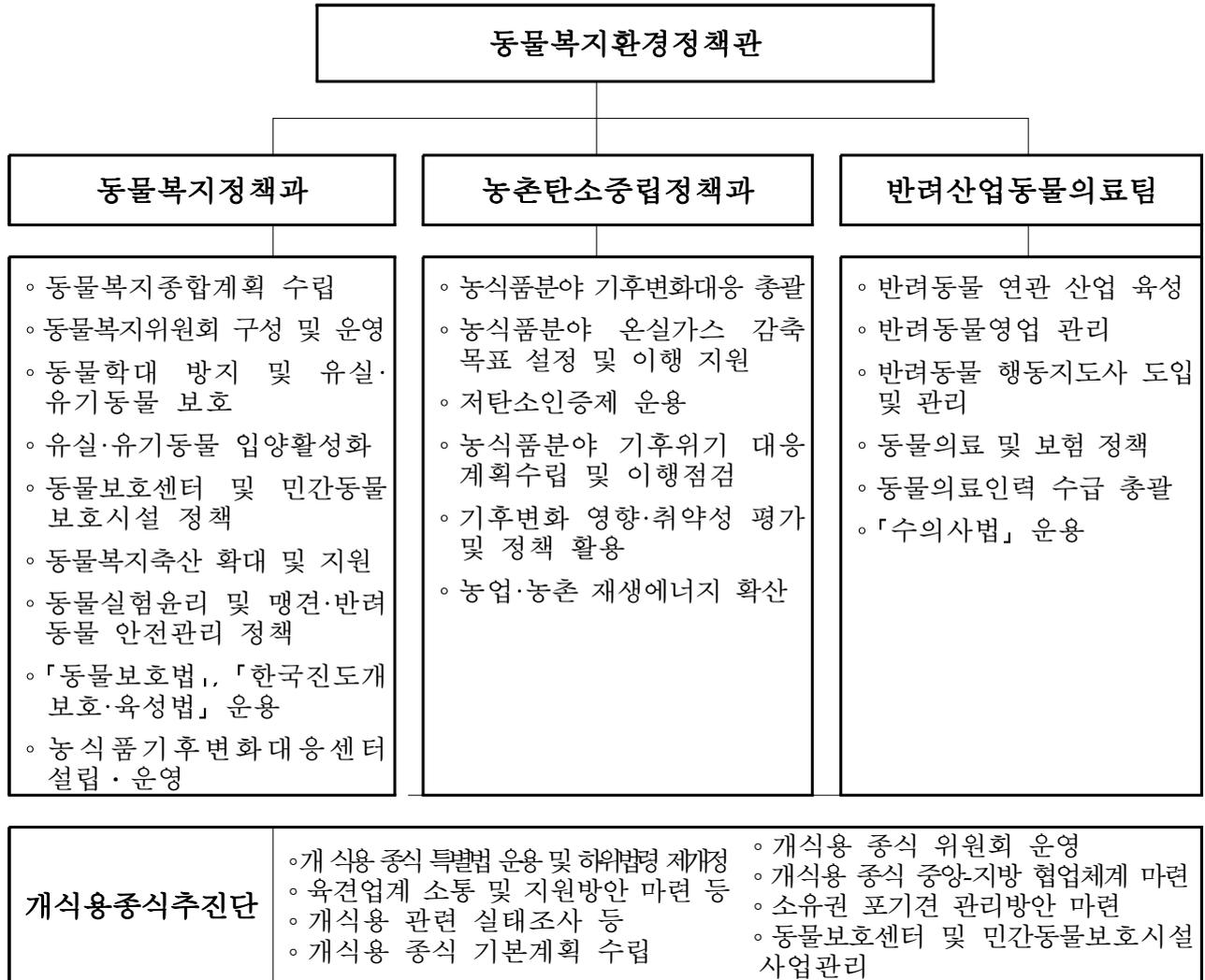
2.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고위공무원	3·4~4급	4·5~5급	6~8급
계	38	1	3	15	19
방역정책과	15	1	1	5	8
구제역방역과	12	-	1	5	6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11	-	1	5	5

<별첨 4>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조직도

가. 조직



나. 정원

(단위 : 명)

구 분	계	고위공무원	3·4~4급	4·5~5급	6~8급
계	44	1	3	18	20
동물복지정책과	12	1	1	4	6
농촌탄소중립정책과	11	-	1	4	6
반려산업동물의료팀	9	-	-	6	3
개식용종식추진단	12	-	1	5	6

<별첨 5>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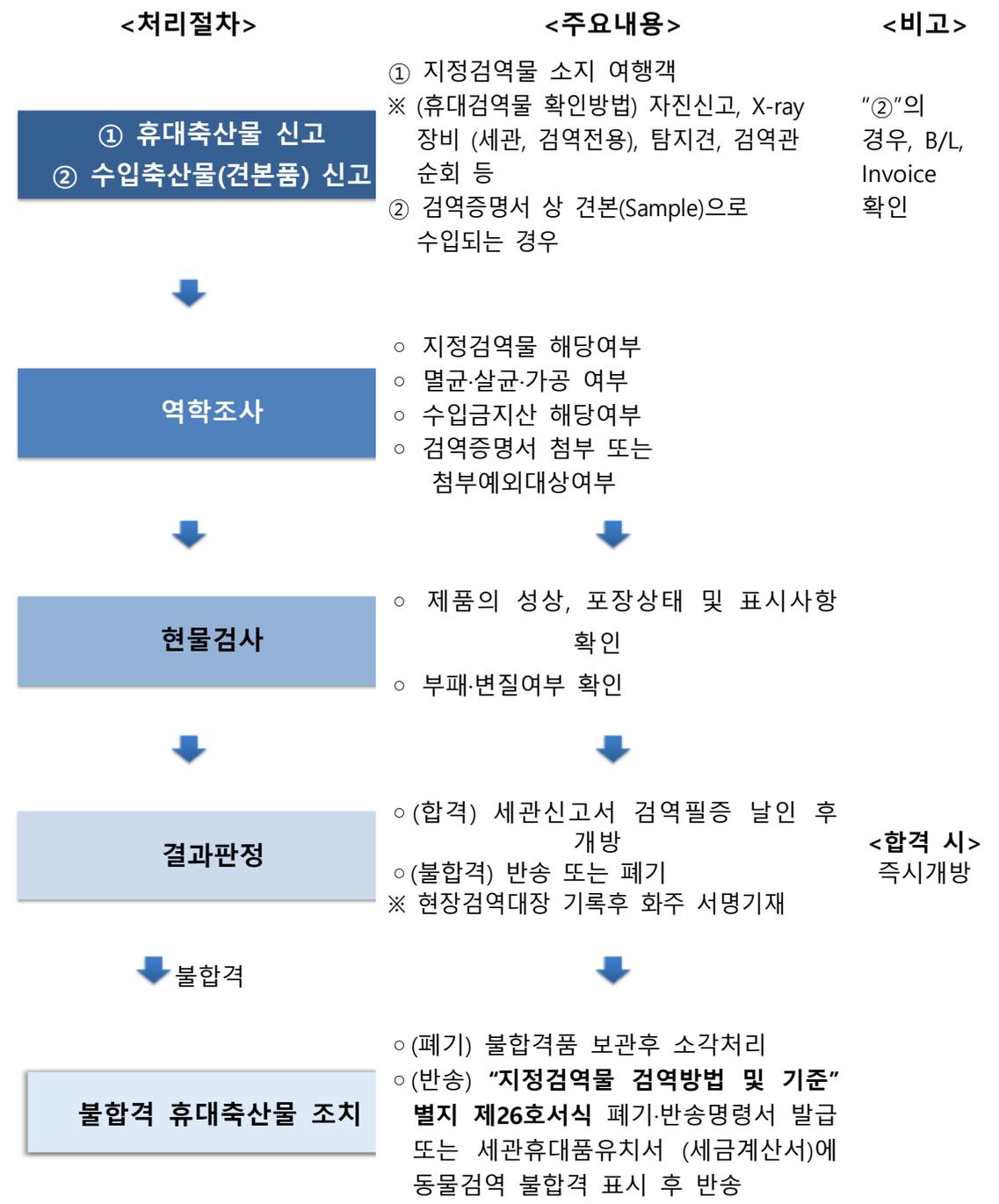
<별첨 6>

수입 동·축산물 검역절차



참고

공 · 향만 입국장 현장 검역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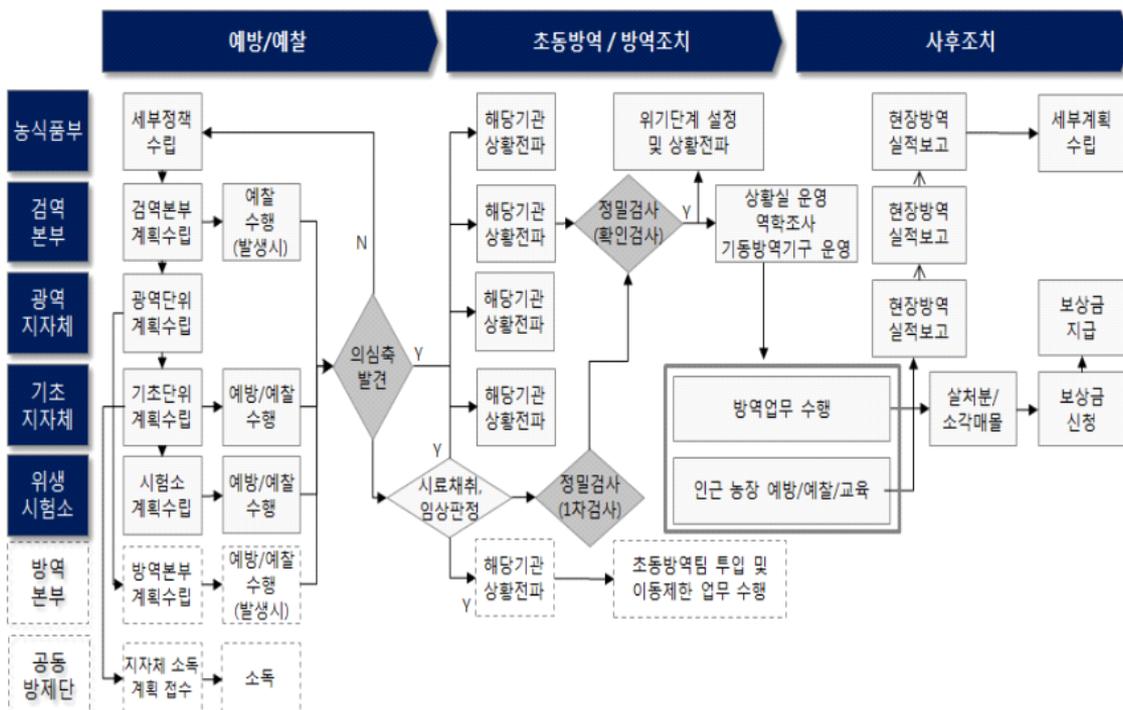
<별첨 7>

가축방역 기관별 주요업무 및 방역업무 프로세스

□ 방역기관별 주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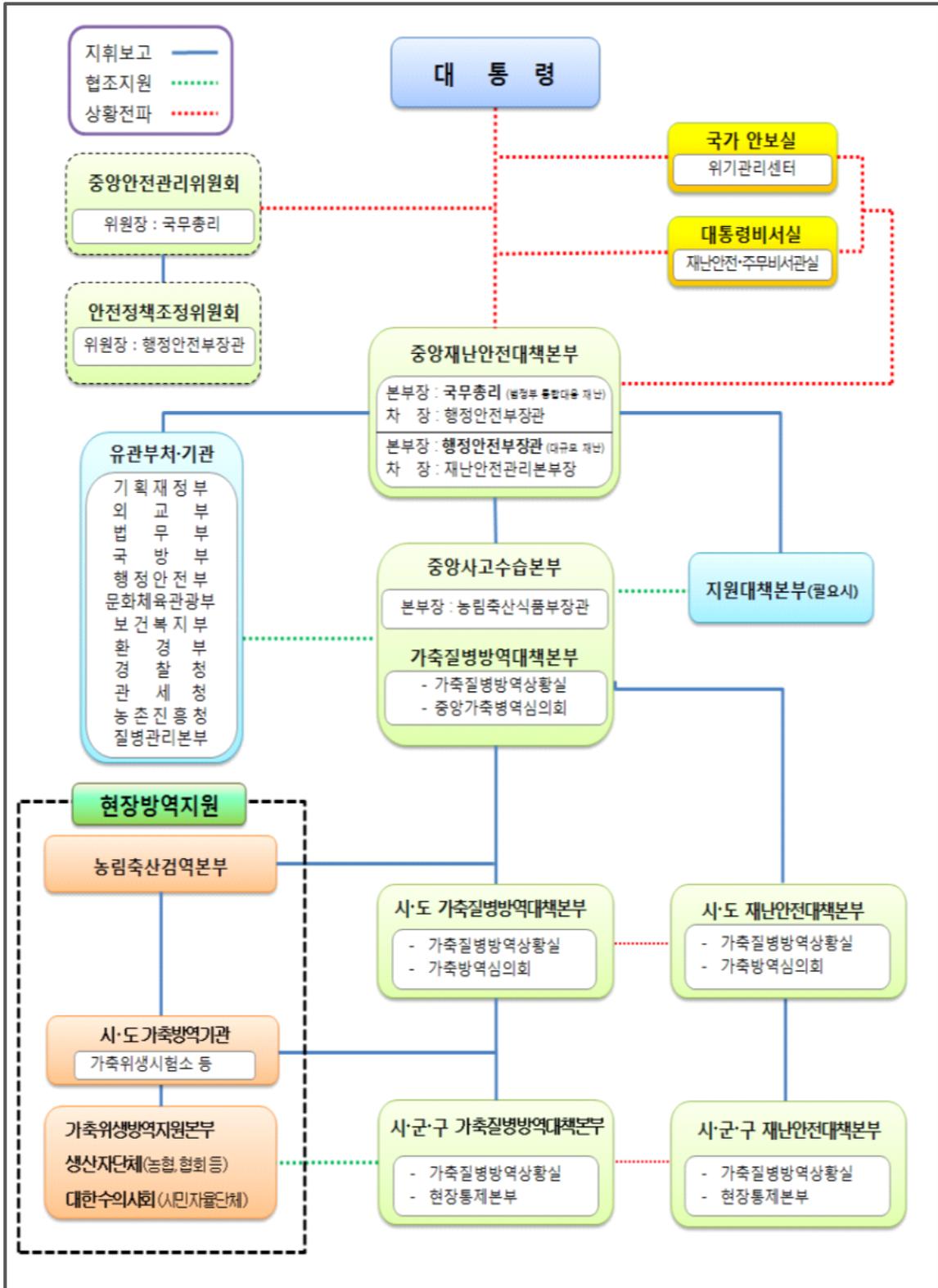
관련기관	예방예찰	초동방역	방역조치	사후관리
농식품부	정책지원	방역관 파견 및 지휘	방역관 파견 및 지휘	정책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예찰 기술교육	시,구제역의 시료검사	방역관 파견 및 자문제공	필요시 지원
지방자치단체	예방·예찰 총괄	초동방역·방역 업무의 최종 책임과 권한 보유		매몰지관리 보상금 등 지급
동물위생시험소	예방·예찰 검사	시료검사	임상예찰 및 현장방역	예방·예찰 검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료채취·예찰 농가정보확인	초동방역 이동통제	초동방역 이동통제	필요시 지원
농협중앙회	백신공급·소독	백신공급·소독	백신공급·소독	필요시 지원

□ 방역업무 단계별 프로세스



참고

가축질병(사회재난) 위기관리 종합체계도



<별첨 8>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
(WOAH 주간보고, 발생일 기준)

□ 렘피스킨병

구분	계(건수)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2023.11월	69	47	11	11	0	0
2022	76	60	0	16	0	0
2021	1,363	1,300	2	61	0	0

□ 구제역

구분	계(건수)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2023.11월	108	64	38	6	0	0
2022	739	352	358	29	0	0
2021	2,211	1,857	309	45	0	0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사육)

구분	계(건수)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2023.11월	1,108	175	155	478	300	0
2022	3,383	408	191	2,243	541	0
2021	2,714	423	433	1,858	0	0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야생)

구분	계(건수)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2023.11월	3,832	160	47	2,910	715	0
2022	3,958	264	29	2,945	720	0
2021	2,436	70	91	2,263	12	0

□ 아프리카돼지열병

구분	계(건수)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2023.11월	8,136	150	71	7,915	0	0
2022	6,022	592	84	5,293	53	0
2021	10,468	257	203	9,715	293	0

<별첨 9>

인적·물적 교류 현황

□ 출입국자 현황

(단위 : 명)

區分 \ 年度	2018	2019	2020	2021	2022
總計	88,908,420	93,547,804	14,701,831	4,559,693	19,405,228
出國	44,363,675	46,777,675	7,172,408	2,317,328	9,715,198
入國	44,544,745	46,770,129	7,529,423	2,242,365	9,690,030

주) '19 이전에는 매년 5% 증가, 2020년부터 COVID-19로 70% 급감

□ 동물·축산물 검역물량 추이

(단위 : 건, 천마리 또는 톤)

연도	동물				축산물				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건	물량
	건	물량	건	물량	건	물량	건	물량		
1990	1,283	109	1,442	936	2,670	44,529	26,509	714,666	31,904	760,240
1999	2,280	287	2,506	959	16,175	185,080	55,342	995,583	76,303	1,181,909
2000	3,120	243	3,804	577	8,701	107,039	63,532	1,034,580	79,157	1,142,439
2020	14,189	90	10,448	1,243	24,396	298,043	152,216	2,810,849	201,249	3,110,225
2021	20,293	116	10,541	1,149	26,648	353,928	165,440	2,889,772	222,922	3,244,965
2022	21,869	105	11,967	860	26,764	390,804	184,940	3,223,874	245,540	3,615,643

- 주) ○ 검역건수 : '90년도 기준으로 '00년도 2.5배, '03년도 3.5배 증가
 ○ 검역물량 : '90년도 기준으로 '00년 1.5배, '03년도 2.4배 증가
 ○ 축산물 수입건별 : 매년 평균 10% 증가(2020→2022)
 ○ 축산물 수입물량 : 매년 평균 6% 증가(2020→2022)
 ○ 동물 수입건별 : 12% 증가(2021→2022)
 ○ 동물 수입물량 : -33% 감소(2021→2022)

*자료제공 : 농림축산검역본부

<별첨 10>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점검요령(제5조제1항관련)

1. 소독설비대상별 소독실시기준

소독설비대상	설치기준		소독실시기준
	공통기준	개별기준	
가축사육시설 (300㎡이상)	○차량 출입구에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300 ~ 1000㎡ 가축사육시설은 출입구 전용 이동식 고압분무기 설치로 대체 가능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고압분무기	○차량·사람 출입구 소독조 -1000㎡이상 가축사육시설은 사람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 ○관리사무실·사료창고·축사출입구 소독조	주1회 이상 시설·장소 소독(300㎡미만 가축사육시설 포함) 계류장·작업실등 도축작업과 직접 연관되는 장소는 매일 청소·소독 실시
도축장		○가축·식육 운반차량 세척·소독시설 ○소독약 보관용기·연결과이프의 동파방지장치(전기열선장치) ○외부인 출입구 소독조 ○가금류 수송용기 세척·소독시설(가금류도축장에 한함)	주1회 이상 시설·장소 소독
집유장		○원유수송차량 세척·소독시설 혹은 고압분무기(2대이상) ○외부인 출입구 소독조	주1회 이상 시설·장소 소독
사료공장		○사료수송차량 세척·소독시설 혹은 고압분무기(2대이상) ○외부인 출입구 소독조	주1회 이상 시설·장소 소독
가축시장		○출입자 소독조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	가축집합 전·후 시설 소독
가축검정기관		○출입자 소독조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	가축집합 전·후 시설 소독
종축장		○차량·사람 출입구 소독조 ○출입자 옷 세척·소독을 위한 탈의실·샤워장·소독실 ○관리사무실·사료창고·축사출입구 소독조 ○시설소독을 위한 고압분무기(2대이상)	주1회 이상 시설·장소 소독
부화장		○출입자 소독조 ○부화용 알 및 난좌 소독시설 ○부화실·병아리방 출입구 소독조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	알 부화 전·후 소독
축분비료공장		○가축분뇨·축분비료 수송차량 세척·소독시설 혹은 고압분무기(2대이상) ○출입자 소독조	주1회 이상 시설·장소 소독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분뇨 운반차량			가축사육시설 등 출입시 차량 소독

<비 고> 소독실시 공통기준 : 소독설비대상별 소독실시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각 시설은 출입자 및 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한 소독 실시

2. 소독점검대상 및 점검요령

점검대상	점검범위		점검주체	점검요령
가축사육시설	소	사육규모 50두 이상	시장·군수	점검대상 사육시설을 분기별로 균분하여 연간 1회 이상 점검
	돼지	사육규모 1,000두 이상		
	닭	사육규모 20,000수 이상		
도축장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장		시장·군수	분기별 1회 이상 전 도축장 점검
집유장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집유장		시장·군수	분기별 1회 이상 전 집유장 점검
사료공장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체		시장·군수	분기별 1회 이상 전 사료공장 점검
가축시장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		시장·군수	분기별 1회 이상 전 가축시장 점검
가축검정기관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검정기관		중축검정기관	분기별 1회 이상 자체점검 실시
종축장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종축장		시장·군수	분기별 1회 이상 전 종축장 점검
부화장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부화장		시장·군수	분기별 1회 이상 전 부화장 점검
축분비료공장	비료관리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부산물비료 생산시설		시장·군수	분기별 1회 이상 전 축분비료공장 점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분뇨 운반차량	도축장·집유장·사료공장·축분비료공장 등이 운영하는 해당 목적의 차량		시장·군수	도축장·집유장·사료공장·축분비료공장 등 점검시 해당 시설별 관련차량 점검

<비 고> 상기 점검대상 이외에 점검이 필요한 시설·차량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가축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점검 실시

<별첨 11>

가축질병관리수준등급부여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적용대상 가축 : 소·돼지·닭

나. 적용대상 질병

1) 중점관리대상 질병

구분	대 상 질 병	
	제1종가축전염병	제2종가축전염병
소	구제역	탄저·기종저·브루셀라병·결핵병
돼지	구제역·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돼지유행성설사
닭	뉴캐슬(Newcastle)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추백리·가금티프스·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2) 예방접종대상 질병

구분	대 상 질 병
소	구제역·탄저·기종저·소아까바네(Akabane)병·소전염성비기관염
돼지	구제역·돼지열병·돼지오제스키병·돼지전염성위장염
닭	뉴캐슬병·닭전염성기관지염·닭전염성에프(F)낭병

다. 적용대상 농장은 가축종류별 가축사육시설 단위로 한다.

2. 등급기준

가. 배점기준

1)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기간

가) 제1종가축전염병

구 분	배 점 표					
	20점	16점	12점	8점	5점	0점
마지막 발생일 기준	5년경과	3년경과	2년경과	1년경과	6월경과	6월이하

나) 제2종가축전염병

구 분	배 점 표			
	10점	8점	5점	0점
마지막 발생일 기준	2년경과	1년경과	6월경과	6월이하

2) 예방접종율

구분	배 점 표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평균접종율	95% 이상	80% 이상 95% 미만	65% 이상 80% 미만	50% 이상 65% 미만	50% 미만

※ 비 고

- ① 예방접종율의 확인은 가축의 종류별 사육형태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 혈청검사 결과에 따른다.
- ② 예방접종 대상질병 중 해당 지역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질병의 접종율을 100%로 계산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③ 예방접종 대상질병 중 둘 이상의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3) 방역 및 위생관리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 소독 설비	가. 농장입구에 차량 소독시설 설치	4개 모두 적합	10
	나. 농장입구에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 설치	3개 적합	8
	다. 농장 내 분무용 소독시설 설치	2개 적합	6
	라. 농장외부와의 차단을 위한 담장·울타리 등 시설 설치	1개 적합	4
		모두 부적합	0
2. 소독 실시	가. 1년 이상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	4개 모두 적합	10
	나. 주 1회 이상 가축사육시설 소독 실시	3개 적합	8
	다. 소독약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소독약품은 제외한다) 구입·사용	2개 적합	6
	라.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소독 실시	1개 적합	4
		모두 부적합	0
3. 환경·위 생관리	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위탁처리를 포함한다)	4개 모두 적합	10
	나. 사체 처리용도의 소각로 설치(위탁처리를 포함한다)	3개 적합	8
	다. 병든 가축의 격리시설 설치	2개 적합	6
	라. 쥐·곤충 등을 없애는 시설 설치	1개 적합	4
		모두 부적합	0
4. 가축의 거래 기록 유지	가. 새로 구입한 가축의 기록 보관(1년 이상이어야 한다)	2개 모두 적합	10
	나. 출하 또는 판매한 가축의 기록 보관(1년 이상이어야 한다)	1개 적합	5
		모두 부적합	0
5. 방역 교육 등	가. 최근 1년간 축산관련단체의 방역교육 참석	2개 모두 적합	5
	나. 최근 1년간 고용된 자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	1개 적합	3
		모두 부적합	0

나. 등급판정기준

1) 종축장이 아닌 농장의 경우

- 가) 1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0점 이상인 농장으로서 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 나) 2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0점 이상인 농장으로서 총점이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 다) 3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15점 이상인 농장으로서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또는 배점기준(1)의 점수가 15점 미만인 경우
- 라) 4등급: 1등급 내지 3등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농장

2) 종축장인 농장의 경우

- 가) 1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5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 나) 2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5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 다) 3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0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 라) 4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0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 마) 5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15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또는 배점기준(1)의 점수가 15점 미만인 경우

3) 마을단위

- 가) 1등급: 마을의 농장 중 2등급 이상인 농장이 전체농장수의 90% 이상인 경우
- 나) 2등급: 마을의 농장 중 2등급 이상인 농장이 전체농장수의 80% 이상 90% 미만인 경우
- 다) 3등급: 마을의 농장 중 2등급 이상인 농장이 전체농장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라) 4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마을

3. 가축질병관리등급 기준의 부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가축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다.

<별첨 12>

시·도별 돼지사육 통계

시·도	2022		2021		2020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서울특별시	-	-	-	-	-	-
부산광역시	9	4,125	10	3,980	10	4,828
대구광역시	49	117,113	49	119,725	48	110,642
인천광역시	14	26,796	13	9,856	3	3,899
광주광역시	7	8,764	7	9,010	7	9,830
대전광역시	3	1,092	2	1,090	2	980
울산광역시	17	30,265	18	23,258	22	31,174
세종특별자치시	53	95,249	52	95,165	54	99,497
경기도	1,065	2,064,192	1,053	1,970,615	1,028	1,867,698
강원도	195	517,297	201	529,540	212	523,147
충청북도	301	642,908	301	638,621	317	640,078
충청남도	1,076	2,474,289	1,102	2,468,254	1,147	2,434,174
전라북도	658	1,371,394	682	1,410,826	709	1,397,502
전라남도	498	1,320,007	514	1,331,525	533	1,302,096
경상북도	617	1,397,832	625	1,406,976	651	1,389,088
경상남도	583	1,292,069	585	1,278,751	596	1,247,375
제주도	246	537,550	254	543,177	260	537,325
계	5,391	11,900,942	5,468	11,840,369	5,599	11,599,333

*자료제공 : 농림축산검역본부

<별첨 13>

인수공통전염병 분류

1. 바이러스성

구분	질병명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WOAH	WHO	비고
1	리프트게곡열	1종		○	○	
2	수포성구내염	1종		○		
3	뉴캐슬병	1종		○		
4	말뇌염	2종		○		
5	광견병	2종		○	○	
6	웨스트나일열	2종		○		
7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1종	○	○	○	
8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종	○	○	○	
9	돼지인플루엔자		○	○	○	
10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	○	
11	니파바이러스			○		
12	헨드라바이러스			○		
13	필로바이러스			○	○	
14	비인간 영장류 모빌리바이러스			○		
15	치쿤쿠니아열				○	
16	플라비바이러스			○		
17	일본뇌염	2종	○	○	○	
18	뎡기열				○	
19	황열				○	
20	지카바이러스				○	
21	도약병					
22	중동호흡기증후군				○	
2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	
24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25	아레나바이러스				○	
26	라싸열				○	
27	신증후군출혈열				○	
28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2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			
30	A형 간염					
31	C형 간염					
32	E형 간염					
33	림프구성 맥락수막염					
34	원숭이두창					
35	우두					
36	전염성농창					
계	36종	9	6	16	17	

2. 세균성

구분	질병명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WOAH	WHO	비고
1	탄저	2종	○	○	○	
2	브루셀라병	2종	○	○	○	
3	결핵병	2종	○	○	○	
4	조류결핵			○		
5	Q열	2종	○	○		
6	비저	2종		○		
7	유비저			○		
8	렙토스피라병	3종		○	○	
9	파상풍			○		
10	야토병			○		
11	암양의 전염성 유산			○		
12	조류클라미디아증			○		
13	캠필로박터감염증			○	○	
14	리스테리아증			○		
15	살모넬라감염증			○	○	
16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	○	
17	보툴리즘			○		
18	흑사병			○		
19	연쇄상구균감염증				○	
20	세균성이질					
21	한센병					
22	발진티푸스					
23	로키산홍반열					
24	발진열					
25	쯔쯔가무시병					
26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증					
27	라임병					
28	고양이 할킴병, 묘소병					
29	취물림병					
30	인수공통성 디프테리아					
31	엡실론독소					
32	포도상구균장내독소B					
33	에트리히증					
34	파스튜렐라증					
35	돼지단독	3종				
계	35종	7	5	18	8	

3. 진균성

구분	질병명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WOAH	WHO	비고
1	백선					
2	크립토크쿠스증					
3	스포로트릭스증					
4	히스토플라스마증					
계	4종	-	-	-	-	

4. 원충성

구분	질병명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WOAH	WHO	비고
1	바베시아병	2종		○		
2	톡소플라즈마병			○		
3	트리파노소마병			○		
4	샤가스병				○	
5	리슈만편모충증			○	○	
6	와포자충			○		
7	편모충증					
8	근육포자충증					
계	8종	1		5	2	

4. 기생충성

구분	질병명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WOAH	WHO	비고
1	포충증(낭충증)			○	○	
2	낭미충증					
3	거대간질			○	○	
4	거대간흡충			○	○	
5	선모충증			○		
6	개회충, 고양이 회충					
7	너구리회충			○		
8	구충증					
9	편충증					
10	나사구더기증(신·구세계)			○		
11	웜			○		
계	11종			7	3	

5. 프리온

구분	질병명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WOAH	WHO	비고
1	소해면상뇌증	2종	○	○	○	
계	1종	1	1	1	1	

<별첨 14>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1.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가. 구제역·돼지열병·아프리카돼지열병·소해면상뇌증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신고자. 다만,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공무원(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행위자를 신고한 자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돼지열병·뉴캐슬병 예방접종명령 위반자
- (2) 법 제17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 등의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3)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법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자
-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 위반자 및 이에 협조한 가축운송업자·도축장영업자 등

2. 신고유형별 포상금 지급금액 및 기준

지급대상	신고포상금	확인방법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의심축을 신고한 자	500만원	검역본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50만원	임상소견상 의심되어 검역본부장이 정밀검사 실시(정밀검사 결과 : 음성)
돼지열병 발생을 신고한 자	50만원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소해면상뇌증 임상의심축을 신고한 자	100만원	검역본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30만원	임상소견상 의심되어 검역본부장이 정밀검사 실시(정밀검사 결과 : 음성)
돼지열병 또는 뉴캐슬병 예방접종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3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브루셀라병 검사 또는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3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가축사육시설·도축장 등의 소독관련 규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2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자,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자,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자를 신고한 자	2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부과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2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부과

3.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가. 가축전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자의 해당 가축 또는 시설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한다.

- (1) 시장·군수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시 위반자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조치사항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2)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시 신고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번호, 신고일자, 신고유형, 조치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직무 관련 공무원' 포함 여부 등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배정한 신고포상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 시·도지사는 동일한 대상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초 신고한 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시·도지사는 1인당 신고포상금이 월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역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임상 의심축을 신고하여 검역본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결과 양성인 경우는 신고포상금이 월간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시·도지사는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할 수 있다.

-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 가축방역부서의 방역정책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본부 축산관련부서 팀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본부장, 대한수의사회 시·도지회장, 생산자단체 시·도지부장,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 시·도지사는 신고포상금 지급 시 지급 건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급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별첨 15>

방역추진 체계의 정비(제도개선 사항, SOP 제정 등)

2. 방역추진 체계의 정비(제도개선 사항, SOP제정 등)

가. 방역제도 개선사항

- (1)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02.12.26 전부개정, ' 05.3.31, ' 07.8.3, ' 08.9.11, ' 10.1.25, ' 10.4.12, ' 11.1.24, ' 11.7.25, '12.2.22, ' 13.8.13, ' 14.10.15, ' 15.6.22, ' 16.12.2, ' 17.3.21, '17.10.31, ' 18.12.31, ' 19.1.15, ' 19.8.27, ' 19.12.10, ' 20.2.4, ' 21.4.13, ' 21.11.30, ' 23.9.14)

□ '02년 법, '03년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예방단계

- 휴대 검역물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규정 신설** 및 검역관의 휴대품 검사 권한 확대 등
 - 미신고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범칙금 납부조치(미 납부시 현행과 같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강화 규정 신설
 - “외국인 농업연수생관리지침”에 의한 특별관리
- **소독설비·실시대상 확대**, 소독설비 과태료 상향조정(300→500만원)
 - 농가 → 집유장·사료공장·종축장·부화장·축분비료공장 소독설비 및 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차량 소독 의무화 조치
-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축전염병관리대책 수립·추진 의무화**(시상 평가 반영)
- 농가에게 가축거래기록 작성·보존의무 부여 및 도축 신청시 거래기록 사본제출 의무화 규정 신설
- 농장 또는 마을단위 방역위생 평가기준 및 농가 방역교육 규정 신설
 - 축산단체 등의 **농가 방역교육** 실시

㉡ 발생단계

- 발생농장 신고자 신원 보호(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신원 비공개) 규정 신설
- 역학조사 대상 확대 강화(1종 전염병에서 2종도 포함)
 - 보상금·농장폐쇄·생계안정비 기준 반영
 -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 벌금조치
- 전염병 발생신고 지연 등 **방역조치 위반농가에 대한 처분강화**

- 발생신고 지연농가 : 사육제한·농장폐쇄 및 보상금 차등지급
-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 근거 마련
 -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반영, 발생농장과 인접농장 보상 차등기준 추가
 - 살처분 이행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지원 규정 마련**
- 전염병 발생지역 방역대상 확대
 - 발생농장 관련 사람과 타지역 차량·사람에 대한 출입통제 및 소독조치 추가
- 가축사체의 소각·매몰·재활용시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 이행

㉔ 종식단계

- 전염병병원체 관리 근거 마련
 - 병원체 분리시 검역원 신고 의무부여, 대학·연구소 집중 관리
- 병성감정·혈청검사 강화
 - 민간병성감정기관 지정·운영 고시 근거 마련(연간 정규사업 반영)
- 농가교육·홍보 강화
 - 농업연수부, 지방교육원 등 정규교육과정 반영
- 방역조치별 경제성분석 실시 정례화
 - 예방접종·수매·살처분·오염물 소각 등 비용 분석, 정책 반영

□ 그 이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내용(최신 시행일 순)

< '23.9.14 개정 >

-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21.11.30 개정 >

-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조작 또는 사육 및 보관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을 지정할 수 있음.

< '21.4.13 개정 >

- 정부의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등 가축의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축산법」에 따른 허가대상 이하의 소규모 농가(가축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야생조류 등 가축 전염병 특정매개체가 많은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와 같은 위험지역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19.12.10 개정>

-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가축전염병이 여행자, 승무원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역항과 공항 등의 시설관리자 또는 선박·항공기 등의 운송수단 운영자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의 방문자 유의사항, 여행자휴대품 신고의무 등에 대한 안내·교육을 시설 이용자, 승무원 및 승객에게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19.8.27 개정>

- 닭, 오리 등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하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5조의2 신설).
- 가축전염병의 임상검사 또는 간이진단키트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는 경우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 '20.2.4 개정>

-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등을 미리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제1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게 하도록 함(제17조제8항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2항 신설, 제49조제1항).

< '18.12.31 개정>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절차를 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위생관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소독 및 방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2조제8호,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산관계자 주소, 축산 관련 시설의 소재지 및 가축과 그 생산물의 이동 현황 등에 대하여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3제3항 신설).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장 점검사항에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여부를 추가함(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에 정액 등 처리업자를 추가함(제17조제1항제4호).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조사를 하고, 기준치 초과 시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 신설).
-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함(제48조제1항제3호).
-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제55조의2제1호 신설, 현행 제56조제1호 삭제).

< '17.10.31 개정 >

-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를 통하여 확산되고 있는 경우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검사 결과 및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함(제3조의2제4항 신설).
-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에 발생우려지역에 대하여 가축 사육제한 근거를 마련함(제3조의4제5항).
-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 및 초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가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함(제11조제1항).
- 축산관계시설의 소독설비 외에 방역시설 기준을 추가함(제17조).
- 가축질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계란난좌, 가금부산물, 가금출하·상하차 등 인력수송, 축산농가 보유 화물차량 등을 등록대상으로 확대함(제17조의3제1항).
- 축산차량의 GPS 장착 등 지도·단속이나 축산차량의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하여 축산차량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의무화함(제17조의3제11항).
- 질병관리등급제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수행 기관을 시·군·구까지 확대함(제18조).
-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에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제5호 신설).
-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 방역조치가 가능하도록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권한을 확대함(제19조의2).

< '17.3.21 개정 >

-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구분하지 않고 염소를 양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양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방역조치를 지

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위기대응 역할을 강화하며 출입 및 거래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정검역물을 포함한 탁송품에 대해서도 우편물과 동일한 절차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16.6.2 개정>

-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입국신고 또는 출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입국 및 출국신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함(제60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신설).
- 현행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으로 변경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와 가축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조사 및 연구를 그 내용으로 포함시키도록 함(제3조).

< '15.6.22 개정>

-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제3조의4 신설)
-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 강화(제4조)
-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제6조의2 신설)
- 가축거래기록 작성·보존제도 보완(제16조)
 -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는 대상에 식용란(食用卵)을 추가함.
- 소독설비기준 적용 대상 확대(제17조)
 -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현재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 등에서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 등으로 확대함.
- 방역기준 준수의무 부여(제17조의6 신설)
 -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방역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 발생 시의 조치 강화(제19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신설 등)
- 조치 명령을 3회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사육시설 폐쇄 등의 명령(제19조제4항제5호의2 신설)
- 보상금 감액규정 보완(제48조제3항, 제48조제4항 신설)
-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근거 마련(제51조의2 신설)
-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보완(제56조제1호 등)
 - 가축전염병 의심 가축을 신고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소독설비기준 미준수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13.8.13 개정>

-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3

신설 및 제52조의2제2항 전단).

- 소독시설 설치 및 실시에 관한 확인사무의 수행주체에 현행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함(안 제17조제7항 신설).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나 차량소유자의 사업장에 대한 출입·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조의5 및 제60조제2항제4호의5 신설).
- 동물원 관람 목적으로 동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위생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함(안 제32조제2항제3호 신설).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48조제3항제5호 신설).

< ‘12.2.22 개정’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 가축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 등을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그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차량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차량출입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일시적인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의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 ‘11.7.25 개정’ >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중앙가축방역협의회 또는 지방가축방역협의회 의견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공개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삭제).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시 신고대상자에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를 추가함(안 제5조제6항).
-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검역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는 자 등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9항 신설).
- 가축전염병 감염이 우려되는 동물 및 축산시설에 대해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검사

를 하도록 하되,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검사물량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 매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때에는 농림수산물부 장관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발굴금지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함(안 제24조).
- 생계안정비용 지급대상에 가축을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추가함(안 제49조).

< '11.1.24 개정 >

- 농림수산물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수립하는 가축전염병관리대책에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을 포함시키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의 사체 등을 매몰한 토지 등의 관리실태를 매년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22조제5항 신설).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하여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장소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 가축전염병에 대한 초동대처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인력·장비 등 지원을 강화하고, 농림수산물부 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9조의2 신설).
- 가축전염병이 해외로부터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외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 국가, 일시, 지역 및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체류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되, 가축의 소유자등과 동거가족, 고용자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고 출국 시에도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 농림수산물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대하여 방역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항).
- 가축사육시설 등을 출입하는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등은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모든 출입자가 소독 후 방제복을 착용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거나 다른 지역으

로 폐지하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장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 보상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3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방역관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동통제에 드는 비용이나 주민 교육·홍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50조제1항, 안 제50조제2항 신설)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대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
- 가축의 소유자등과 동거가족, 고용자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호 신설).
- 가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체류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이나 검사·소독 등을 거부·방해·기피하는 등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 '08.9.11 개정 >

- 특정위험물질(법 제2조제6호 신설)
 -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편도와 회장원위부 및 30개월령 이상된 소에서 유래한 뇌·눈·척수·머리뼈·척주 등을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함.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업(법 제9조제4항제4호의2 신설 및 제42조제4항·제46조제1항)
 - 수입축산물의 검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업에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특정위험물질 등의 수입금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 특정위험물질과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가에서 생산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입금지품목에 추가함.
- 수입위험분석의 실시(법 제32조제4항)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수입이 금지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소해면상뇌증 발생 시 수입 중단 조치(법 제32조의2 신설)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이미 위생조건이 고시된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함.
- 위생조건에 대한 국회심의(법 제34조제3항 신설)
 -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최초로 수입하려는 경우나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수입이 중단된 국가로부터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위생조건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2조)
 - 이 법 시행 당시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쇠고기 등에 관한 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농림수산물식품부 고시 제2008-15호 부칙 제7항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30개월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함.
 - 종전의 위생조건이 적용되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수입 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07.8.3 개정 >

- 가축의 정의 변경(법 제2조제1호)
 - 「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양과 염소에 대한 정의규정을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으로 통일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의무자 확대(법 제11조제2항 신설)
- 인수공통전염병의 통보체계(법 제12조제2항)
- 가축방역에 필요한 조치명령항목에 면역요법 추가(법 제15조)

< '02.12.26 전부 개정 >

- 농림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조기발견·신고체계의 구축,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가축방역 전문인력의 육성 등에 관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3조).
-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가축방역의무를 부여하고, 축산관련단체 등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방역교육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5조 및 제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의사인 가축방역관을 두도록 함(법 제7조).
-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

생방역지원본부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

- 역학조사의 대상 가축전염병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할 수 없도록 함(법 제13조).
- 소독설비를 갖추고 가축 및 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에 사료제조업자, 가축검정기관·종축장·부화장 등의 운영자,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를 추가하는 한편, 가축·원유 및 가축분뇨 등의 운반차량에 대한 소독의무를 규정함(법 제17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람과 가축·차량의 교통차단·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발생신고를 지연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
- 병든 가축의 신고를 늦게 하거나 소독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 등에 대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48조).
-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하여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49조).
-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검사·소독·이동제한·살처분·도태 및 시설사용정지 등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53조).

(2) 제·개정된 주요 세부시행 요령

- ① **뉴캐슬병방역실시요령**(‘03.7.21 제정, ‘05.10.6, ‘09.8.25, ‘11.12.9, ‘13.10.7, ‘19.8.19 개정)
 - 뉴캐슬병의 정의·예방접종 대상시기를 정하고, 뉴캐슬병 발생시 방역요령 구체화
 - 비 발생국 인증 및 유지단계 방역요령을 구체화 함 → 삭제(‘19.8.19)
 - 뉴캐슬병 예방접종 상황을 파악을 위한 검사기준, 항체양성군의 판정기준 및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
 - 뉴캐슬병 비발생 확인을 위한 예찰활동 강화(‘19.8.19)
- ② **종돈장방역관리요령**(‘94.2.17 제정, ‘03.9.5, ‘05.4.19, ‘06.9.14, ‘07.9.5, ‘09.3.9, ‘09.8.25, ‘10.7.19, ‘11.10.7, ‘13.4.12, ‘14.3.17, ‘16.6.7, ‘22.1.9 개정)
 -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2년간), 돼지 매매시 검사증명서 휴대
 - 돼지브루셀라병 검사법을 변경하여 진단의 정확도 높임(‘22.1.9)
 -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가축전염병을 정함(‘13.4.12)
 -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 ③ **돼지열병방역실시요령**(‘94.7.1 제정, ‘01.11.30 전부개정, ‘02.3.26, ‘02.5.11,

'03.9.24, '05.9.27, '08.1.31, '09.8.25, '10.7.19, '11.10.7, '12.11.23, '13.5.16, '13.9.5, '14.3.17, '16.6.7, '22.8.9 개정)

- 예방접종 지역에서의 발생시 살처분·이동제한 범위 신설하고, 예방접종 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500만원)세부기준 신설('03.9.24)
- 재검토 기한 설정 : '22.9.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동 요령 타당성 검토('22.8.15)
- 새끼돼지는 생후 55~70일령 1회 접종, 단 추가 접종을 원할 경우 생후 40일(5~6주)째 1차 접종을 하고, 생후 60일(8~9주)째 2차 접종('13.9.5)
- “발생농장”이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한 농장, “발생지”란 발생농장이 소재한 마을의 동일한 생활권, 시장·군수가 방역기관장과 협의 설정('11.10.7)

④ 구제역방역실시요령('03.10.28 제정)

- 구제역 사전 예방체계강화 및 방역주체별 역할분담을 구체화하고,
- 구제역발생 상황별로 시도 등 방역주체별 조치사항 및 세부방역요령을 정함

< '20.12.31 개정 >

-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 시 시·도지사의 조치에 관한 사항(제10조)
 - 의사환축이 발생한 시도에서는 발생 사실을 타 시도에도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하여 지자체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구제역이 농장 외 장소에서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제31조)
 -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서 구제역 의심증상 가축 발견 시 조치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 구제역 백신접종 가축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제32조)
 - 현재 구제역 백신을 상시 접종하는 상황으로 백신접종 여부 구분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
 - * 과거 구제역 백신접종 정책 도입('11년) 전 긴급백신을 접종한 가축과 미접종 가축을 구분하기 위한 표시 규정
- 구제역 진단용 시료채취 기록서에 관한 세부사항(별지 제3호 서식)
 - 구제역 증상 여부에 대한 임상관찰 기록을 서술형에서 선택형으로 개선하고, 시료채취 내역을 구체화하고자 함

< '19.9.26 개정 >

- 감염항체(NSP) 검출 시 바이러스 순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역관리 강화(제6조의2)
 - * (종전) 검출농장만 이동제한 및 바이러스 순환여부 확인검사 등 관리 → (개정) 500m 반경·가축이동 농장(혈청검사) 및 역학농장(전화예찰)까지 포함

하여 관리

- 구제역 초동방역 강화를 위해 의심신고 시 초동방역팀과 공동방제단을 함께 투입(제9조 및 제11조)
 - * (중전) 초동대응팀 투입되어 이동통제 → (개정) 공동방제단도 함께 투입되어 의심농가 주변 소독으로 오염원 조기 제거
- 백신접종 유형이 발생하더라도 최초 발생 시 해당 도(道) 소(牛)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다른 도(道) 추가 발생 시 전국 적용(제17조 및 제24조)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7조(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구제역발생 상황별 가축시장 폐쇄 내용 구체화
- 백신 접종·미접종 유형 공통 조치사항인 방역지역 설정기준 명확화(제11조)
 - * 구제역 발생 시 방역지역 설정기준(제24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11조 제2항 신설
- 가축 재사육 기준 구체화(제26조)
 - * (중전)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한 가축 재입식을 위한 점검·입식시험 기준 불명확 → (개선) 예방적 살처분 농가로서 이동제한 해제 등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지자체장의 점검만 실시
- 백신 접종유형 발생 시 조치사항인 일시이동중지 기준 및 내용 정비(제16조)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에서 정하고 있는 Standstill의 기준 및 절차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고시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
- 백신 접종유형 발생 시 관리지역 방역기준 및 내용 정비(제20조의2)
 - 법령에 따른 관리지역 방역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과거 고시 개정('12.3.8) 당시 누락된 조문을 복원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 제22조의2(이동승인 신청), 제22조의3(오염우려물품)

< '18.12.19 개정 >

- 백신 관리기준 보완 및 항혈청 운영근거 등 마련(제8조의2, 제14조)
 - 구제역 백신관리에 대한 검역본부의 역할*을 구체화(제8조의2)
 - * 백신전문가협의회 운영, 항혈청 확보 및 백신주 적합성 평가를 위한 바이러스 확보, 백신주 적합성 평가기준 마련, 정기적으로 백신 적합성 평가 실시 등
 - 의사환축 발생 단계에서부터 검역본부에서 항원뱅크 보관물량 긴급수입 외에 추가 백신 수입방안을 검토하도록 명시(제14조)
 - 용어 통일(예방약, 백신 → 백신/ 예방접종, 백신접종 → 백신접종)

○ 역학조사 기준 조정(제7조, 제14조, 제19조, 제26조)

-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18.5.1)을 반영하여 긴급 상황시 검역본부와 시도 가축 방역기관이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토록 함(제19조 및 제26조)

* 시행규칙 개정사항 : (기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시도가축 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개정) ----- 실시하여야 한다.

- 역학조사 기관 간(시·도 방역기관-검역본부) 역할 명확화 및 세부조치사항 규정(제14조, 제19조 및 제26조)

· 1차 역학조사는 시도 방역기관이, 2차 역학조사는 검역본부에서 각각 실시토록 역할을 구분하고 시도에서 1차 역학조사 시 조치해야 할 사항*을 명시

* 농장 내부, 차량 등 시료 확보, 살처분 보상비 평가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

- 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의무*(법 제17조의2) 반영(제7조)

*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 관리(수기 또는 KAHIS 입력)

○ 살처분 적용범위 결정체계 조정(제25조)

- 백신 미접종 유형 구제역 발생 시 시장·군수가 살처분 범위를 보호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표 3-16).

· 단, 살처분 범위를 축소하거나 제외할 경우 검역본부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함.

표 3-16. 방역지역별 농장 분류에 따른 살처분 범위 결정

구분	현행	개정
발생농장	시장·군수가 살처분(의무사항)	변동사항 없음
관리지역 (500m)	검역본부장이 시장·군수에 요구 → 시장군수가 살처분 결정	위험도 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시장·군수가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살처분
보호지역 (500m~3km)	검역본부장이 농식품부에 건의 → 가축방역심의회 자문 → 장관이 살처분 결정	단, 살처분범위를 축소할 경우검역본부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식품부에 건의 → 실사단 파견(필요시 방역심의회) → 장관이 살처분 결정

-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 유형의 살처분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 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 항원 양성인 개체와 구제역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 살처분

- 살처분 농장에 대한 가축의 재사육 절차 구체화(제36조)
 - (당초) 살처분 농장에 대한 지자체 청소·소독 점검 및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입식 가능
 - (개정) 살처분 농장에 대한 지자체 청소·소독 점검 및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로서 점검결과에 대한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거쳐 입식 가능
 - *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검역본부) 반영

< '10.8.10 개정 >

- 구제역 방역지역의 축소 또는 확대 시 고려사항 중 생활권을 추가(안 제2조 개정)
 - 구제역 방역지역(위험·경계·관리지역) 설정시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계절적 요인, 역학적 특성 이외에 생활권을 고려하여 방역지역을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 및 확인검사체계 개선(안 제9조 개정)
 -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신고를 받은 즉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을 보고토록 함
 - ※ 현재는 발생신고를 받은 지자체의 장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시·도지사가 검역원장에게 보고
 - 의사환축 발생사실을 보고받은 검역원장은 즉시 소속 가축방역관을 발생농장에 파견하여 우제류 가축의 임상관찰, 간이항원진단키트 검사 및 정밀검사시료 채취 등을 실시
-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 신고를 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기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사항 신설(안 제9조 제3항 및 제17조제3항 개정)
 -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을 신고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기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결과 등에 의한 확진판정이 나올 때까지 외출을 통제하고 감수성 가축의 사육자 등과 만나지 않도록 조치
 - 환축으로 판정된 경우 의사환축 발생을 신고한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양성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간 가축사육농장 방문을 금지(진료 포함)토록 하고 감수성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 가축의 살처분·매몰작업에 참여한 사람 및 동원된 장비에 대한 사후 방역관리 조치사항 신설(안 18조 개정)
 - 시장·군수는 가축의 살처분 및 매몰작업에 참여한 사람과 동원장비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과 장비내역을 작성하여 소독·예찰 등 사후 방역관리를 실시토록 함
- 구제역 발생농장 등을 방문한 역학관련 차량(차량운전자 포함)에 대한 이동제한 근거 신설(안 별표3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역학조사 결과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역학관련 차량(차량운전자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축산시설을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토록 함

○ 사슴 등 기타 우제류사육농장에 대한 입식시험 실시요령 신설(안 별표4 개정)

- 사슴 등 기타 사육농장에 대한 입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가축의 종류 및 두수는 어린 일령의 소 2두 및 어린 일령의 염소 3두로 함

○ 발생농장 반경 3km내외 지역의 우제류 가축을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항체·항원 양성축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대한 가축의 재입식 시기를 설정(안 제29조 개정)

- 발생농장 반경 3km내외 지역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항체·항원 양성축이 발생하는 경우, 동 지역에 대한 가축의 재입식은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고 발생농장에 대한 60일간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가능토록 함

※ 현재는 발생농장과 반경 500미터 내외지역의 재입식 시기에 대한 기준만 있음

⑤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개정**('01.12.24 제정, '04.2.5, '08.6.30, '09.2.18, '10.12.30 개정, '12.2.8 폐지)

○ 부검·혈액검사 등 가축의 병성감정 수수료를 정하고, 동물용의약품 등의 효능·안전성·독성 등 시험·분석시 수수료를 정함('04.3.6)

< '12.2.8 폐지 >

○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수수료 규칙」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통합

< '10.12.30 개정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나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할 때 현금이나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방법 외에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가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병성감정 의뢰 확대를 유도하여 국가 차원의 가축전염병 관리를 강화하며, 광견병과 말전염성동맥염의 정밀검사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임.

< '09.3.12 개정 >

○ 수입축산물의 검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받은 검역시행장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의 관리수의사를 근무하게 하게 할 수 있고, 그 관리수의사가 현물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

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9130호, 2008. 9. 11. 공포, 2009. 3. 12. 시행)됨에 따라, 그 현물검사의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 '08.6.30 개정 >

- 가축전염병 병성감정 수수료 항목에 항원검사 항목을 신설하고, 브루셀라병, 돼지열병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변경된 가축전염병 명칭을 반영하며, 시험·분석의뢰 수수료에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성 시험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04.2.5 개정 >

- 혈청검사 및 검역외에 가축의 병성감정과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이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제명을 현행 혈청검사및검역수수료규칙에서 혈청검사및검역등에관한수수료규칙으로 변경함.
- 부검·혈액검사·전자현미경검사 등 가축의 병성감정과 동물용 의약품 등의 효능·안전성·독성 등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새로이 정함(제3조, 별표 1 및 별표 4).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병성감정 및 시험·분석의 경우와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한 자중 당해 가축의 소유자 또는 이러한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가축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가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호, 제5조제1호의2).

< '02.3.24 개정 >

- 가축의 질병별 혈청검사수수료 및 검역수수료를 정함(제3조, 별표 1 및 별표 2)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으로,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각각 납부하도록 함(제4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혈청검사 및 검역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⑥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04.3.11 제정, '09.8.25, '13.5.16, '16.6.7 개정)

-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기준과 소독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요령 등

⑦ 소해면상뇌증(BSE : 일명 광우병)) 긴급행동지침(SOP) : '02.3월 제정

<경과>

- 2002.3월 「전염성해면상뇌증(TSE) 긴급방역행동지침」 제정
- 2002~2007 OIE 「육상동물위생규약」 중 BSE 위험등급 및 예찰기준 등 수차 개정

- 2005~ BSE 발생에 대비 특정위험물질 제거시설 설치 추진('10년까지 10개소 설치 추진)
- 2008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타결 이후 특정위험물질 제거, 기립불능소 도축 제한 등 국내 BSE 방역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요구 대두
- 2008.5 기립불능소에 대한 도축검사 강화 및 전두수 BSE 검사 실시

<개정내용> '09.3.23

○ **‘특정위험물질 제거·처리요령’ 신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라 특정위험물질에 관한 정의 신설
 - 모든 연령의 편도·회장원위부, 30개월령이상 뇌·눈·척수·머리뼈·척주
 - 장관이 발생상황과 식생활 습관을 고려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물질
- 도축시 SRM 오염방지를 위한 OIE 기준을 반영하고, SRM 제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압축공기 등을 활용한 기절(stunning) 또는 pithing(뇌를 철사로 휘젓는 것) 사용금지
 - 척수는 1차로 이분도체 분할 전에 척수 흡입한 후, 분할한 후 2차로 도구를 이용하여 척수를 긁어냄
 - 편도 및 회장원위부 주변의 혀와 내장을 충분히 제거하도록 기준 제시
- 특정위험물질은 전용라인·용기 등을 활용하여 취급하며, 소각 또는 랜더링한 후 그 잔재물을 매몰하도록 함

○ **시·도 방역기관 및 축산농가의 역할·책임 강화**

- 종전 지침은 농식품부검역원·시도 주도로 되어 있었으나 시·도 가축방역기관 및 축산농가(단체)에 대하여도 신고·검사 등 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부여
- 최초로 신고를 접하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조사결과 의사환축으로 판명되는 경우 신속대처를 위해 검역원 정밀검사시설에서 검사 실시
 - * 종전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추가적인 임상검사(2주간)을 실시

○ **BSE 발생시의 추적조사·살처분 시행기준 구체화**

- 추적조사 및 살처분 대상 :
 - 소해면상뇌증 감염소 및 의사환축
 - 감염소가 어렸을 때(12개월이하) 같이 동거하여 같은 사료를 급여받았고 당시에 12개월 이하였던 소
- * 어린 연령에서 감염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며, OIE기준에 따름

- 안심제공 차원에서 가축 방역협의회 의견을 들어 감염소가 2년내 또는 발병후 분만한 소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 단, 대량 발생시 효율적인 방역자원 활용을 위해 생략 가능
- BSE가 발생하더라도 검사대상을 확대하지 않고 OIE BSE 예찰기준에 따른 예찰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농가·수의사 등을 대상으로 이상징후를 신속히 신고토록 홍보·지도 강화

○ 사체·특정위험물질 등 폐기방법 구체화

- BSE 원인체 특성을 고려, 소각 또는 랜더링한 후 그 잔재물을 매몰조치토록 함
- 대량 발생시에는 소각·랜더링이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 선진 외국 등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소해면상뇌증’에 관한 OIE 규약을 수록

⑧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 운영규정(11.10.7 제정, ‘13.5.16, ‘16.6.7, ‘22.8.22 개정)
 < ‘22.8.22 개정 >

- 중앙 초동대응팀의 상황총괄반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고, 상황총괄반, 이동통제반, 소독실시반, 매몰지원반의 “사무관“을 “서기관·사무관“으로 변경(제3조)
- 현장 기동조치팀 상황총괄반장은 가축방역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농정과장“에서 “가축방역업무 소관 과장“이 담당하도록 변경(제4조)
- 기동방역기구 소집·투입 요건을 현행 구제역 발생 시에서, ①구제역, ②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③아프리카돼지열병, ④신종가축질병 발생 시로 확대(제8조)
- 고시 개정안 및 현행 직제에 맞게 조직도 수정

⑨ 가축전염병예찰실시요령(’04.5.1 제정, ’06.8.9, ’07.3.5, ’09.8.25, ’11.10.7, ’13.5.16, ’16.6.7, ’18.3.2, ’20.10.20 개정)

< ‘20.10.20 개정 >

- ASF를 신고포상금 대상 질병으로 포함 및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 제외(제18조제2항 별표1)
 - (현행) 구제역, 고병원성AI, 소해면상뇌증, 돼지열병(CSF)을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
 - 다만, 해당 가축의 소유자 등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제외
 - ※ 악성가축전염병 예찰 강화와 조기 진단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개정)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질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포함
 - 또한, 가축전염병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은 제외
-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마련(제18조제2항 별표1)

- (현행)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없음
 - ※ 시군이 신청할 경우 시도에서 검토·확인 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 (개정)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 재검토 기한 설정(제20조 신설)
 - 2021년 1.1일 기준으로 매 3년째 12.31일까지 검토)

< '18.3.2 개정 >

- 예찰협의회 내실화를 위해 개최주기 조정
 - 개최주기를 '매분기' 에서 '매반기' 로 조정(필요시 추가 개최가능)
- 제3차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 및 신설(안 제18조제2항 별표1)
 - 전염병 신고포상금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100만원 → 500만원)
 -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미장착차량 신고포상금 신설(20만원)

⑩ 돼지오제스키병방역실시요령(' 88.3.4 제정, ' 88.12.31, ' 89.8.3, ' 95.5.22, ' 96.6.15, ' 01.11.5 개정, ' 09.8.25 폐지후 제정, ' 11.10.7, ' 13.5.16, ' 14.3.17, ' 16.6.7, ' 22.1.9 개정)

-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예방·주사·이동제한 등 방역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검사대상별 검사주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종돈장 및 종돈검정기관 등의 종돈은 매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 외부에서 구입하여 입식되는 돼지는 입식한 날부터 15일 이내. 다만,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가 있는 돼지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 과거 1년 이내에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지역(발생농장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또는 발생의심이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돈(후보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웅돈은 매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 돼지인공수정소 종모돈(웅돈)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신규입식 돼지는 입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시
 - 오제스키병 발생농장은 제10조에 따른 비발생농장 인정 신청전까지 매 2개월마다 1회 이상
 - 도축장 출하돼지의 혈청검사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정하여 실시
- 오제스키병 검사는 감별진단법, 간이진단키트법, 병원체검사법 또는 혈청중화시험법으로 한다.
- 시장·군수는 제6조에 따른 검사결과 오제스키병 양성돼지가 확인된 농장(이하 “발생농장”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육돼지의 격리·역류·이동제한, 발생농장내 사람과 차량 등의 출입통제·교통차단 조

치 및 축사의 소독 실시를 명한다.

- 발생농장의 돼지중 오제스키병 임상증상이 없는 돼지는 제1항의 이동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축을 목적으로 지정된 도축장으로 이동이 허용됨
- 가축방역기관의 장 또는 검역원장은 종돈장·돼지정액등처리업소·종돈검정기관 또는 종돈등록기관(이하 “종돈장등”이라 한다)에서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업소의 신고·등록 또는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
- 시장·군수는 오제스키병 발생농장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살처분 명령 또는 도태권고를 하여야 한다.
 - 오제스키병 임상증상을 보이는 돼지는 살처분 후 소각 또는 매몰
 - 제6조에 따른 검사결과 항체 양성 반응이 나타난 돼지중 임상증상이 없는 번식용 돼지는 도태 권고. 다만, 비발생지역(반경 3km이내에 발생이 없는 지역)에서 오제스키병이 처음 발생된 농장으로서 항체 양성율이 10%이하일 경우 전두수 살처분
 - 오제스키병 항체 양성율이 30%이상일 경우 번식용 돼지의 전두수 도태를 권고하고 도태권고 기한 후 이행여부 확인
- 오제스키병 발생농장의 이동제한 기한은 마지막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돼지의 살처분 또는 도태 완료일부터 40일까지로 한다.
- 오제스키병 발생농장 소유자등은 살처분 또는 도태완료일부터 40일 이후에 관할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오제스키병 비발생농장 인정을 위한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⑪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04.12.6제정, ‘09.8.25, ‘09.11.12, ‘11.12.9, ‘13.10.7, ‘16.5.26, ‘19.5.21, ‘22.12.8 개정)

-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계장·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가축거래기록의 작성·보존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추백리·가금티프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가 실시되기 1월 전부터는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항균약제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계의 소유자등은 종계 및 씨알의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부화장의 소유자등은 씨알, 백세미용 알 및 병아리의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검사기관의 종계에 대한 추백리·가금티프스 검사는 부화후 120일령부터 산란 개시전의 닭을 대상으로 하되 계사별로 실시한다.

-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검사를 실시한 종계에 대하여 검사 종료일부터 1년내에 추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검사방법별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차 및 2차 검사결과 모두 양성인 경우 양성계로 판정
2. 1차검사 양성이었으나 2차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음성계로 판정

⑫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94.8.6 제정, ’00.8.19 개정, ’09.9.15 폐지제정, ’14.2.25, ’17.9.26 폐지제정, ’18.8.8, ’19.12.4 개정)

-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이라 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중 우역, 우폐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리프트게곡열 등
-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축사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출입구에 소독조 설치
-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가축 및 정액의 이동상황 추적조사
 -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7일전까지 해당 가축과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축사관리인·수의사·인공수정사 등이 접촉한 감수성 가축
 -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7일전까지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의 감수성 가축
- 검역본부장은 전염병 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예방약을 사전에 구입하여 비축하거나 긴급 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⑬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94.7.2 제정, ’96.12.31, ’98.2.6, ’99.1.23, ’01.12.7, ’04.5.27, ’04.12.6, ’06.6.26, ’07.3.28, ’09.8.25, ’13.5.16, ’14.2.5, ’14.3.17, ’17.9.26, ’18.6.20, ’19.7.1, ’24.2.1 개정)

< ’19.7.1 >

- 결핵병 검사대상 확대, 결핵병 검사대상에 ‘거래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소’ 를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하도록 규정 개선
- 연구소 → 시험소로 용어 변경,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 동물위생시험소법(법률 제13357호, ’15.6.22) 제정으로 전국 시도방역기관이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동물위생시험소로 명칭이 변경됨

< ’18.6.20 >

- 발생농가의 브루셀라균 분리검사에서 균이 확인될 경우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동거축을 도태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 강화
 - * 검역본부는 ‘18년부터 브루셀라병 양성농가에 대한 원인균 분리검사 추진(OIE는

브루셀라병 청정국 지위인정 조건에 3년간 원인균 부재 증명을 요구)

○ 발생농가의 가축 재입식 전 소독 등 점검

* 브루셀라병 방역관리강화 방안('17.11.3)에 따라 발생농가의 가축 재입식전 시군이 소독 등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므로 고시에 반영 필요

○ 브루셀라병 검사대상 명확화, 브루셀라병 정기검사나 소 거래(출하)시에 거세수소는 검사하지 않으나, 고시에는 거세수소 검사제외 내용이 없음

- “거세수소”는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할 경우에 검사하고, 평시 정기검사나 거래 검사시는 제외

○ 브루셀라병 백신접종 규정 명확화, '98년부터 접종을 금지하고 있으나,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할 경우에 접종을 명하도록 규정

○ '13년부터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종이)의 경우 축산물이력제시스템을 통해 검사가 확인되는 경우 휴대하지 않을 수 있음, 동 고시에서 관련사항 규정

⑭ 기타 고시

- 가축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제2022-121호, 2022.12.9.) : 기준설정
- 가축사체를 재활용 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제2022-39호, '22.4.25.) : 기준설정
-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제2015-170호, 2015.12.22.) : 평가·보상
-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제2022-63호, 2022.8.22.) : 조직운용
-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제2023-11호, 2023.3.30.) : 자원관리
- 가축전염병 예찰실시요령(제2020-81호, 2020.10.20.) : 방역요령
-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제2019-46호, 2019.7.2.) : 방역요령
-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제2023-77호, 2023.10.23.)
-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제2021-33호, 2021.5.21.) : 방역요령
- 동물운송 세부규정(제2018-29호, 2018.10.11.) : 차량운송
- 방역관리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제2022-49호, 2022.12.29.) ; 방역요령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제2023-92호, 2023.12.12.) : 평가·보상
-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요령(제2020-80호, 2020.10.16.) : 방역요령
- 소독제 효력시험지침(제2023-48호, 2023.12.29.) : 검사·시험
-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 훈련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2023.5.2.) : 교육·훈련
-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제2023-46호, 2023.12.4) : 차량운송

⑮ 훈령

- 가축방역관 직무규정(제415호, 2021.11.5.) : 직무규정
-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규정(제216호, 2016.6.7.) : 직무규정
-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지침(제132호, 2022.6.30.) : 조직운용

-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요령(제295호, 2018.8.7.) : 조직운동
-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제135호, 2022.11.22.) : 조직운동
- 역학조사반 운영규정(제128호, 2022.2.24.) : 조직운동
-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제133호 : 2022.7.15.) : 조직운동

⑩ 예규

-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제57호, 2022.1.25.) : 조직운동
-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제142호, 2017.12.29.) : 검사·시험
- 병리진단 재료 관리 지침(제23호, 2013.3.22.) : 자원관리
-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정밀검사 세부실시요령(제174호, 2021.4.16.) : 검사·시험
- 인수공통점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제55호, 2021.10.14.) : 조직운동

(3) 축산법 개정('63.6.26 제정, '68.5.21, '76.12.22, '77.12.19 전부개정, '81.3.7, '82.12.31, '84.8.2, '87.12.4, '89.3.31, '93.6.11 전부개정, '94.12.31, '99.1.29 전부개정, '01.1.26, '02.5.13, '02.12.26, '07.1.3, '07.4.11 전부개정, '07.8.3, '09.5.8, '10.1.25, '12.2.22, '14.3.18, '15.2.3, '16.12.2, '17.3.21, '18.12.31, '19.8.27, '20.3.24, '20.5.26, '21.6.15, '21.11.30 개정)

□ 주요 개정내용('02.12.26)

- 부화업, 계란집하업, 종축업 및 소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등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 등록토록 함
 - 축산업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농가정보 등을 체계적 관리
 - * 미등록 농가, 부정 등록농가는 2年이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 罰金 부과
- 등록시 가축질병방역, 위생·안전성 강화 등을 위한 등록 **시설·장비 기준**을 정하고 미비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부화업** : 부화실과 병아리방을 설치,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 부화장을 계사(鷄舍)와 격리
 - **계란집하업** : 내구성 재료를 사용, 환기시설, 계란포장장비, 계란무게자동선별기, 계란운반장비
 - **종축업** : 내구성 재료를 사용, 사육단계별 구분사육시설, 종돈사를 일반돈사와 구분 설치
 - **가축사육업** : 가축사육시설의 통풍이 잘되거나 환기시설을 갖출 것

- 축산업 등록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종계와 등록 농가에서 생산한 알만 부화토록 하여 부화용알의 관리 강화
 - 종돈등 판매시 **종돈혈통증명서**를 교부토록 하여 종돈의 사후관리 강화
 - 단위면적당 적정한 숫자 이상으로 밀집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하여 질병발생·전파와 분노발생 에 따른 환경부담 경감

□ 그 이후 축산법 개정 내용(최신 개정 순)

< '21.6.15 개정 >

-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축산업의 허가 시 악취저감 장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또한,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대한 내용이 없어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들이 가축분뇨처리와 악취저감을 중요한 준수사항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는 경우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갖추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두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21.11.30 개정 >

-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0.3.24 개정 >

-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의 대여·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면허취소, 처벌 근거를 규정함(제12조, 제14조 및 제54조).
-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두도록 함(제32조의4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무항

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하게 할 수 있음(제42조의2 신설).

-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하고,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제42조의3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음(제42조의7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42조의8 신설).
-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함(제53조제9호부터 제21호까지 신설).
- 축산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으로 세분화함(제56조).

< '20.5.26 개정 >

- 축산농가의 가축시장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출하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축산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의 품목조합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34조제1항, 제54조)

< ' 20.3.24 개정 >

-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에 무항생제축산물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가축 사육환경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등 불필요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관리에 집중함으로써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증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무항생제축산물 산업을 육성하고,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의 대여·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2조, 제14조 및 제54조, 제32조의4 신설, 제42조의2 신설, 제42조의3 신설, 제42조의7 신설, 제42조의8 신설, 제53조제9호부터 제21호까지 신설, 제56조).

< 18.12.31 개정 >

- 축산환경이란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축산환경 개선을 이 법의 목적에 추가하며,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의 지정근거를 마련함(제1조 및 제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 허가·등록 요건으로 살처분·소각 매물에 필요한 매몰지의 확보를 추가하고,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가축사육업의 경우 기존 닭·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못하게 하는 등 허가·등록 요건을 강화함(제22조제4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제8항 신설).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정기점검주기를 현행 2년에 1회에서 1년에 1회로 하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보수교육주기를 현행 2년에 1회에서 1년에 1회로 하는 등 축산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제33조의2).

< 16.12.2 개정 >

- 현행법에서는 가축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 대상을 소·돼지·닭·오리를 거래하는 자로 한정함에 따라 염소의 경우 최근 소비량 및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문전거래 등에 의존하여 연간 거래 두수 등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내 염소 산업의 경쟁력 제고, 가축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염소를 구매하거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등록한 자도 가축거래상인에 포함하려는 것임.(제2조제9호)

< 12.2.22 개정 >

- 구제역,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및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을 도입하는 한편, 축산농가, 축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하여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육성·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에 대하여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축산업 허가 대상이 아닌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 소각장 및 소각시설을 국가축산클러스터 내에 갖추도록 하며,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으려는 자,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지정된 교육 운영기관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축산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함(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 ' 10.1.25 개정 >

-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개량을 위한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에 관한 사항(법 제21조)
 - 현행 우수업체 인증제에 정액등처리업이 있으나, 종돈업 등 종자 가축을 생산하는 종축업은 우수업체 인증제가 없어 종축장 질병 청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업체 인증제에 종축업을 추가함.

(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07.12.21 제정, ' 10.5.25 전부개정, ' 12.5.23, ' 13.12.27 전부개정, ' 14.10.15, ' 16.12.27, ' 18.12.31, ' 19.8.27, ' 20.2.11, ' 20.5.19 개정)

□ 그간 추진경과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07.12.21 제정)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0.5.25 전부개정)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3.12.27 전부개정)

□ 주요 제정 내용(' 07.12.21 제정)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 소 및 쇠고기의 이력추적 관리에 필요한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까지의 개체별 식별을 위한 기록·관리와 표시사항을 규정
- 정의 : “이력추적” “개체식별번호” “귀표” “개체식별쇠고기”
- 출생 등의 신고
- 귀표의 부착
- 소 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등 (개체식별번호, 출생 또는 수입연월일, 암수 구분, 수입된 소는 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 소의 사육을 위한 시설의 소재지 및 해당 사육시설에서의 사육개시일자, 소유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
- 개체식별정보의 공개 등
- 도축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등
-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등
- 장부의 비치 등 : 도축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소의 도살처리, 쇠고기의 포장처리 또는 개체식별쇠고기의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기록일부부터 2년간 보관, 식육판매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에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고 그 기록사항을 식육 매입일부부터 1년간 보관
- 증명서의 교부 등 :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는 소 및 그 식육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도축검사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 등급판정을 한 등급판정사는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쇠고기의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
- 벌칙 및 과태료 규정
- 이력추적제운영협의회

□ 주요 개정내용(' 10.5.25 전부개정)

○ 개정이유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서 「소 및 쇠고기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 국내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이력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이 특정위험부위(SRM) 12개 품목만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부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만 이력관리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리의 이원화

및 관련 법규 미비로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해사고 발생 시 완벽하고 신속한 회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기 위해 수입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산 쇠고기 이력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추적”이라는 용어는 소 또는 쇠고기에 문제가 있음을 예단하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으므로 이 법의 제명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법의 제명을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수입유통식별쇠고기” 등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관리를 위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법 제명 및 제2조).
-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체식별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법 제11조제3항).
- 쇠고기 수입업자는 수입 쇠고기 이력관리를 위한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법 제12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쇠고기 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쇠고기 수입업자는 수입유통식별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도록 함(법 제13조).
- 쇠고기 수입업자는 수입 쇠고기의 수입신고 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함(법 제15조).
- 쇠고기 수입업자가 수입신고 이후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하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사이에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법 제16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유통식별번호마다 수입연월일, 유통기한, 원산지, 수출국, 위해쇠고기 해당 여부 등의 사항을 수입유통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함(법 제17조).
-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수입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함(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 쇠고기 수입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함(법 제20조제3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쇠고기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

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법 제 26조).

-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소 및 쇠고기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위해쇠고기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영업장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 영업장에 대해서는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보고 및 출입·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32조제1항).
-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법 제33조).

□ 주요 개정내용(' 13.12.27 전부개정)

○ 개정이유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 현행법에 따라 소 및 쇠고기,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부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만 돼지고기의 거래내역 등이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력관리대상을 돼지까지 확대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한편, 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수입쇠고기 재고 소진 신고제를 삭제하는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관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 제명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제명).
- 국내산 소 및 쇠고기, 수입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국내산 돼지 및 돼지고기를 이력관리대상 가축 및 이력관리대상 축산물로 규정하기 위해 정의 규정을 보완함(제2조).
- 돼지의 이력관리를 위해 농장경영자가 고유번호인 농장식별번호를 신청 및 부여받아 표시하도록 함(제4조 및 제8조).
- 돼지(중돈)의 출생, 이동, 폐사 신고 및 귀표 등의 부착 의무를 부여하고, 귀표 등이 없는 가축은 이동 및 도축을 할 수 없도록 함(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조).

- 돼지고기의 효율적인 유통단계 이력관리를 위하여 도축업자가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고, 해당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 하도록 함(제11조).
- 돼지고기의 경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거래 또는 포장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7조).
- 돼지고기의 경우도 소비자에게 판매 시 돼지고기 포장지 및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도록 함(제18조).
- 돼지 및 돼지고기의 경우도 농장식별번호를 기준으로 이력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을 작성하도록 함(제19조).
- 돼지고기의 경우도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이력번호를 기준으로 포장처리 또는 거래·판매하는 경우 장부를 기록·관리하거나 거래내역서 등을 보관하도록 함(제26조).
-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 벌칙을,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보완함(제32조 및 제34조).
-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2회 이상 확정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제35조).

□ 그 이후 개정 내용(최신내용 순)

< '18.12.31 개정 >

-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가금 및 가금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하여 사육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구축하면서,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전파경로 파악을 도모하려는 것임.
- 이력관리대상 가축 및 축산물의 범위를 국내산 닭(닭고기), 오리(오리고기), 계란까지 확대함(제2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에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닭, 오리, 씨알의 이동을 금지하도록 함(제8조의2 및 제9조의2 신설).
-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등이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고, 포장지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가축거래상인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보고

및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제23조, 제24조).

< ' 19.8.27 개정 >

- 현재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보고 및 출입·검사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아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그 권한의 성격을 고려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시정명령, 보고 및 출입·검사 등의 권한을 갖는 자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제23조, 제24조, 제28조)

< ' 16.12.27 개정, ' 18.12.28 시행 >

-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수입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함(제2조제1항제8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제12호).
- 축산물 이력관리 제도의 정착으로 위해축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판매차단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2조제1항제12호 및 제29조 삭제).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추가됨에 따라, 이력관리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추가하여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한 거래 신고,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및 매입·매출에 대한 기록 보관 등을 하도록 함(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
- 식품접객업자 등이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영수증 등을 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식품접객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함(제26조제4항).

< ' 16.12.27 개정, ' 17.6.28 시행 >

-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하여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행법은 이력관리대상 수입 축산물을 수입 쇠고기로 한정하여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력관리 및 정보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활용도가 낮은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축산물 이력관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

고하기 위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수입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함(제2조제1항제8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제12호).

- 축산물 이력관리 제도의 정착으로 위해축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판매차단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2조제1항제12호 및 제29조 삭제).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추가됨에 따라, 이력관리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추가하여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한 거래 신고,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및 매입·매출에 대한 기록 보관 등을 하도록 함(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
- 식품접객업자 등이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영수증 등을 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식품접객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함(제26조제4항).